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발행 국가인권위원회
담당부서 홍보협력과
주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전화 02-2125-9978
전송 02-2125-9988
홈페이지 www.humanrights.go.kr
전자우편 public@nhrc.go.kr
발행일 2011년 11월25일
편집/인쇄 타입페이지

ISBN 9788961142441 03340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비매품>

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한 방울의 낙수가 바위를 뚫고 바다로 흐른다



한 방울의 낙수가 모여 바위를 뚫습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큰 물줄기를 이루며 흘러 바다를 만듭니다.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도도하게 흐르는 물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전진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은 인권이 처음부터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달갈로 바위 치기와도 같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또 두드린 이들이 있었기에 인권은 보편성을 확보했고 결국 모든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길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이 끊임없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1년 11월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10년 동안 수많은 결정례를 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박수를 받은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인권이 정립되고 발전해온 과정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숭고한 인권의 길을 누구도 거역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위 설립 이전의 한국 사회와 인권위 설립 이후의 한국 사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인권위 설립은 그동안 이상적 가치로만 여겨졌거나 다른 나라 이야기쯤으로 생각했던 인권을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국가기관이 정책과 법을 만들고 집행할 때 인권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차츰 인권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이 공공선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요구하고 누리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권이 일상화되고 생활이 된 것입니다.

인권위 설립 10주년을 맞아 그동안 결정한 사례들 중에 100개를 선정해 해설하는 책자를 발간합니다. 인권위가 걸어온 길과 함께 우리 사회 인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위 결정례 중에는 즉각 수용되어 이미 과거가 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진행형인 것도 있습니다. 이 책자가 그동안 인권위가 오로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권고한 결정례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설립 10주년 기념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환**

차례

들어가며

하나의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12
----------------	----

1장 반갑다, 인권!

1)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 하라고 만든 것”	18
2) 어떤 경우에도 인권을 양보할 수 없다	20
3)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22
4) 막다른 골목, 넘어야 할 산	26
5) 극지에 선 잘못된 신화	28
6) 정통성 없는 법률의 끈질긴 생명력	30
7)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32
8) “인권위가 왜 노동문제를?”	34
9) 스포츠는 인권이다	36
10) “저기 사람 있어요”	38
11) 이제는 일상 언어가 된 인권	40

2장 벼랑 위의 공권력

1) 국가 독점 물리력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	44
2)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근원	46
3) 민주주의 초석, 소수자의 권리	50
4) 검사를 고발하다	52
5) 21세기 고문의 추억	54
6) 2차 피해 가해자가 된 경찰	56
7) 수사·재판 절차 더 줄이자	58
8) 전·의경 제도 폐지하라	60
9) 귀신 잡는 해병의 관행적 탈선	62
10) ‘막말’ 판사에 막막한 법정	64

3장 수사에 대처하는 자세

1) 경찰은 제복이 신분증이다?	68
2) 경찰서 동행, 내 의사가 중요	70
3) 자정 이후에도 수사하려면	72
4) 나의 구속 사실은 ‘서면’으로 알려라	74
5) 수감 중에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	76
6) 도둑 의심도 억울한데 속옷까지	78
7)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의 금도	80
8) 범죄자로 낙인찍혔는데 무죄 판결받으면	82
9) 자유형 아닌 재산형 선고한 이유 생각하라	84

4장 그들도 우리처럼

1) 교도소에서 볼 수 없는 신문기사는?	88
2) 구금시설 인권도 존중되는 나라라면	90
3) 범죄자의 인격과 명예	92
4) 누구나 강제입원될 수 있지만	94
5) 24시간 감시받는 치료의 질은?	96
6) 인권 친화적 입원·치료·사회복귀를 위해	98
7) “차별과 편견, 무관심을 사과드린다”	100
8) 과거 권력에 대한 현 국가의 책임	102
9) 적의 총부리 아래서도 우리는 사람이다	104
10) 건강권도 인권	106
11) 물과 전기는 생명	108
12) 배우 김여진이 거리로 나선 이유	110

5장 아이들아, 행복하니?

- 1) 간접체벌도 안 돼 114
- 2) 뿌리 깊은 '인권' 바람에 아니될세 116
- 3) 머리카락은 개성의 발현 118
- 4) 엄마 아빠에게도 비밀이에요 120
- 5) 이 아이 저 아이 따지지 말고 122
- 6) "내 이름은 소중하니까요" 124
- 7)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126
- 8) 학교 다니는 학생만 청소년인가요? 128
- 9) 남자는 1번부터, 여자는 41번부터 130
- 10) 으랏차차! 알바인권! 132

6장 자유를 향한 외침

- 1) '정보인권' 개념 대중화한 계기 136
- 2) CCTV 어떻게 볼 것인가? 138
- 3) 정보화 시대 검열의 유혹 140
- 4) 제2의 미네르바는 안 된다 142
- 5) 국방부 시계는 과거에 멈춰 있나? 144
- 6) 기본권 제한하려면 법부터 만들라 146
- 7) 낡은 규정에 발목 잡힌 상아탑 148
- 8) 광장은 민주주의, 소통 150
- 9)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 152
- 10) 은밀하고 내밀한 내 몸을 스캔한다고? 154

7장 다문화 사회의 길목에서

- 1) 지구상에 '살색'은 없다 158
- 2) 외국인 노동자, '노동'이나 '사람'이나 160
- 3) 자기 나라를 등진 사람들의 희망 162
- 4) 서울가이드라인 채택한 날의 씩씩한 풍경 164
- 5) 보호소는 구금시설이 아니다 166
- 6) 생후 3개월 아이에게 자유를 168
- 7)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 170
- 8) 우리 땅에 살겠다고 왔는데 172

8장 그들의 불편이 불행이 되지 않게

- 1) 진입 장벽부터 낮추자 176
- 2) 청각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180
- 3) 위험사회 영업의 자유? 182
- 4)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184
- 5) 문턱 없는 학교를 꿈꾼다 186
- 6)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 188
- 7) 그들의 자유 강박할 권한 누가 주었나? 190
- 8) 불편한 진실, 하지만 밝혀야 할 진실 192

9장 '차이'와 '차별'

- 1) 웃기고 싶은 남자의 나이 196
- 2) 나이가 장벽이 돼선 안 된다 200
- 3) 나이를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 202
- 4) 배우자의 계부모도 소중한 가족 204
- 5) 혼인 여부가 기준일 수 없다 206
- 6) 차별 신고 시속 300km 208
- 7) 남성 또는 여성만의 고유 업무는 없다 210
- 8) 남성 전업주부도 주부다 212
- 9) 2005년 풍경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214
- 10) 성전환자의 정체성 보장해야 216
- 11) 동성애자는 현혈도 못 하나 218
- 12) 단지 당신이 전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220

10장 평등 시대로

- 1) 0.2cm와 0.5cm 차이로 접은 꿈 224
- 2) 뚱뚱하면 일 못하나 226
- 3) 학교가 학생을 내치지 않기를 228
- 4)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230
- 5) 대학은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232
- 6) 학력과 능력은 비례할까 234
- 7) B형 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 236
- 8) 다시 일어설 기회를 짓밟지 말자 238
- 9) 권력적 특성에 기인한 괴롭힘 240
- 10) 차별을 멈춰요!! 242

부록

- 1) 세계인권선언 248
- 2)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 256
- 3) 국가인권위원회법 260
- 4)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287

들어가며

하나의 결정문이 나오기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문은 크게 3개 분야에서 나온다. 인권정책(법원과 헌법재판소 의견제출 포함), 인권침해 사건, 차별행위 사건 등이다.

먼저 인권정책.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제19조(업무) 1호는 인권 관련 법령(입법과정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을 조사·연구하고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 등을 벌인다. 이 결과를 토대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이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입법이나 현행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도 권고할 수 있다. 권고의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사안에 따라 사단체도 포함된다.

인권위는 또한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이나 조약 이행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과 그 실천은 국내 인권 상황 향상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권위는 각종 인권조약에 따라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 대한 개선 요구, 미가입 인권조약이나 기존 조약에 대한 유보 내용에 대한 검토와 권고, 국제인권조약 가입이나 이행 촉구 등을 한다.

인권위법 제28조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대한 의견제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와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해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에 한다. 법원이나 헌재의 요청이 있거나 인권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다.

두 번째 인권침해 사건. 먼저 인권위법에 규정된 조사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사하고 구제한다. 인권위법 제30조에 규정된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대상은 우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과정

에서 발생한 피해여야 한다. 또한 피해의 내용이 헌법 10조 내지 22조에 규정된 인권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인권위법 제32조에서 규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각하 사유는 수사나 재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진정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다만 공소시효나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제외)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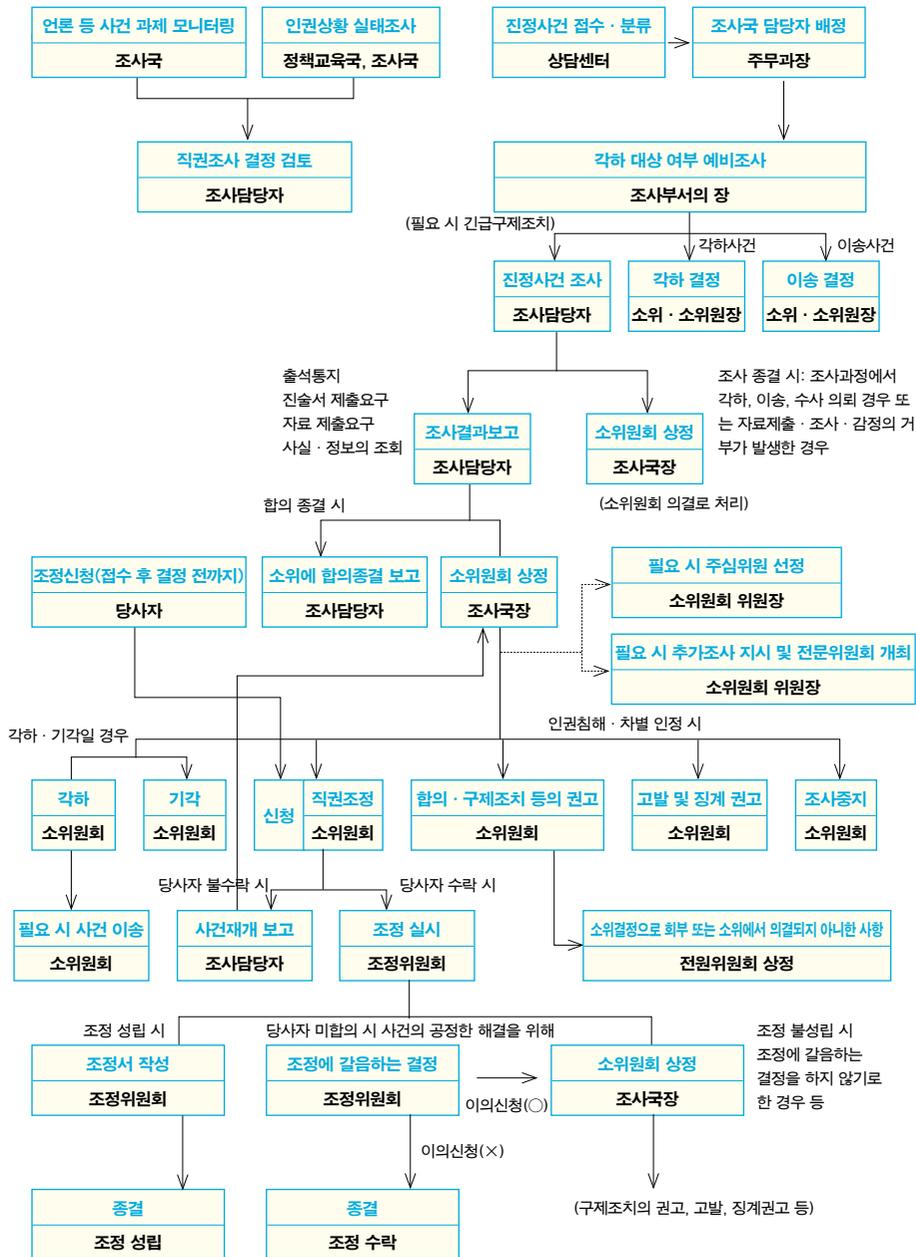
세 번째 차별행위 사건. 차별행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은 물론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도 조사대상이다. 인권위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 19개 사유(이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사유도 가능)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다. 여기에 차별의 내용이 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토지·주거시설의 공급 이용,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시설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성희롱도 인권위 조사대상이다. 인권위법에 규정된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등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나 제3자(조사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착수)의 진정에 의해서 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피해자의 신청이나 진정이 없어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성희롱 사건의 경우 인권위 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면 구제조치(급박한 경우 긴급구제)나 시정을 권고한다. 또한 책임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구제의 절차



에 대한 징계나 교육,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다. 범죄에 해당한다는 의심이 있거나 확정적인 경우 수사의뢰 또는 고발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요청을 하기도 한다.(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성희롱 사건의 조사와 구제 절차는 표 참조)

결정문은 인권위원들로 구성된 각종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나온다.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고,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3~5인으로 구성되는 분야별 소위원회(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각급 위원회는 사무처에서 조사하고 검토한 보고서를 심의해 의결하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결정문이다. 어떤 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인지는 안건의 내용, 시급성, 위원 간의 의견 일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며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는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권위 결정문이 나오면 당사자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한다. 또한 결정문이나 권고를 받은 기관의 이행 결과를 공표할 수도 있다. 국민에게 결정문을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등에 대한 판단 기준과 구제 절차 등의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인권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1

반갑다,
인권!



“인권위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표명



1. 우리는 이라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에 반대한다.
2. 우리는 이라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군사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3.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4.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이라크와 관련된 사안을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접근할 것을 권고한다.

2003년 3월26일 발표된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다. 당시는 그해 3월20일 미국 부시 대통령에 의해 시작된 이라크 전쟁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한국군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권위가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인권위는 먼저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국제평화의 유지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기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라크 전쟁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미국과 영국의 일방적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며, 수십만의 생명을 유린할 수 있는 반인도적 행위라는 국제적 비판 여론도 강조했다.

누군들 전쟁에 대해 내놓고 찬성하고, 파병을 부추길 사람이 있겠는가. 따라서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내놓고 반대할 명분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정부도 이라크전 지지와 파병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른바 ‘국익’이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내용보다는 그 자체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같은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과연 그럴까. 정작 이를 접한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국가는 단일한 것이지만 일사불란과 획일주의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 행위 자체는 인권위의 고유 업무임을 인정해줘야 합니다.(중략) 국가인권위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든 것입니다. 협의의 정부소속기관도 아니고 고도의 독립적 기구이며 내용상으로는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런 행위 자체는 인권위 고유 업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권위의 의견표명이 있는 다음 날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발언 중 국민에게 공개된 내용 일부다. ‘파리원칙’[●]에 입각해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출범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을 국민에게 확인시킨 것이다.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표명은 전쟁과 평화, 그리고 인권, 나아가 인권위의 존재와 위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 파리원칙은 1991년 유엔이 파리에서 개최한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워크숍을 통해 제정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을 말한다. 이 원칙은 1993년 12월20일 유엔 총회에서 승인(결의안 48/134)된 국제적 문서다.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의무, 구성, 활동방식 등을 담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정책, 조사구제, 교육과 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기능을 수행하고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적어도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파리원칙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적으로 적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도 인권을 양보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표명



인권위는 2001년 11월25일 출범하자마자 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출범 후 닷새 뒤인 11월30일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테러방지법(안) 심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를 보낸 것. 이에 앞서 11월23일 국가정보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발의,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상태였다.

인권위가 그해 12월7일 출범 이후 처음 개최한 청문회의 주제도 테러방지법이였다. 그리고 한국헌법학회 의견조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2월20일 국회에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4월4일에는 김창국 초대 인권위원장이 국회를 방문, 이만섭 국회의장을 만나 반대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테러방지법은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직후의 막연한 공포심을 앞세워 2002년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추진된 것이었다. 인권위가 여기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테러를 예방·방지하고 테러 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테러 용의자의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통신 내용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첫째, 테러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사용함으로써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그리고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을 위반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둘째,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인권위는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셋째, 국정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 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설령 테러가 발생하더라도 국정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했다. 넷째, 국정원에 별도의 테러대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민주적인 국가 운영 원리에도 어긋나며, 특히 국정원의 고유 기능인 정보 수집 이외의 수사 권한, 군 동원 요청 권한을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3년 10월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나왔을 때도 재차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기존의 법·제도 등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가 가능하고 내용상으로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외국인 차별 소지 등이 있는데다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 소지 등이 크다는 이유였다. 이는 분쟁과 대테러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인권보호가 인권위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점에서 제기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이후에도 정부와 국회에서 제정 시도가 계속 있었으나 인권위의 반대와 시민단체의 저항으로 국회 심사가 중단됐고 그후 여러 차례 수정안이 상정됐음에도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유사한 법률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역시 인권침해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법안과 검토 보고서에 기본적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따라서 향후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인권과의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결국 테러방지법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 표명은 국민의 기본권이 안보나 국익 등을 명분으로 희생돼온 인권의 원칙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만하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

인도주의 대북식량지원 권고



생존보다 절박한 인권은 없다. 인권위가 2008년 9월30일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 추진을 통일부 장관에게 권고한 배경이다. 인권위는 대북 식량 지원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추진하고 그 분배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국내외적인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하기 위해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북한의 식량난을 방치할 경우 북한 주민의 생존이 심각한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같은 해 8월부터 북한의 식량부족 상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국내외 구호단체들이 정부에 대북 식량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오던 차였다. 상시적으로 120만t 가량의 식량 부족을 겪어오던 북한이 2006년, 2007년 연이은 큰 수해로 식량 생산량 감소, 우리 정부를 비롯한 외부 지원 중단, 국제 식량가격 폭등, 국경지대 식량 유입 감소 등으로 사정이 더욱 악화됐다는 보고를 접한 후의 결정이었다.

인권위의 이 같은 결정은 2006년 12월11일 ‘북한 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에서 이미 천명한 기준을 토대로 식량문제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취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북한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차원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대처는 반드시 필요하나 그것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불모로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건 인간의 생명보다 더 절박하고 중요한, 인권의 본질적 사안은 없다는 원칙의 환기인 셈이다.

국제사회도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빗딧 폰타폰은 유엔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고하면서 일

관되게 인도주의적 지원의 지속과 투명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CESCR)도 2003년 12월12일 북한에 대해 24가지의 권고 사항을 제시하면서 식량 지원과 관련해 “국제 식량 원조에 대한 취약집단의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식량프로그램에서 이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을 언급했다. 나아가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그 전문에서 북한에 대해 “국제구호단체가 계속해서 모든 구호 필요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주재를 허락할 것”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11년 10월29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발레리 아모스 국장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아모스 국장은 호소문에서 “북한에서 5세 미만 어린이 3명 중 한 명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북한에 식량지원을 한 나라는 95만 달러라는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 핀란드를 비롯해 이탈리아와 폴란드, 호주, 스웨덴, 중국, 브라질, 인도,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등 모두 15개국과 유럽연합 등이다.

그러나 아모스 국장은 “유엔이 올해 대북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한 예산 2억1800만 달러 중 7400만 달러만 걸쳐 30%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북한 식량 사정의 절박함을 호소한다. 또 캐서린 버티니 전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역시 대북 식량 지원에 동참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덧붙여 한국이 직접 대북 지원에 나서는 것도 좋지만,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를 통하면 분배의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유지되고 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 주는 울림에 다시 귀 기울일 때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수립 권고

국가 차원의 종합적 실천 방안 제시

인권위는 2011년 10월24일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이하 '권고안')을 수립,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2006년 12월11일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통해 '북한인권'의 범주를 북한지역 내 북한 주민의 인권, 재외탈북자·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간 인도주의적 사안과 관련된 인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권고안은 2006년 입장표명의 내용을 인권의 보편성 견지에서 보다 체계화하고 명확한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권고안에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위해 2010년 실시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정부 등 관련 기관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추진할 정책방안을 모색해왔다. 또한 2011년1월 4명의 인권위원으로 북한인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1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공청회,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1회), 관련 부처 의견 수렴(1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쳤다. 이번 권고안은 1)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2)북한이탈주민(재외 북한이탈주민 포함)의 인권 개선, 3)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3대 인권 현안 등 3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고 △북한인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북한인권법' 등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 △북한인권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제도화 등을 포함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은 근본적으로 북한 주

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 보장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운영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및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우리 정부의 인권외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재외 북한이탈주민 포함)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재외 북한이탈주민 인권문제의 경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법상 난민 지위 보장방안, 국내 입국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북한이탈여성과 제3국 국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규모 탈북사태에 대비한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방안 강구, 보다 실용적인 국내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이 70~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고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인 정책 개발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셋째, 3대 인권 현안으로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로 정했다. 이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남북 분단과 전쟁·납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 현안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고령이라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을 위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인도주의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십자사의 중앙심신사업본부(Central Tracing Agency) 원칙에 따른 추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막다른 골목, 넘어야 할 산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인권위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것은 인권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판단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먼저, 헌법.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나 부득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국제인권법. 우리나라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채택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동 규약 선택의정서에 1990년 7월 10일 가입하고 당사국이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동 규약의 권리를 국내에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자유권규약이 그렇다.

1992년 7월 29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최초 보고서’를 심의한 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1995년 11월 21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은 한국 방문 결과보고서에서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1999년 11월 1일 우리 정부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차 보고서’를 검토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또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4년 4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법무부와 국회에 권고했다. 이 결정은 2001년 위원회 출범 이후 법 폐지를 요구하는 40여 건의 진정이 접수됨에 따라 2003년 초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체계적이고 심층적 검토를 거친 결과였다.

인권위는 우선 국가보안법의 뿌리가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미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폐지가 고려될 만큼 존재의 정당성에서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전면 폐지가 시대적 요구”라고 밝혔다. 이는 부분 개정만으로는 문제점을 고칠 수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기존 형법으로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분석에서 나온 결정이다.

예를 들어 반국가단체에 대한 항목은 내란죄, 외환죄를 통해 충분히 의율이 가능하다. 더불어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제10조 불고지죄나 제7조 찬양·고무죄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덧붙여 인권위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병존하는 모순된 법체계를 지적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가 아닌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시대의 조류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16대 국회에서 폐지안과 법 개정안이 각각 발의되었고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극단적인 대립양상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의 권고가 도마가 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특히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안보위기론과 연결되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논의 자체가 봉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인 것만은 분명하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인권위 결정문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할 것을 기대해본다.

극지에 선 잘못된 신화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



우리나라는 2007년 12월30일부터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다. 그러나 사형제도는 여전히 살아있는 생물이다.

인권위는 2005년 4월 국회의장에게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같은 해 4월 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 따라 사형제 폐지 의견표명을 결정”한 결과다. 인권위는 또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에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며, “우리나라 사형 집행방법인 교수형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를 운영하는 판사와 검사, 교정공무원들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2003년부터 사형제 폐지를 인권 현안 10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형제도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사형제 폐지 이후의 조치에 대해 인권위는 “감형·가석방 없는 종신형, 일정기간 감형·가석방 없는 무기형, 전쟁시 예외적 사형제 유지 의견 등이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법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는 ‘사형제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이 발의해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던 사형제 폐지 법안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지금까지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최초의 공식 의견 제출이라는 의미에 머물러야만 했다.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입장은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제도 집행 정지에 관한 결의안 표결 시 우리 정부의 찬성 촉구, 2009년 8월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2011년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등으로 이어지며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24일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기념 행사, 2008년 1월 사형수 4명 감형에 대한 환영 논평, 2009년 2월과 2010년 3월 일각에서 제기된 사형집행론에 대한 우려 표명 등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 활동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2011년 3월 28일 국제앰네스티(AI)가 발표한 ‘연례 사형현황 보고서 : 2010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지돼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반면 2010년에 4명이 새롭게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2명에 대한 사형 확정 판결도 이뤄졌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확정 사형수는 61명에 달한다. 동시에 18대 국회에서는 2008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2009년 민주당 김부겸 의원, 2011년 10월에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사형 폐지 법안을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는 있으나 집행은 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 제도의 폐지 노력은 계속되나 그 역시 해묵은 논쟁만 계속되는 어정쩡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 결정 이후 6년이 흐른 지금, “모든 이에게 살인을 금지하면서 국가가 공익 목적 달성을 명목으로 살인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윤리적 모순”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사형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고 범죄 억제 효과가 검증된 바 없다는 지적, 오판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위험한 형벌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그렇다. 근본적으로 사형제도가 인권과 양립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볼 일이다.

정통성 없는 법률의 끈질긴 생명력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권고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고 말살하는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사회보호법」을 빼놓을 수 없다. 사회보호법은 1980년 신군부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신군부가 당시 계엄포고령 13호에 의해 실행된 삼청교육 대상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도입한 보호감호처분제도다. 명분은 누범과 상습범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겠다는 것이었다.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수용자는 보호감호, 심신장애 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수용자는 치료감호, 보호대상자가 가출소한 피보호 감호자 또는 가종료한 피치료 감호자에 해당하는 때는 보호관찰을 시행한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정당성이 없었다. 국회가 아닌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된 것이다. 무엇보다 기본적인 법률상식을 위배한 반인권적인 제도다.

우선 보호감호는 형법이나 행형법의 체계상 헌법 제13조(이중처벌 금지)에 위배된다. 형법에 누범과 상습범에 대한 형벌가중 규정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보호감호까지 부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와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보호감호 판결 시 재범의 위험성 유무의 판단 권한을 법관에게 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법 제25조에 의해 가출소, 집행면제 등을 법무부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사회보호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명시된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보호감호가 일반 형벌의 내용 및 행형과 동일한 형태로 규정되어 자유형과 다름없이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2003년 주요 인권 현안으로 사회보호법 문제를 선정하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사회보호법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다양한 조사와 연구, 토론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사회보호법이 신군부의 의도는 물론 교화

측면에서 최소한의 효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례로 피보호감호자의 범죄 중 70~80%가 단순 재산범죄여서 ‘사회 방위’라는 원래 목적과 동떨어져 있고, 출소자의 3년 이내 재범율이 40%에 달해 ‘사회보호와 범죄인의 재사회화’ 역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4년 1월12일 보호감호제, 치료감호제, 보호관찰제 등 사회보호법의 주요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를 치료보호시설에 수용 치료하고, 치료기간을 형기에 반영하도록 하는 치료감호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이후 2005년 4월 사회보호법은 폐지되었다. 후속 법률로 현재 「치료감호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보호감호의 문제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2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2009년 10월 현재 청송 제3교도소의 보호감호 처분 대상자는 77명에 달한다. 또 이 법의 적용 이전, 즉 2005년 이전 징역형과 보호감호 처분을 동시에 선고받고 아직 징역형이 끝나지 않은 수형자가 무기수 11명을 포함, 모두 1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최후의 1인이 보호감호처분을 마치게 되는 시기는 2035년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폐지된 법의 적용이 사실상 30여 년이나 지속되는 것이다. 이는 최초 사회보호법이 도입돼 그것이 폐지되기까지의 기간보다 더 긴 시간이다. 사회보호법 폐지 이면에 드리운 그들은 여전히 논란거리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는 조화롭게 만날 수 없을까? 양심상의 이유로 징총을 할 수 없다며 병역을 거부한 이들, 1950년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만 명이 넘고, 2011년 4월 기준으로 900여 명이 복역 중이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2004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총 9건의 진정을 접수했다.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제해줄 것”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의견제출을 해줄 것” 등이었다. 그리고 2004년 10월18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윤모(24)씨와 최모(23)씨는 “매년 70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수감되고, 2004년 8월 양심의 자유보다 국방의 의무가 우위에 있다는 현재의 결정으로 2005년 1000명 이상의 병역거부자가 처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시급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줄 것”을 유엔 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를 청구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의 조화로운 해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그리고 2005년 12월26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국민의 기본권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헌법 제19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양심의 자유는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내심의 자유에 속하며, 인간 존엄성의 기초로서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최상급 기본권이고 국가 비상 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종교관,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양심에 반해 행동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다. 그

결정에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내에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 당하지 않을 자유,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한 형사 처벌’과 ‘단순한 병역 의무의 이행’ 사이에 양자택일해야 한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일부에서 제기한 안보위협과 관련해서는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안보 위협이 있는 시기에 도입됐고, 특히 국방부가 병력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안보환경이 대체복무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가 설치돼야 할 것이다. 또, 대체복무의 기간은 도입 초기에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권위의 결정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을 우리 사회가 수용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이다. 유엔은 다수의 일반 논평과 결의안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거듭 확인하고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한다. 더이상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인권위가 왜 노동문제를?”

비정규직 관련법 의견표명



“인권위가 왜 노동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죠?”

2005년 4월14일 인권위가 당시 사회적 논란이었던 비정규직 관련 2개 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이 보인 반응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권을 인권의 범주로 생각하지 않던 시절의 한 풍경이다. 결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기간제 법안)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파견법)에 대한 인권위의 의견표명은 우리 사회에 노동인권 개념을 확산시킨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인권위는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용의 불안정과 심각한 차별 대우, 노동3권 행사에서의 제약 등 노동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차별의 해소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관련 정책 검토를 진행하던 중 2004년 11월8일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의견표명을 하게 된 것이다.

인권위는 당시 정부가 비정규직 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등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법률안은 이미 과반수에 달하는 비정규직의 규모를 축소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 확산을 막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해 남용을 방지할 것,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파견법 개정안에 대해서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할 경우 남용 문제

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사용업주가 허용기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고용의무제 조항을 유지하고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결정은 비정규직이 결코 고용의 일반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이 인정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차별이 허용돼서는 안 되며, 노동3권 보장 등 노동 인권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고용 형태로서 비정규직은 ‘예외적,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인권위의 노동인권 보호 원칙은 이후에도 흔들림 없이 견지된다. 2009년 6월10일 2년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에서 인권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사용기간 연장이 “비정규직법이 소폭이나마 만들어낸 정규직 전환 효과를 위축시키고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비정규직 근로자로 대체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늘릴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2011년 11월 현재 정규직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600만 명에 달한다. 노동인구 3명당 1명꼴인 이 숫자는 비정규직이 더 이상 일부 소외계층만의 문제나 개별적인 노사 문제를 떠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가 예초부터 ‘제한적 고용형태’ ‘차별 금지’라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인권위의 경고에 좀 더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다시 한 번 노동 인권의 원칙 속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스포츠는 인권이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이제 스포츠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 나선다. 전근대적인 인권침해가 존재하지 않는 스포츠, 누구나 즐겁게 참여해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스포츠, 움직임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삶의 풍요로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스포츠를 달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꿈을 선언한다.”

인권위가 제정한 ‘스포츠 인권 헌장’의 일부다. 인권위는 2010년 12월6일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를 결정했다.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에 내실을 기하고 △관련 정책의 지속적, 체계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범적 기준을 설정해 제시함으로써 △스포츠 관련 당사자 스스로 인권 친화적 스포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은 헌장과 폭력 예방, 성폭력 예방, 학습권 보호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각 시·도 교육감, 대한체육회장에게 이 같은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채택·이행할 것과 세부 실행 매뉴얼을 제작해 스포츠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미 2007년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엘리트 위주의 스포츠 정책을 인권 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체계적인 학생선수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더 큰 틀에서의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와 증진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인권위가 2006년부터 추진해온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 인권 헌장은 ‘스포츠는 신체를 이용해 나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인권’임을 선언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스포츠 인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

성폭력 예방 가이드라인은 스포츠 분야에서의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정책 입안 시 필요한 기준과 구체적 실행 매뉴얼을 제정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시했다.

학습권 보호 가이드라인은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운동에만 치중하지 않고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라는 점과 이와 관련한 정부나 교육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일선 지도자가 오로지 경기 성적을 이유로 신분이나 지위를 위협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호의 핵심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 3개 분야의 가이드라인은 해서는 안 되거나 주의해야 할 행동규범 뿐만 아니라 예방 정책 수립 필요성, 대상자별 예방 교육, 사건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절차 및 체계, 정책 이행의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포함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정책 관계자들은 정책 기준 및 지침을 수립할 수 있어 현장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보호막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뿌리내려 스포츠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쏟아 부은 땀의 보람을 느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저기 사람 있어요”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 개선 권고



“저기 사람 있어요.” 2009년 1월20일 서울의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를 지켜보던 이들이 울부짖던 말이다. 용산참사는 강제철거가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해 3월 인권위는 늦었지만 강제철거에서 거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마련해 국토해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강제철거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침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총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다. 즉 강제철거는 해당 거주민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거주민 자신이 원하는 주거공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또한 강제철거는 원하지 않는 전학 등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고, 생업 종사를 어렵게 할 수 있어 노동권 침해를 유발한다.

이처럼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인권규범은 무리한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1997)은 사회권규약이 정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국가는 개발사업에서 적절한 주거 대책 없이 강제 퇴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정부보고서 최종견해(1995년, 2001년)에서 강제철거 피해자 수와 강제철거 발생 시의 구체적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주거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과 민간 개발사업의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임시주거 시설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가 제시한 강제철거의 기본원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

해 퇴거 절차 완료 후 강제철거 가능 △충분한 협상 기회와 적절한 보상 제공,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고지 △공무원(또는 그 대표자)의 입회 및 그들의 강제철거 상황에 대한 관리 △겨울철과 야간 등 부적절한 시기의 강제퇴거 금지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제조치 제공 등이다.

혹자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굳이 인권위가 왜 제시하느냐고 의아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이미 준수되고 있는 이런 원칙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이 원칙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예방하고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의 불이행 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하도록 요청했다. 또 경찰청장에게 강제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거업체나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폭력 문제, 철거업체가 법적 자격 없이 경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문제를 예방·처리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힘을 쓸 것을 권고했다.

사실 강제철거는 국가기관 외에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당한 강제철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따라서 국가가 자의적인 강제퇴거에 관여하거나, 다른 제3자의 강제퇴거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거나, 강제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인 존중 의무, 보호 의무, 실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강제철거란 개념은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자주 사용되지 않는 희귀어라고 한다.

이제는 일상 언어가 된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권고



한 나라에 파리원칙에 입각한 국가인권기구가 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있다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 틀은 갖춰진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은 국가 인권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인 인권정책 종합 계획이다.

인권의 역사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1993년 빈 세계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한 '빈 선언과 실행계획'은 각국의 국가인권기구 설립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한다. 이어 국가인권기구가 각 나라에 설립되었듯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1993년 호주가 수립한 이후 2005년 5월 현재 20여 국가가 수립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2001년 5월 21일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위원회로부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2006년 6월 30일까지 보고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NAP에 관심을 갖고 200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NAP 수립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해 4월 국회에 특별보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그해 10월 인권위가 NAP안을 마련해 권고하면 이를 기초로 NAP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권위는 3년여 동안 NAP 권고안을 작성, 2006년 1월 정부에 권고했다. NAP권고안은 한국 사회의 인권증진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 제정과 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5개년 계획(2007~2011년)으로 제시한 NAP권고안은 제1부 NAP의 개요와 추진방법, 제2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 제3부 인권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주내용으로 했다.

인권위는 NAP 권고안 작성과정에서 국제기준을 비롯한 보편적 인권기준을 준수하면서 실태조사와 정부부처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쳤다. 인권위가 NAP 권고안을 정부에 통보하면 정부가 주관 부처를 선정해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NAP를 수립하기로 되어 있었다.

인권위 권고를 받은 정부는 법무부를 주무 부처로 해 2007년 5월 22일 인권위 권고를 기초로 인권NAP를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NAP는 인권위 권고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즉각 "인권NAP는 5년간 시행해야 할 중장기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원칙과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고, 구체적 일정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 사형제도,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도 등의 주요 쟁점이 여전히 담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인권위 권고안의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으나 정부안은 장애인 보험가입 문제, 민간부분 고용차별 문제, 빈곤아동 보건의료제도 문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 문제,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계획은 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범국가적 인권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해 국내외에 국가인권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분명히 큰 의미가 있었다.

정부가 수립한 인권NAP는 2011년이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고 이제 제2기 NAP를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도 제2기 NAP권고안을 준비 중이다. 제1기 인권NAP는 우리 사회 주요 현안들의 핵심, 본질,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적 화두를 제시했고 논란도 있었다. 제2기 NAP는 1기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이제 일상 언어의 자리로 내려온 인권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2

벼랑 위의 공권력



국가 독점 물리력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

여의도 농민시위 과잉진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위도중 사망한 고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조사 결과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사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 12월27일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루 전 날 인권위가 그해 11월15일 여의도 농민시위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제출한 진정사건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10인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꾸려 서면진술요구 등 관련 기록 조사, 진압기동대 실지조사,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각 방송사 취재자료 입수 및 사실조회, 수차에 걸친 현장조사와 검증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전씨는 방패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고 머리가 손상된 상태에서 연이어 경찰봉 등으로 폭행당했고, 홍씨는 달아나던 중 방패로 얼굴과 뒷목을 가격당해 입은 손상 때문에 각각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과잉진압 사실은 곳곳에서 발견됐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경찰의 진압규칙 위반이었다.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 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경찰장비사용규칙」은 방패 날을 세우거나 내리찍는 행위를 금지하고 진압봉도 하체를 위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당일 촬영 자료에 나타난 영상을 보면 이 같은 규정을 무시했음을 알 수 있다.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단순 가담자, 저항을 포기하고 도주하거나 쓰러진 사람들에 대하여 발길질을 하거나 방패와 곤봉으로 공격한 사례도 있었고, 부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위해 대기하던 여성과 노인들을 방패로 가격하기도 했다. 시위대 해산 때 집회 주최자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하고 3차례 이상 해산명령을 내린

뒤 해산 또는 검거해야 하는 ‘해산 검거 시 안전수칙’도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시위대를 검거할 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무차별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실제로 이 집회로 인해 경찰 측에서는 부상자 218명(중상자 33명 포함), 버스 전소 등 9500여만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농민 측은 다수(경찰 주장 113명 농민 측 주장 600명)가 다치고 그중 2명이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농민 사망 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 해당 부대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경비부장 등은 경고 조치, 서울청 기동단장 징계, 각 격대장,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와 실제 가혹행위를 한 부대원들에 대한 불법행위 정도에 따른 징계를 각각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후 당시 경찰청장은 사퇴했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사과문을 통해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국가가 독점한 물리력이 고도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 속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의 행사는 불편부당하고 공정해야 하며, 언제나 국민의 감시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정당성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과도한 경찰력 사용이 근원

촛불집회 시위 관련 권고



촛불집회는 말 그대로 촛불을 들고 주로 밤에 열린다. 2009년 9월24일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금지 위헌결정을 하기 전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시비를 피하기 위해 문화제 형식으로 열렸다. 문화제 형식 이어서 평화적으로 개최된다.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결정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100여 건이 넘었다. 인권위는 이 상황에서 2008년 7월11일 직권조사 결정을 했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는 등 진정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권위가 촛불집회의 전 과정,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한 것은 아니다.

촛불집회는 크게 세 가지 양상으로 전개됐다. 첫째는 촛불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진행된 경우, 둘째는 촛불집회 참가자와 진압경찰 사이에 빚어진 물리적 충돌로 인해 경찰이 시위대에 의해 폭행을 당해 부상하고 경찰 장비가 손괴된 경우, 세 번째는 양측이 물리적 충돌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 충돌이 있었더라도 경찰이 과도하게 대응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 중 인권위는 인권위법상의 조사대상인 세 번째만 조사하고 판단했다. 두 번째 경찰이 당한 피해는 형사사법절차나 민사소송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민간인 간에 발생한 인권침해나 피해도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이 아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과잉진압과 과도한 통행제한, 반성문 작성 강요, 식별 표시 미부착 등 크게 3가지 유형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잉진압은 다시 과도한 공격행위, 과도한 장비사용, 투척행위에 대한 통

제미비, 공격적인 진압작전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표적인 사례만 살펴보면 진압경찰의 과도한 공격은 후퇴하는 사람, 지켜보는 사람, 사진 촬영하는 사람, 폭행을 만류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여성과 아동, 의료지원자 등이 각각 대상이 돼 부상 등의 피해를 주었다. 또한 시위자 진압과 해산과정에서 방패와 경찰봉, 살수차, 소화기 등을 규정을 위반해 사용했다. 반성문 작성은 강요라고 할 만한 증거는 없었으나 미성년자를 연행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권유한 사실은 있었다. 이는 피해포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 양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 또 진압작전에 참여한 일부 경찰들이 명찰을 검은색 테이프로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의 과잉행동에 대한 문제제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도한 공격적 진압으로 일부 시위대에 부상을 입힌 데 대한 책임을 물어 경찰청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는 인권침해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방어 위주의 경비 원칙’을 엄수할 것과 일부 진압작전의 지휘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본부장과 4기동단장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집회 현장의 시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통행을 제한하지 말 것과 살수차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 마련, 소화기를 사용한 집회 진압 등을 하지 말 것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이들에게 반성문이라는 내용과 형식의 자술서를 받는 관행도 중단하고, 전·의경 근무복에 명찰과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식별 표시를 부착할 것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일부에서는 편향된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인권위법이 정한 조사대상에 한정해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적정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해 오로지 헌법상 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찰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 경찰비례의 원칙

촛불집회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인 적법절차, 과잉금지, 경찰비례의 원칙은 일반적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할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이다. 먼저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 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특히,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 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우리 헌법학과 헌법재판소에서 확립된 견해다.

또한, '과잉금지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경찰 작용을 통해 이루어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압경찰이 정당방위적 상황 등이 아님에도 집회시위 참여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비례의 원칙을 구체화한 국내법상의 법규정 및 집회 진압,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된 규정(대통령령-「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훈령-「경찰장비관리규칙」 등) 등은 공권력 행사의 남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훈령과 지침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국제규범도 현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국가 간의 합의이므로 역시 공권력 행사의 필요최소한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1979년 12월17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관을 위한 행동준칙」,

1990년 9월7일 제8차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우에 관한 유엔회의에서 채택된 「법집행관들의 무력 및 무기 사용에 관한 기본원칙」 등이 그것이다. 국제조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조항들은 법률 제정과 실제 법집행 과정에서 최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제적 합의로서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된다. 일반적으로 무력의 사용에 관한 핵심적인 인권원칙은 비례성, 합법성, 책무성, 불가피성이다(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발간 <인권과 법 집행: 경찰 인권교육을 위한 매뉴얼> 1997, pp.84-86).

이 같은 기준과 원칙에도 공권력은 행사과정에서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는 촛불집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국민에 대해 강제적, 권력적 작용을 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찰은, 그러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이 어떠한가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 존중의 이념으로 공권력을 적법절차에 따라,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우 신중하고 품위 있게 행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번 촛불집회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원칙과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초석, 소수자의 권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견표명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집회에는 시위뿐만 아니라 행진도 포함되며, 옥내집회와 옥외집회, 주간집회와 야간집회, 공개집회와 비공개집회 모두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이다. 집회의 자유는 또 세계인권선언 제2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1조,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규약」 제11조 등 국제인권규범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실은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지배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형법, 국가보안법이 그것이다. 특히 집시법은 지나치게 많은 집회의 제한이 규정되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03년 11월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집시법 개정안도 그렇다. 인권위는 그해 11월28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개정안 일부 조항에 반대하고,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당시 헌법과 국제규약 등으로부터 형성되는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법익형량이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가 의견표명한 내용은 △ 장기간의 집회독점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집회신고서를 집회·시위의 360시간(15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단축하는 개정안 반대 △폭력을 유발한 집회 주최자에 대해 남은 기간 집회와 동일 목적 집회를 금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신설 반대 △ 집회 금지 장소에 대한 개정 명확화 △확성기 사용 등 소음제한 조항 신설 시 소음기준은 법률로 정할 것 등이다.

집회시위의 자유 신장을 위한 인권위의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2005년 2월 전북 부안군 핵폐기장 설치반대 집회, 같은 해 12월 서울 여의도 쌀

개방반대 집회, 2006년 11월 포항건설노조집회 등과 관련,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확인하고 공권력의 신중한 집행을 권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2008년 1월 집회금지통고 관련 법령과 사전차단조치 관행 개선 권고를 했다. 장소경합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통고제도는 나중에 신고된 집회의 개최를 저지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폐지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권고한 것이다. 사전조치는 집회장소에 집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주변 지역에서 집회 참가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사실상 격리 차원에서 연행하는 행위, 합법 집회의 경우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물리력을 사용해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 또는 제한하는 행위 자제 등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한 것이다.

2009년 6월 9일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6개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에 의견표명을 했다. “집회의 자유에는 복장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현재의 결정(2000헌바67,83병합)에 반하는 복면 착용 금지 규정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영장 없이 통고만으로 시위자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

집회의 자유는 단순히 개인적 기본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탱하게 하는 민주사회의 초석이자 소수자의 권리다. 헌법재판소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대의 과정을 보완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헌법적 의미를 가진다”(2000헌바67,83병합 등)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검사를 고발하다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2002년 10월26일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조사실에서 살인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조모 씨가 사망하고 공범으로 긴급체포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에 11월 1일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 결정 전날과 이후 관련 피해자들의 진정이 잇따르면서 조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조사 결과, 흉모 검사 등 9명은 진정인들의 체포·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필요성, 긴급성 등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하면서 체포 사유와 변호인의 조력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피의자들을 인치한 후 자백을 강요, 폭행,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살인혐의를 부인했지만 폭행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조모 씨는 피진정인의 가혹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흉 검사를 비롯한 9인의 피진정인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인권위는 불법체포, 감금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만 고발과 수사의뢰를 했다.

인권위는 당시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생한 본질적인 배경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위법한 긴급체포와 그 과정에서 고지 의무 등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데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긴급체포 남용이라는 불법 수사 관행의 근절을 위해 긴급체포 요건을 강화하고, 체포 후 영장을 발부하는 사후체포영장발부제도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

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23일 서울지검은 “사망자가 긴급체포 대상자고, 피고발인들이 이미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되는 등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불법체포나 감금, 직권남용 등의 조항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린 뒤 이를 인권위에 통보했다. 이에 인권위는 같은 해 7월 16일 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10월10일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인권위는 대검찰청에 재항고까지 했다.

일면 핑퐁게임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은 기실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 인권위가 이 사건에서 주목한 부분은 가혹행위 발생의 근본 원인이 수사기관에서 편의적으로 반복해온 긴급체포와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에 있다는 것이다. 곧 기소 요구와 항고, 재항고의 결정은 체포영장주의가 무시되는 관행에 쐈기를 박겠다는 인권수호기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다.

체포영장주의가 뿌리내린다면,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피의자에 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범죄 혐의를 찾으려 과학적인 수사와 증거수집에 더 노력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범죄 혐의 입증에 대해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뒤 피의자가 체포된다면, 수사관들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통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려는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인권위의 사상 초유의 검찰관계자 고발과 수사의뢰 조치는 법 집행기관에서 이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시로 위반하는 아이러니를 극복하고, 법 집행의 기초단계인 체포, 조사과정에서부터 적법 절차를 따를 때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1세기 고문의 추억

경찰의 고문사건



2009년과 2010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 고문행위가 발생했다. 처음엔 많은 사람이 귀를 의심했다. 우리의 기억 속의 고문은 1970~80년대 독재정권 시절 음습한 지하실에서 무시무시한 고문도구들이 동원되고 생과 사를 넘나들게 하는 잔혹한 행위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가혹행위 정도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고문이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가 1995년 1월9일 가입한 고문방지협약「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는 고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 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합법적 제재조치로부터 초래되거나, 이에 내재하거나 이에 부속되는 고통은 고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진정인 이모(45)씨는 “2010년 3월 A경찰서에서 경찰이 범행을 자백하라며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스카치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자신을 폭행했다”며 2010년 5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유사한 내용의 진정이 3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찰서 사무실에 CCTV 사각지대가 있고, 피해자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고문 장소, 가해자, 고문 양태가 동일해 고문이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어 2009년 8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구치소 등으로 이송된 피의자들 중에서 이미 출소한 이들을 제외하고 수감 중인 32명을 대면 조사한 결과, 그 중 22명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범행 사실과 여죄 등을 자백하라며 심한 구타, 입에 두루마리 휴지나 수건 등으로 재갈을 물린 채 머리빚기, 날개꾸기(뒷수갑 채운 채로 팔을 꺾어 올리는 행위)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구치소 입감 당시 확인서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 등 고문 피해 흔적이 드러나는 정황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피의자들이 체포 직후 스스로 심경 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자백했다며 고문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고문 피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같은 시기 사건 관련 경찰들이 소속된 팀에 의해 체포된 다수의 피의자들이 분리 수감되고 서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장소(해당 팀 사무실 CCTV 사각지대와 호송차량 안)에서 유사한 양태의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일부 고문 피해와 관련한 물적 정황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을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서에 대한 직무감찰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가해 경찰관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 결정으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경찰의 고문에 대한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경찰 내부의 무분별한 성과실적주의가 낳은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본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인권위 출범 이후 착실히 다져온 대한민국 인권의 위상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가 미루고 있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걱정을 그나마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차 피해 가해자가 된 경찰

여중생 성폭력사건 수사과정 인권침해



경찰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것인가? 밀양여중생 집단성폭행사건을 수사한 경찰들은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준 가해자였다. 피해자 신원노출 등 피해 사실 공개, 부적절한 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 불안감, 자괴감, 성적 수치심 조성 등 수사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것이다.

인권위는 2004년 12월13일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와 관련 총 29건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돼 있는 상태였다. 인권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를 개선하도록 수사기관에 권고해 이에 대한 수사지침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포착,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 상태를 점검, 촉구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이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피해 사실이 쓰인 상세한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건 담당 수사관들은 울산경찰청과 관내 경찰서 4곳에 진술 녹화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중생들을 울산남부경찰서 2층 형사과 조사실로 불러 가해자를 세워놓고 성폭행 가담자를 골라내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피해자들과 가해자 가족들이 접촉하도록 방치해 피해자들이 협박을 당하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경찰은 또 조사 당시 여경을 불러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는가 하면 수사관이 “너희가 밀양 물을 다 흐렸다”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는 2004년 12월 30일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사실을 누설한 울산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 금지 의

무’,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울산경찰청장과 울산남부경찰서장에 대해 관리책임을 묻고 재방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성폭력 피해아동이 형사절차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2차 피해를 당해 인권을 침해당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일선 수사기관의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모욕적 수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것. 대법원은 2008년 6월 16일 이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관련 규정은 많았다. 「성폭력특별법」을 비롯해 「인권보호수사준칙」 「범죄피해자보호규칙」 등 각종 지침, 훈령 등이 있었다. 경찰청은 이런 규정들을 집약해 130쪽 분량의 매뉴얼로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담당 경찰관들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 이는 성폭력사건 수사전담반 경찰들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울산지방경찰청에서는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관련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고, 수사 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준수하라는 공문도 수차례 전달했다.

그럼에도 이런 규정과 원칙은 준수되지 않았다. 수많은 사건에 치여 사는 일선 경찰관의 어려운 처지 때문이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변명이 될까? 경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특히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수사·재판 절차 더 줄이자

성폭력 피해아동 인권보호 및 지원 정책 개선 권고



인권위는 2004년 8월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공판과정에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법률 등 제도상의 미비로 2차 피해자가 되는 점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여성부 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이는 아동성폭력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이고 동시에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공판 담당기관의 성폭력 피해자 담당의사들에 대한 잦은 출두 요구로 인해 빚어지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 아동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형사 절차상 수사공판 관련 정보의 소외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또한 2004년 12월 밀양 여중성 집단성폭력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경찰관 2명을 수사 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에도 성폭력 피해아동의 2차 피해는 반복되었다. 2008년 정성현 사건에 이어 조두순 사건까지 아동성폭력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피해아동은 지속적으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조두순 사건의 경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음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음주감경 조항을 적용해 가벼운 형량이라는 여론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이 입은 2차 피해가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는 또 한번 충격에 휩싸였다. 즉,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녹화를 수차례 반복하고, 1시간에 한 번 배변봉투를 갈아야 하는 피해자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철제의자에 앉혀 장시간 조사를 받게끔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와 함께 성폭력 피해아동이 수사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각계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권위의 시각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인권위는 2010년 8월 3일 성폭력 피해아동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여성가족부, 대법원,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경찰청 등에 권고했다.

우선 형사 절차상 피해아동 보호조치다. 수사과정 최초진술 시 검경, 전문가 동시참여 등 진술 최소화와 조서 전문성 강화, 전담 법관 연수 시 아동진술 특성 관련 교육 의무화 등이다. 또한 영상장치를 통한 진술과 신문 활성화, 재판과정에서 증인신문 시 피해 보호조치 마련, 피해자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등 사생활의 비밀 및 정보접근권 보장 등이다.

또한 피해아동 치료와 보호시설 확대, 가해자출소정보통지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조치 명시 등 피해아동 지원과 보호조치를 권고했다. 피해아동이나 신고 교사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학교의 적극적 대응력을 높이고 예방교육의 실질화 방안 마련, 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프로그램 및 제도 이행실태 평가 등도 포함됐다.

한편 2012년 3월부터 성폭력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수사·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1년 9월 15일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조항을 신설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 성폭력 피해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내용을 손질한 이 법안이 시행되면, 성폭력 피해아동이 수사과정에서 반복조사나 대질신문 등으로 인해 인격권 등을 침해받을 여지를 줄이고, 공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책임 추궁의 성격을 띠는 질문 등에 맞서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적극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성폭력 피해아동이 형사절차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청신호라 할 만하다.

전·의경 제도 폐지하라

전·의경 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전투경찰은 1976년 9월1일 대간첩작전을 주요 임무로 창설됐다. 의무경찰은 시위진압, 범죄예방 수찰, 교통 등 치안보조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1982년 12월31일 창설됐다. 전경은 경찰청장이 매년 2월 소요인력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일반 입영 절차에 따라 군 훈련소에 입대 후 5주 군사교육을 받고 무작위 추출을 통해 차출된 신병들의 신분을 전환해 구성한다. 의경은 전경과 달리 군입대를 대신해 자원해 복무한다.

인권위는 2011년 10월25일 이 같은 전·의경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경찰청장,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는 인권위가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권고다.

인권위는 2011년 1월6일 A지방경찰청에 의경 입대한 신입병이 선임병으로부터 폭행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후 혈액암 진단을 받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접수하고 기초조사를 벌였다. 기초조사 결과, 전의경 선임병들이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행위가 조직 안정과 군기 유지를 이유로 지휘관에 의해 묵인·방조 또는 축소·은폐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 등이 제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의경뿐 아니라 조사범위를 확대해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2007년, 2008년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 당시 인권위는 주5일제 도입, 영창제도 폐지, 구타 방지대책 수립, 시설 및 생활문화 개선 등 종합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과 기획예산처 장관,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권고에 대해 경찰청이 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전·의경 관리와 관련된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구타 가혹행위 예방을 위

한 대책 마련, 훈련 체계 정비,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한 것이다. 부대 내 가혹행위 등은 이미 책임자 형사처벌 등이 이뤄져 인권위 차원의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의경 폐지 권고는 이들의 주요 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인력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법의 합목적성에 반한다는 점을 감안했다. 전경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군훈련소에서 전경으로 강제 전환복무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하며, 의경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실제 교통단속 등 일선 경찰업무보다는 시위진압부대 등에 배치되면서 부담이 가중되어 복무 부적응자 발생 이유가 되고 있다는 판단도 감안했다.

사실 경찰청은 이미 2011년 1월 일선 전경부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계기로 "2012년 이후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국방부도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군인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에 대해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성숙한 국가와 사회의 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인권위가 폐지 권고를 공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나아가 인권위는 국민의 인권보호, 인권 향상, 질 높은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도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제 전·의경 제도는 수명을 다했다.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될 때부터 그랬다. 이왕에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것이 낫다.

귀신 잡는 해병의 관행적 탈선

해병대 총기사망 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권고



2011년 7월4일 오전 11시45분경 해병대 2사단 소속 해안 초소 생활실에서 한 상병이 K-2소총과 수류탄을 상황실에서 훔쳐 부사관 등 동료병사 5명에 대해 총기를 난사해 4명이 사망하고 본인을 포함해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이후 해병대 내에서 발생한 가장 큰 규모의 총기사망사건이라는 점에서 인권위는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사건현장을 방문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날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두 달여간에 걸친 직권조사 결과, 해병대 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악습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먼저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혹행위가 관행적으로 지속됐다. 많은 양의 과자 또는 빵 등을 강제로 먹게 하는 'PX빵', 가슴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폭행하는 '엽문', 팔꿈치로 허벅지 누르고 아파도 참게 하는 '악기테스트', 다리에 테이프 붙여 체모하기, 담뱃불을 손바닥이나 손등에 대거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 구타 등.

'기수열외'라는 해병대의 독특한 가혹행위도 드러났다. 기수열외는 해병대 조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 방식은 가해자인 선임이 피해자보다 후임 기수에게 피해자에게 반말과 폭행을 가하게 해 인격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다. 인권위 조사 결과, 총기사건의 피의자가 기수열외를 걱정하는 메모와 당사자의 진술, 실제 후배 기수인 한 일병이 피의자에게 반말을 하고 무시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2011년 3월 해병1사단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서도 기수열외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금지하고 어길 시 엄격한 처벌 지침을 마련할 것을 해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기수열외가 확인돼 이는 해병대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장병 신상관리의 미흡, 부대 내 음주 등 부실한 부대관리 실태도 드러났다. 총기사건 발생 전까지 중대장, 중대행정관 등 간부들은 총 31회의 피의자 면담과 관찰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0년 12월에야 A급(신상에 문제점이 있는 자)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특이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음주는 2011년 1월부터 5월 사이 2~3차례 단체 회식 중 소초장 주관으로 이뤄졌고, 피의자는 사건 당일에도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총기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해병대의 변질된 기수문화와 폐쇄적 병영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사건 소초의 해병대원들은 선임병으로부터 '병들만의 세계'라는 폐쇄적인 의식교육을 받고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선불리 간부에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해병대 조직을 위해 기수와 서열에 따른 위계질서 및 간섭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관행으로 인해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뎌야 하는 통과의례' 심지어 '선임들의 친근감 표시에 의한 장난행위'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의식이 팽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 인권보호와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을 권고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종합적 관리운영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예산반영 등을 권고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한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그들만의 자부심의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은 '사람 잡는 해병이나'는 우려를 나오게 만들었다. 많은 국민은 실망했을 것이다. 해병대가 나설 차례다. 인권위가 권고한 대로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정밀 진단 등 실태를 점검하고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귀신도 잡을 것이다.

‘막말’ 판사에 막막한 법정

폭언에 의한 인격권 침해



장면1: 2009년 4월23일 민사소송 법정. 재판이 진행되던 중, 진정인이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아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며 질책. 40세가량으로 보이는 재판장이 69세 노인인 진정인에게 ‘버릇없다’는 표현으로 질책.

장면2: 2010년 1월29일 민사조정 법정. “신00(진정인의 할머니·70)씨 딸(진정인의 어머니)이 많이 아픈가본데 구치소에 있다 죽어 나오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아픈 사람들이 구치소 들어가 죽어 나오는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낭떨어지에 떨어져봐야 죽는 줄 아나보네. 지금 딸 목숨이랑 돈이랑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귀가 안 좋네.”

장면1 사건의 당사자로 모욕감을 느낀 ‘버릇없는’ 노인은 결국 인권위에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이 사건 소송대리를 맡았던 변호사는 인권위에 “당시 법정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고,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 그대로”라고 증언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손아랫사람에게나 사용되는 ‘버릇없이’라는 말을 들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사건 발생 다음 날 소송대리를 사임했다”고 했다.

반면 피진정인 판사는 “재판장의 허락 없이 재판장과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끼어들어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를 준 법정지휘권 행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통상적으로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

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비록 진정인이 법정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고, 재판장은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40대인 판사가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지휘권이란 것도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국민에게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고 판사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장면2의 판사의 발언도 사회통념상 70세의 노인에게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게 한 것이고 장애 관련 발언은 의도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발언이므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두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 판사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법정에서 일부 판사들이 재판 대상자에게 고압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빚는 일이 잇따라 제기되고 다른 공무원들의 행태까지 제기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들의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공무원은 공복으로서 친절 의무, 성실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다행히 법원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언행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해 ‘말을 막지 말자’ ‘경어를 쓰자’는 등 지침을 정했고, 서울가정법원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설문조사와 대화법 특강 등을 추진했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방청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곳도 있다. 대법원은 판사들의 모범적인 행동 요령을 보여주는 동영상까지 제작, 배포했다. 이 같은 노력이 인권, 그 위에서 군림하는 법원이 아닌 인권과 어깨동무하는 법원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3

수사에 대처하는 자세



경찰은 제복이 신분증이다?

불심검문



당신이 갑자기 경찰의 불심검문을 당하게 됐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경찰관이 불 때 수상한 행동을 했거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고 했거나, 어떤 범죄 사실에 대해 안다고 인정되었을 때(「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1항)다. 순전히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누구든 불시에 검문을 당할 수 있다. 이때 순순히 경찰의 검문에 응해야 할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김철수(가명)씨는 2006년 9월14일 밤 9시경 공원에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런데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이 김씨에게 다가와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검문 이유를 고지하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기소중지자 일제 검문검거 기간이었다. 경찰이 보기에 김씨의 의복이 남루하고, 얼굴이 창백해 마치 수배자처럼 보였는지는 모른다.

김씨는 순순히 신분증을 제시했다. 거리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럴 것이다. 범죄인 취급을 받고 기분 좋을리 있겠는가. 그래서 김씨는 수배조회를 마치고 돌아가려는 경찰에게 말했다. “경찰관은 신분증을 안 보여줍니까?” 경찰은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복이 신분증입니다.” 정말 그럴까? 김씨는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다.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는 대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 이 절차는 법에 규정된 것이지만 그 취지는 검문 대상자를 위한 것임과 동시에 경찰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즉, 경찰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는 한편, 경찰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

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또한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찰의 신분증은 검문 대상자에게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해주고 검문 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반드시 검문 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경찰이 신분과 소속, 검문의 목적까지 밝힌 상태에서 ‘제복=신분증’이라는 경찰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권위는 경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이렇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신분증 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경찰관의 공무원증을 신분증으로 규정한 이상, 정복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인권위는 경찰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것이고, 더 나아가 국가의 모든 공권력 작용상의 절차적 적법성을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해당 경찰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이는 공권력을 행사할 때 그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과 절차 또한 적법해야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그럼, 불심검문을 하면서 경찰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때 대상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고, 그 의사에 반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위법한 불심검문에 항의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경찰서 동행, 내 의사가 중요

강제 임의동행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찰서에 가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영장에 의한 경우. 또 다른 하나는 영장은 없지만 현행범체포 또는 긴급체포되는 경우다. 반면 내가 동의해서 가는 경우가 이른바 임의동행이다.

김철수(가명)씨는 2006년 9월 고향을 떠나 타지를 방문해 길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 택시를 탔다. 그리고 택시 안에서 담배 피우는 문제로 운전기사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찼다. 택시기사가 때마침 옆을 지나던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손짓을 했고, 택시를 뒤따라 운전 중이던 부부가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김씨를 곧바로 연행할 수 있을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았을 리 없다. 그럼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형사소송법」 제211조)를 말하는데 김씨는 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긴급체포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의하면 긴급체포의 요건으로 다음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이 역시 김씨에게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록 김씨가 폭행사건 용의자라고 할지라도 김씨를 경찰이 연행할 수 있는 방법은 임의동행, 즉 김씨의 동의에 의한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인권위 조사 결과, 김씨는 임의동행에 거절의사를 표하고 임의동행 동의서 서명에도 “이게 무슨 임의동행이나, 강제연행이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경찰서로 동행되는 과정에서도 김씨는 “끝까지 거부하려 했지만 타

지에서 봉변당하기 싫어 반강제적으로 응했다”고 진술했다. 연행된 김씨는 경찰에게 “지금 조사받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자 경찰은 신분 확인 후 향후 출석요구를 하겠으니 이에 응할 것을 고지한 후 김씨를 훈방했다.

쟁점은 영장이나 현행범 또는 긴급체포의 경우가 아닌 김씨에 대해 경찰이 당사자 동의를 받았느냐는 것. 더욱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경찰청 훈령) 제51조는 동행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유로운 퇴거가 가능함을 고지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2006. 7. 6. 선고 2005도6810)도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해 그 적법성(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임의동행의 요건을 이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적으로 체포·구속된 자의 경우 그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가 있다. 그러나 경찰관에 의해 임의로 동행된 사람의 신분은 법적으로 체포·구속된 자에게 부여하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여러 가지 권리보호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김씨가 경찰관에 의해 경찰서로 동행될 때 그 임의성이 없었던 점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경찰관은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경찰관들에게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자정 이후에도 수사하려면

심야조사



희미한 불빛, 사방이 검은색인 벽, 낡은 탁자를 사이에 둔 두 사람. 옛날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수사실 풍경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는다면 누구든 위축될 것이다. 거기다 평소 같으면 잠들어 있을 심야라면 더욱 그렇다. 수면을 취해야 할 시간에 수사관 앞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심신의 고통과 피로가 심하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받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증언이다. 특히 조사 대상자는 혼자인 데 반해 수사관들은 팀을 이루기 때문에 이들이 교대로 조사 대상자를 밤새워 압박하면 그 중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근 주민을 발로 차고 옆집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한 혐의로 2006년 6월 7일 오후 3시경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된 김철수(가명)씨. 그는 그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30분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조사를 받았다. 경찰 측에서도 심야조사를 하겠다며 특별히 동의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피의자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등 당시 상황이 여의치 않아 동의서를 따로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밤샘 조사를 하는 것이 과연 인권침해인지 여부다. 우선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 제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조사를 받은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 심야조사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사자 이외의 경찰관이 참여하고 조사 대상자의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례의 경우 오후 3시에 김씨를 연행한 상황에서 심야조사를 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경우인지 의문이다. 아울러 위와 같은 내부규칙에서 정한 심야조사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동의도 없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기본권인 수면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경찰 관리책임자에게 권고했다. 인간의 수면·휴식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인간에게 부여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밤늦게까지 조사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으로 해석해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지 모른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찰과 경찰에서조차 심야조사는 민주화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관행으로 규정하고, 본인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치도록 내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과거에 비해 조사 대상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시각도 분명 달라졌다. 수사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 환경이 더욱 악화된 것일까. 아니다.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가 없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단지 수사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시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의 주체인 경찰이나 검찰과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나의 구속 사실은 '서면'으로 알려라

구속 사실 미통지



가족 중 누군가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면 노심초사할 것이다. 구속이라도 된다면 그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알아야 무슨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런데 가족 중에 수사를 받으러 간 줄도 몰랐는데 덜컥 구속된다면 큰일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수사당국은 구속 사실을 가족이나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니 걱정할 것은 없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렇다.

헌법 제12조 제5항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209조는 이를 피의자의 구속 시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51조(준용규정 제100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제23조의2,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7조에는 체포·구속 후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해야 하며,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다시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인권위에 진정된 사례. 무고혐의로 2005년 1월 29일 구속영장이 집행된 김영희(가명)씨에게 검사는 가족 등에게 구속 사실을 알리라며 휴대전화를 주었다. 김씨는 가족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자신이 구속되었음을 알리고 변호인 선임을 부탁했다. 검사는 두세 차례 전화를 거는 김씨를 보고는 가족에게도 응당 전

화를 했겠거니 생각하고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해야 하는 서면통지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문제는 이후에 터졌다. 김씨가 구속되고 며칠 후, 연락이 되지 않는 김씨가 걱정이 된 가족들은 경찰서를 직접 찾아갔고 그제야 구속 사실을 알았다.

쟁점은 검사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전화로 가족 등에게 구속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 문서로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는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안 된다. 현행 법률은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담당자가 직접 가족에게 전화와 서면으로 김씨의 구속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기 때문. 이에 인권위는 검사가 김씨에게 전화로 구속 사실 등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만으로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실 통지에 관한 규정 등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김씨 가족들이 구속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것은 가족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검사에게는 주의조치를,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담당 직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체포·구속 사실 통지제도는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수단의 강구, 당사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 방지 및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화 등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인권보장을 위해 중대한 의미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어느 날 갑자기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잡혀가는 경우가 있었다. 그 가족들이 잡혀간 사람이 무슨 이유로, 언제 잡혀가서 어디에 있는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고문은 받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때로는 변사체로 발견되어 의문사 사건이 된 적도 있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된 절차가 바로 체포 및 구속사실의 통지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수감 중에도 사회와 소통할 수 있다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은 그 순간부터 세상과 단절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로 허용된다. 가족이나 지인과의 접견도 허용된다. 그러나 무제한은 아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논란이다.

김철수(가명)씨는 2004년 4월 30일 경찰관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얼마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검사는 교도소장에게 교도소에 수용 중인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의자접견금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장기간 가족 등과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공급책과의 접견을 통한 도피 및 증거 인멸, 진술 번복, 가족 및 주변인물을 통한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수사 기간 내내 접견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해야 하는 근거를 보자. 수감자에 대한 외부접견교통권은 사회생활의 단절로 인해 파멸로 이르는 것을 방지하고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특히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온다는 판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4항도 근거가 될 것이다. 「피구금자 보호원칙」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같은 국제인권규범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미결수용자의 접견권은 제한할 필요도 있다. 접견을 허용함으로써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시설의 질서유지를 해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김씨의 경우는 어떨까.

우선, 김씨는 소변에서 다량의 러미날이 검출되는 등 공소제기나 범죄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다. 따라서 피의자가 범행을 부

인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조작 및 증거 인멸을 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데도 김씨는 조사가 완료된 후에도 가족 등과의 접견을 금지당했다. 따라서 검사의 김씨에 대한 접견금지조치는 수사 목적을 넘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이뤄진 것으로 김씨의 헌법상 보장된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쟁점은 검사 및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의 접견을 금지할 때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접견을 금지할 수 있는지다. 그동안은 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있었으나, 법원 및 검사에 의한 접견금지 결정의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도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접견금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접견금지 결정을 할 경우 접견금지 대상의 범위 및 그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실시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요청과 피의자의 기본권 보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행해진다. 따라서 접견금지를 하더라도 기간이 얼마가 될 것인지는 그 필요성, 범죄의 특수성, 수사의 긴급성, 접견요구의 절박성, 수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 하되,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도둑 의심도 억울한데 속옷까지

임의수사 과정에서 알몸수색



심야에 모텔 투숙객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진주목걸이를 분실했다. 모텔 청소부 3명이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이 출동해 투숙객으로 하여금 청소부들을 알몸수색하게 했다. 정당한 범 집행일까?

사건은 2006년 2월18일 밤 11시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모텔에 투숙한 여성이 시가 540만원 상당의 반지와 목걸이를 분실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도난신고를 받고 새벽 3시30분경 모텔에 출동했다. 이어 여성청소원들의 방과 소지품을 수색해 피해물품을 발견하지 못하자 물품을 잃어버린 투숙객으로 하여금 여성 청소원 3명(2명은 중국동포)의 신체를 두 차례에 걸쳐 수색하게 했다. 이때 청소원들의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해 수색했다. 알몸수색에서 피해물품을 찾지 못했고 경찰은 3명을 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진술조서를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3명 중 2명은 절도 현장에서의 몸수색에 대해 동의했다고 진술한 반면 1명은 몸수색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없이 수치스럽고 억울하다는 진술을 했다. 이 1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수사관이 범죄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신체 및 주거를 수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닌데도 경찰수사관이 범죄 현장에서 용의자의 신체 및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이 사례와 같이 체포·구속과 같은 강제처분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임의적 방법으로 수사(임의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형사피의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압수·수색·검증과 같은 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 형사피의자 및 관계인의 동의·승낙을 전제로 하거나 성질상 어느 누구의 동의·승낙 없이도 할 수 있는 임의수사는 그 수단·방법에 특별한 제한

이 없고 수사기관의 판단과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피의자 기타 관계인의 권익침해나 불편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해야 한다(경찰최소의 원칙).

이러한 임의수사에서 형사피의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항상 쟁점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경찰수사관이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투숙객으로 하여금 새벽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알몸수색을 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알몸수색을 당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치 못하게 몸수색이 필요하다면 경찰수사관으로서 여성 청소원 3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면서 동의와 협력을 구해 이러한 몸수색 등에 경험이 있는 여성경찰관을 호출해 수색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투숙객으로 하여금 여성 청소원 3인의 몸수색을 하도록 한 것은 이들 여성 청소원들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주었을 것임은 분명하다. 또한 경찰관들은 경찰청 내부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심야조사 금지) 제3항(심야라 함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하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심야조사 동의 및 허락서를 받아야 한다)의 규정도 위반했다.

결론적으로 인권위는 경찰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진정한 인격권 및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경찰수사관에게 경고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적법절차에 의한 수사의 금도

부당한 방법의 수사



범죄 수사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경찰수사관이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잠복근무나 가족을 미행하는 등의 수사활동을 펼치곤 한다. 드라마지만 경찰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김철수(가명)씨 등 9명은 노동조합 간부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 경찰청은 이들 9명을 체포하기 위해 지방청별로 모두 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전국적으로 총 138명의 경찰관을 배치했다. 이들 경찰관들은 김씨 등 9명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보호비밀법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승인요청을 하고 관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ID 접속위치와 이메일 등을 확보해 추적 조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다.

경찰 중 한 명이 김씨 일행이 사용하고 있던 10여 개의 메일 주소에 김씨가 소속된 노동조합지부 소속 간부의 이름으로 '위원장님 힘내세요' '하나된 지부를 위하여' 등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2, 3차례에 걸쳐 보냈다. 또한 김씨의 직장 간부의 이름으로 '무단결근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 아래 '휴가기간이 끝나가니 속히 연락 바람'이라는 내용의 메일도 보냈다. 경찰이 제3자의 명의를 도용해 메일을 보낸 것이다.

위장 메일을 보내는 것 이외에도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그 인근에 잠복해 감시를 하고 전화통화 내역을 조회해 김씨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소재 파악에 나섰다. 또한 김씨의 딸이 거주하는 빌라 인근에 장기간 잠복근무를 하면서 인근 주민에게 김씨에 대해 탐문수사를 했고, 그의 딸이 외출할 때에는 3~4 미터 간격을 두고 근접하거나 추적하는가 하면 귀가할 때에는 빌라 현관까지 따라붙기도 했다. 거기다 경찰은 김씨의 딸 휴대폰과 거주지 전화번호 통

화내역을 조사해 그녀의 친구, 다니는 대학의 교수, 기타 남성들까지 조사하며 김씨와의 관계 및 소재를 탐문했다.

우선, 3자 명의를 도용한 위장 메일. 이는 피의자가 메일을 확인하거나 답신을 할 경우 그 소재를 추적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위장 메일을 보내는 것이 특정된 형사피의자를 체포하는 데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수사기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IP추적을 할 수 있는 영장을 받아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이 제3자의 허락도 없이 제3자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까지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제3자를 위장한 메일은 명의를 도용당한 제3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적법한 영장을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목적의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도 역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다음으로 경찰이 형사피의자 주변인에 대한 감시와 추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피의자의 딸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추적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까지 직접 탐문수사를 하는 것은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한 통상적인 체포활동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경찰이 형사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그 가족 등을 감시하고 전화 등을 추적하더라도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기법에 대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범죄자로 낙인찍혔는데 무죄 판결 받으면...

피의사실 공표행위



현재 우리나라 법은 수사기관이 공판 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원칙, 그리고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문화된 지 오래다. 수사기관이 언론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언론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알 권리를 내세워 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이에 인권위는 2004년 11월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안상수 인천광역시 굴비상자관련 사건’과 ‘불량만두 파동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조사과정에서 인권위는 전문가 공청회를 비롯해 피의사실 공표자적 위치에 있는 검찰·경찰·언론사 관계자와의 간담회, 학계의 자문, 외국 사례 수집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가 제한적이거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먼저, 피의사실 공표의 대상은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이 되는 사항으로 한정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생길 급박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언론보도 등으로 이미 국민에게 알려져 중대한 관심의 대상이 된 경우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피의사실 공표의 이익과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그 목적과 방법, 법익균형성 등에서 일정한 한계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가 수사기관의 공식 절차에 따라 공표하되,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점, 공표 내용도 공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사실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 범죄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피의자 인격이나

사생활,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증거 내용, 유죄를 속단하게 만드는 표현이나 추측 등은 모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기준에서 볼 때 두 사건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천시장 굴비상자 관련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이 이를 수사하면서 공식적인 공표 전에 이미 비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수사 내용을 유출했고, 피의사실 외에도 당사자에게 불리한 정황을 공표하고 공표 내용도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공표의 절차나 방법, 공표 내용 등이 허용한계를 초과(과잉금지 원칙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불량만두 파동 사건의 경우는 경찰청이 보도자료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 등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악덕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피의자에 대한 가치평가와 책임을 언급했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촬영한 단무지 공장 동영상을 방송국에 제공해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공표범위, 표현방법 등이 허용한계를 초과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당시 해당 경찰청 경고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공표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사법기관의 최종판결도 받아보기 전에 누군가는 인격권과 사생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무너지고,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힌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공교롭게도 인천시장 뇌물사건, 불량만두피를 만들었다는 만두회사 사건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자유형 아닌 재산형 선고한 이유 생각하라

벌금형 집행 과정 직권조사 권고



“2004년 7월28일 운전면허증 재발급과정에서 벌금미납 수배자라는 이유로 경찰서 보호실에 구금되었는데 검찰로부터 벌금납부통지서도 받지 못했는데 지명수배되고 체포 구금된 것은 말이 안 된다.”

“2005년 3월22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는데 검찰에서 한 번의 벌과금납부명령서만 보내고 지명수배하고 체포한 것은 부당하다.”

“검찰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집 대문이나 직장의 출입문에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다.”

인권위는 벌금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끊이지 않자 2006년 4월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통상 벌과금 징수절차는 징수금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검찰징수사무규칙」에 따라 ① 징수금의 조정 → ② 납부 명령 → ③ 납부독촉 → ④ 강제집행 → ⑤ 노역장유치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는 크게 3가지였다.

먼저 송달 문제. 법원의 약식명령서 정본 송달 시 공시송달률이 37%인데 일반우편으로 보낼 때 본인이 이를 직접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송달을 받지 못한 채 형집행장에 체포되거나 미납 시 구금당할 정도의 피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그리고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송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다.

둘째는 강제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벌금형의 강제집행은 납입기한 30일 경과, 검찰의 납부고지서·납부독촉고지서 발부에도 미납하고 최종적으로 재산을 조사해 재산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집행관에

게 징수명령 또는 법원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순차적인 방법으로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를 모두 거치지도 않을뿐더러 납부독촉 전에 형집행장발부와 지명수배입력을 한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셋째, 노역장 유치. 사실 벌금형 미납자에 대해 강제집행 이전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가능하면 자진납부를 독려해 강제집행에 따른 비용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역장 유치집행은 보충성(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수단을 모두 동원한 후에 최후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처분은 국가형벌권 행사에서 최후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벌금 미납자가 노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판단 없이 노역으로 인해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헌법 제10조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벌금형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벌금형은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생명이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제재다. 이 같은 벌금형의 뚜렷한 장점이 있는데도 집행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공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자유형의 선고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심한 부작용이 드러난다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벌금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집행이 필요한 이유다.

4

그들도 우리처럼



교도소에서 볼 수 없는 신문 기사는?

수용자 알 권리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은 간혀 있는 것, 그 자체다. 따라서 자유를 박탈당한 것으로 충분히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그 이상의 고통을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있어서도 안 된다.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렇다.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해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인권규약의 내용이다.

교도소 수용자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 하지만 세상 이야기는 궁금할 수 있다. 따라서 자비를 들여 신문을 구독할 수 있고, 구독할 신문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

2003년 1월과 4월 사이에 인권위에 두 곳의 교도소 수용자 5명이 유사한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에서 자비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삭제한 채 배부한 것. 또 다른 교도소는 수용자들이 구독할 수 있는 신문을 1인 1종 1부(독거수용자는 2종)로 제한했다. 진정인들은 알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소가 수용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삭제한 기사는 △수감 중인 양심수가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쓴 글 △전직 교도소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내용 △교도소에서 자살사건이 발생한 내용 등이었다. 교도소 측은 이 기사들이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가위질을 했다고 밝혔다. 근거로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 제2항 중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관련 기사 △수용자의 심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 및 관련 기사를 삭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심적 안정

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의 표현이 부정확하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같은 기간 중 구금시설별 기사 삭제 건수를 조사한 결과, 교도소별로 열람 금지기사 건수가 0건에서 16건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교도소별로 자의적 판단에 따라 기사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권위 조사 결과, 수용자인 아버지가 심부전증을 앓는 아들에게 신장을 기증한 기사나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10주년 기사까지 삭제한 교도소도 있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알 권리가 교도소의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신문열람지침의 기준은 △막연하고 불확정적이며 △교도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남용될 경우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법 제21조(언론·출판의 자유)에 정한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용자 1인 1종 1부 제한도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열람 제외 기사를 교도소 내 탈주, 집단 단식 등 교도소 내 안전과 질서를 구체적·직접적으로 교란할 가능성이 있는 기사로 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 △수용자들이 상당한 범위에서 신문 및 잡지를 구독할 수 있도록 수용자신문열람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수용자신문열람지침 제9조는 개정되었다. 삭제 범위를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기사 및 광고 기사로 한정하고 있다. 또 1인 1종 1부 규정에 대해서도 수용자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도 국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으로 개정됐다.

구금시설 인권도 존중되는 나라라면

소거실 수용 환경



교도소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먹고, 자고, 일하고, 쉬는 일상사가 모두 그 안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이런 일상은 일반 사회의 그것과 달리 철저한 감시와 통제 속에 있다. 폐쇄된 공간이기 때문에 바깥 사회의 수준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젓값’을 치르는 사람들이란 인식으로 말미암아 열악한 처우를 당연시하기도 한다. 과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의 처우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할까. 가령 칸막이가 낮은 화장실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채 용변을 보고, 또 그 옆에서 불쾌감을 느끼며 밥을 먹고, 설거지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비위생적 환경에 노출되고, 제대로 누울 수 없을 정도로 몸을 포개어 자도 괜찮은 것일까.

인권위는 2008년 10월 둘째 주 전국 14개 교정시설의 수용자 거실의 환경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피구금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위한 주간’을 정하고 모든 국가인권기구에 피구금자 인권증진 활동 추진을 촉구한 데 대해 화답한 것이었다. 인권위는 열악한 수용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먼저 화장실. 조사 결과, 3개 구금시설은 이미 천장까지 밀폐된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11개의 시설은 용변 시 신체 중요 부분만을 가릴 수 있도록 가로 80cm, 높이 75~90cm 크기의 칸막이만 설치하고 출입문은 없었다. 화장실은 가장 은밀한 공간이다. 그렇지 않은 곳이면 일을 보는 사람도, 이를 볼 수밖에 없는 사람도 불편할 것은 자명하다. 수치심과 당혹감,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이 수용자들의 호소였다.

교정당국은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는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자살 등 교정사고 발생 우려라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 간 자살 사고 빈도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인권위는 수용자 관리상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거실 내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과밀 수용. 조사 결과, 4개 교정시설은 2.48m²~3.22m²(약 0.75평~0.98평)에 2~3명을 수용하고 있었다. 겨울철에 지급되는 1인용 매트리스조차 펴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8개의 교정시설은 면적 3.22m²(0.98평)인 1인용 조사·징벌 거실에 3명을 수용했고, 면적 5.32m²(1.61평)인 거실에는 4명이 생활하도록 해 1인당 면적이 0.33평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2인 이상 수용되는 소거실의 화장실 출입문을 설치할 것 △조사·징벌실 과밀 수용 해소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금시설의 수용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랄 수는 없다. 또한,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록 수용자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국가의 인권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이 평범한 일반인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은 아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그 사회의 성숙도는 그 사회의 인권이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보장되느냐와 관계가 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최소한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구금시설에서도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나라라면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더 물어 무엇하랴.

범죄자의 인격과 명예

수용자 호송 시 시승 시갑



구금시설 수용자는 외부에 나갈 때 수갑과 포승을 채운다. 도주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거기다 기결수는 죄수복을 입는다. 이런 수용자에게 인격권과 명예권이 있을까.

김철수(가명)씨는 2006년 10월 25일 법원 구치감에서 법정으로 이동하는 5분여 동안 죄수복을 입고 수갑을 찬 모습이 차도와 인도 등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됐다. 김씨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쟁점은 수용자가 자신이 수갑과 포승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모습을 외부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교도관들이 이들의 명예감정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다. 물론 미결수용자와 수형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하다.

우선 미결수에게는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구속은 단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막기 위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 이상의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즉 구속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신체의 자유 제한 외의 분야는 일반인과 동일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본적 인권에 인격권, 명예권은 당연히 포함된다.

기결수는 기본적으로 미결수와는 지위가 다르다.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형생활을 한다. 하지만 이런 필요를 넘어서서 피구금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인권침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국제기준인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1955년 8월 30일 제1회 유엔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1957년 7월 31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채택된 국제원칙으로 국제조약은

아니지만 국제인권법의 중요한 법적 근거로 인정되고 있다.) 제45조 ‘피구금자를 이동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공중의 면전에 몸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고 모욕, 호기심,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 또 우리나라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계호근무준칙」에도 수용자의 구치감, 법정, 검사조사실 등의 출정의 경우에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호송 시 시승, 시갑하고 수용복을 입은 수용자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 기구를 적절하게 사용해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호송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개선방안을 숙지할 수 있는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혹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별것을 다 요구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심지어 인권위가 범죄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난도 한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 살인자 등 강력범들이 잡혀가면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수갑 찬 손을 가린 모습을 보고 인권위에 항의하는 국민도 많다. 그러나 인권위가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자고 한 적이 없다.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인권위가 변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또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범죄자든 아니든 기본적 인권이 있다는 것이고, 그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누구나 강제입원 될 수 있지만

부당한 정신병원 계속 입원



우리나라는 누구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비자의 입원될 수 있다.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2009년 3월22일부터 보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인)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면 그렇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한 사람들의 86%가 비자의 입원이란 통계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핵심은 입원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병원에 있는지 여부다.

김철수(가명)씨는 2006년 4월 정신분열증 진단과 어머니의 동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김씨는 입원 당시부터 퇴원하겠다고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개월 후에는 그의 어머니가 치매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누나의 동의로 입원이 연장됐다. 그는 지속적으로 퇴원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퇴원심사청구를 밟도록 하지 않았다. 2007년 1년 만에 퇴원한 그는 병원에 강제입원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정신보건법에 의해 의사의 진단과 함께 비자의 입원에 동의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는 크게 세 부류다.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 등이다. 여기서 민법상 부양의무자는 직계혈족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따라서 김씨의 경우 처음 어머니의 동의로 입원한 것은 적법하지만 6개월 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누나가 동의한 입원은 정신보건법을 위반해 김씨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병원 입원기간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병원은 입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치료 심사 청구를 해야 한다. 비자의로 입원된 사람과 그 보호의무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을 청구할 수 있고, 해당 시

설은 이를 도와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병원은 김씨에 대해 정당한 보호의무자가 아닌 누나의 동의를 얻어 계속입원심사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했고, 지자체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병원은 또 김씨의 퇴원심사청구 요구에 대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인권위는 김씨가 입원해 있던 병원장에게 환자 입원 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입원 환자들이 정신보건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이에 대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이 병원의 관리·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정신보건법상 계속 입원 관련 제반 규정 준수와 병원장 주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꼭 입원해야 할 사람이 입원하는지, 그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광주에 한 대형병원은 정신병동에 입원하려면 보호의무자의 동의 외에도 과거에 정신병력이 있었거나 제3의 병원에서 발부한 진단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남용 가능성이나 자의적 판단을 스스로 경계한 조치다. 만약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정신병원에 있다면 그건 불법 감금이다.

24시간 감시받는 치료의 질은?

정신병원의 CCTV



정신병원 인권문제의 쟁점은 입원하는 사람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원하는지와 함께 그곳에 인권이 있는지다. 입원 그 자체가 목적일 리가 없고, 치료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 인권 없는 치료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설령 얻는 것이 있다라도 박수 받을 일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A정신병원은 병실마다 CCTV를 설치해 환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CCTV를 설치해 놓았다. 병원 측은 병동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업무실(스테이션)의 CCTV 모니터를 통해 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했다. 환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병원 측의 설명이다. 이 병원의 CCTV 설치는 정당할까.

인권위는 먼저 정신병원이 시설이나 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보충적 보호 장비로서 병동의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조사했다. 그러나 이 병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병원 내 입원 환자들은 어디를 가나 24시간 감시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병실 옆 화장실은 칸막이가 낮아서 병실 천장의 CCTV를 통해 환자가 용변을 보거나 목욕하는 장면까지 촬영이 가능했다. 개인의 사적 영역이 거의 보장되지 않아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었다. 특히 CCTV 설치 사실 자체가 부여하는 위축 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또한 현저하게 제한되는 현상은 불가피하다.

둘째, 의료인이 CCTV를 통해 직접 환자를 관찰하는 것과는 별도로 CCTV 화면은 반복 재생이 가능하고 무제한으로 복사할 수 있으며 이를 타인에게 유출할 수도 있다. 또, 이 CCTV 화면은 촬영된 특정 부분이나 부위를 확대, 축소하는 것이 가능해 원하는 특정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도 있고 편집도 가능했다. 환자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 같은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병원시설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권위는 A정신병원이 CCTV설치 운용으로 인해 입원환자들의 인격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병원에 녹화된 기록물의 폐기, 책임소재와 감독 체계 및 활용방법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기록의 자의적 이용을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이 병원의 지도감독 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A병원을 '경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CCTV의 설치·운영의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CCTV는 분명 사생활 침해와 범죄예방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 검거의 1등 공신으로 활약하기도 하지만 불법 CCTV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도 있다. 비록 치료를 위해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라고 할지라도 사생활, 인격권 등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과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다같이 노력한다면 병원이 아닌 사회생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어떻게 치료하느냐는 중요하다. 정신과 전문의 이영문 아주대 의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권>> 잡지 2009년 11·12월호 “자유가 치료의 질을 결정한다.”

인권 친화적 입원 · 치료 ·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정신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전 인구의 20~25%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신장애를 겪는다고 한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었다. 취업이나 보험 가입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장애 특성상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 입원되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에 대한 치료는 당사자의 재활이나 사회복귀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병원이나 시설 격리에 치중되어왔다. 인권위가 2009년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를 확정하고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은 정신장애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한 것이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고서가 나온 것은 세계적으로 호주,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 번째다. 인권위는 이 보고서에서 정신장애인 문제를 국가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조사할 것과 인권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입 · 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의 비자의 입원율은 86%다. 선진국의 3~30%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비율은 53%를 상회한다. 또한 퇴원 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즉시 재입원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신체적 자유, 사생활 보호 등 기본적 인권과 최소한의 자기결정권조차 무시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 자의입원 원칙 명문화, 환자에 대한 입원요건 강화, 현재 6개월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계속입원심사 기간 단축과 심사 기준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둘째,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보장과 치료 환경 개선이다. 현재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자신의 입 · 퇴원이나 치료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

한다. 자신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치료를 받는지 모른 채 입원해 있는 것이다.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 정보제공 조항 신설과 개인정보 보호기준 강화, 면회 · 통신 등 외부 소통권 제한에 대한 규정 개정, 격리 강박 기준 엄격화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유의 제한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최적의 치료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인력기준 상향, 의료급여 수가 실질화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보호 중시의 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차등수가제 평가 항목에 시설 기준 및 지역사회 연계율 포함 등을 제시했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퇴원 이후 대안 마련이다. 미국은 정신장애인과 시설 밖에서 공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아예 정신병원을 없애고 지역 정신보건센터를 활용한 재활과 치료 시스템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 확충, 정신보건 예산 확대, 가족 및 자조모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차별과 편견 해소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정신질환의 진단력이 있다는 이유로 근로의 기회를 제한하고, ‘정신병자’ ‘정신이상’ 등과 같은 추상적 용어로 광범위한 불이익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는 차별적 법령이 다수였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 관련 차별적 법령 정비, 대중매체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가보고서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뜨거웠다. 여러 언론에서 정신장애인 인권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법과 제도 개선은 아직 진행형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차별과 편견, 무관심을 사과드린다”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그동안 우리는 한센인을 차별과 편견으로 대했고 국가는 무관심했다. 국가기관의 한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 2005년 6월29일 당시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국립 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론은 국가기관장으로는 처음으로 한센인들에게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인권위는 2005년 주요 사업의 하나로 한센인 인권개선을 선정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한센인 집단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순회상담과 실태조사, 전문가 간담회와 한일 양국 토론회, 160여 건의 진정에 대한 조사 등을 펼쳤다.

한센인들의 수난은 1910년대 일제가 이들에 대한 강제수용과 강제격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시작됐다. 일제하의 한센인 정책은 완전·절대 격리, 평생격리, 자손근절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일제는 한센인들을 소록도에 격리, 강제노동을 시키며 외출을 금지하고 단종과 낙태를 강행했다. 시체를 해부하거나 인체 표본을 만들어 보관하기도 했다. 한센인들에 대한 이러한 반인권적 대우는 광복 이후에도 지속됐다. 일제가 패망하고 철수한 이후 소록도 갱생원 운영권 문제로 갱생원 직원들이 한센인 84명을 학살한 사건, 6·25전쟁 이후 비토리 섬 개간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한센인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 등 광복 이후부터 1957년까지 10여 차례의 반인륜적 참상이 벌어졌다.

한센인들의 고통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전국적으로 1만6000여 명의 한센인 중 절반은 재가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전국 89곳 정착농원과 소록도 병원 등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사회적 편견 속에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었다. 특히 소록도병원의 경우 외출

시에도 병원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운영체계가 여전했다. 또한 한센인들에 대한 중앙등록제도 운영, 실제로 수지장애를 겪고 있으나 외형상 정상인 한센인들에 대한 장애인 인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인복지법 규정 등도 개선이 필요했다.

흔히 한센병은 유전되거나 전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다. 보통 사람의 95% 이상은 한센병에 대한 자연항체가 있어 전염되지 않으며 한센병 환자가 ‘리팜피신’이라는 치료약을 한 차례만 복용하면 전염력이 99.99% 사라진다. 유전되지 않을뿐더러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절반의 한센인들이 사회에서 격리돼 수용소와 다름없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무지와 편견의 벽이 이들의 사회와의 소통을 가로막은 것이다.

인권위는 2006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한센인 정착농원이 소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한센인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했다. 한센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적절한 명예회복 및 보상, 생활지원, 그리고 이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 제정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국회는 2007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한센인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당시에 국가의 배상의무나 실질적인 보상방법 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한센인들이 아직도 적절한 피해보상과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수많은 한센인은 여전히 편견에 벽에 갇혀 있다. 14살에 소록도로 끌려가 70이 넘도록 섬 밖으로 한 번도 나오지 못했다던 한 노인이 눈을 감기 전에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언제일까.

과거 권력에 대한 현 국가의 책임

삼청교육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권고



지금은 오래돼 잊혔지만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1980년대 한국사회를 보여준 이 드라마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직장인들의 ‘귀가시계’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이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가 주인공이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반인륜적 학대를 받는 장면이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25개 군부대에 설치한 것이다. 국보위는 당시 전국 각지에서 6만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등급을 분류해, 3000여 명은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4만여 명은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강제적인 순화교육을 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인권침해를 당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가혹행위를 당해 장파열, 뇌진탕, 질식사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이 54명이고 후유증 사망자 397명, 행방불명자 4명 등이다. 정신질환자 등 각종 질환자 2768명과 당시 강제 연행된 피해자 2만여 명, 미성년자 1만5000여 명 그리고 순화교육 종료 후 재판 없이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7578명도 있다.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이 같은 일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정권이 바뀐 뒤 이른바 ‘5공청산’ 과정에서였다. 급기야 노태우 정권은 대통령 특별담화를 통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뒤 정권이 두 번 바뀐 상황에서도 진전이 없었다. 1999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포괄적 입법을 하도록 지시했으나 역시 후속조치가 없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에 걸쳐 몇 차례 발의된 의원입법안도 회기만료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청구시효소멸을 판결했다. 다만 대통령의 발표와 관련해 국가가 신뢰를 깨뜨린 데 대해 손해배상 판결만을 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 규정을 통해 이미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시 국가손해배

상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삼청교육 피해에 대한 보상입법의 부작위 자체를 이유로 입법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방법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2003년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삼청교육 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대통령의 보상 약속, 법원의 피해자 위로금 지급판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통한 구제 조치 결정, 80년대 해직공무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법률 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권고한 것이다. 그리고 2004년 1월 29일 국회에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인권위의 이 결정은 국민이 과거 국가권력으로부터 당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었다. 우리 헌법 제2조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모든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과거 정권이 국민에게 저지른 불법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두말해 무엇 하겠는가. 인권위의 삼청교육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권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었다.

적의 총부리 아래서도 우리는 사람이다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2005년 1월 9일 저녁 논산훈련소. 중대장이 소속 중대 훈련병을 집합시켰다. 이 자리에서 그는 화장실 청결유지 교육을 실시한다. 다음 날 오전 8시50분 화장실 사용에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한다. 그날 오전 10시경에는 화장실 청결 상태를 확인한 그는 훈련병들에게 “이 시간 이후 화장실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리되지 않은 인분을 먹이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3시 40분경. 화장실 청결 상태를 확인하던 중대장은 배설물이 제대로 처리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훈장교에게 중대장 특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요청했다. 1시간 후 훈련병을 모아놓고 화장실 배설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훈련병은 자수하라고 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중대장은 192명의 훈련병 전원에게 손가락으로 인분을 짚어 입에 넣도록 강요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다른 장교들에게도 알려졌으나 상급부서에 보고하는 사람은 없었다. 10여 일 후 피해 훈련병이 친구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야 외부에 알려졌다.

이 어이없는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인권위는 곧바로 인권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사례 외에 유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타 중대에서도 분대장이 화장실 청결 교육과 관련해 인분 미처리 시 인분을 먹이겠다고 욕설한 사실과 침을 뱉은 훈련병에게 그 침을 먹으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훈련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심한 욕설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됐다.

군대는 특수한 조직이다.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상명하복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에 따른 군기확립을 요구한다. ‘얼차려’가 당연히 되기도 한다. 가혹행위를 당하고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그런 처벌을 받

았다고 다수가 인식할 정도로 인권의식이 자리 잡을 틈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결국 인분을 강제로 취식하게 하는 어이없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닐까.

인권위는 인권침해 행위가 △인권의식이 부재한 병영문화 △인권침해 예방이 어려운 병영 시스템 △군의 보안과 관련한 외부통제장치의 부재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첫째, 군대 내 인권교육 강화. 장교와 부사관 양성과 보수교육과정에서 인권과목을 필수화하고, 각 군 신병교육기관이나 부대에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이다. 나아가 인권옹호를 고급 군 간부 평가의 핵심기준으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간부와 사병이 함께 인권을 생각하고 보장하는 병영문화를 일궈나가자는 것이다.

둘째, 군대 인권침해행위 예방활동 강화. 군 내부의 감찰, 기무, 헌병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병의 소원수리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최소한의 인권침해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군인복무규율 개정. 상관의 직무상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들의 시정 건의 및 적극적 보고조치의 의무화, 단체기합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명문화 등이 그 핵심 내용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는 군인도 헌법상의 기본권 향유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인권의 예외는 없다. 군이라는 특수성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설사 치열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적의 총부리 아래 놓여 있는 순간에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건강권도 인권

AIDS치료제 '푸제온' 공급 강제실시 의견표명



한 청년이 있다. 이 청년은 어느 날 자신이 AIDS에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열정과 패기에 넘치던 청년은 AIDS 진단을 받은 그날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다. 청년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푸제온이라는 AIDS 치료제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 푸제온은 기존의 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에 저항성이 생긴 AIDS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다. 그러나 푸제온은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약품으로 2004년 5월 국내 시판허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와 제약사가 약가 협상을 해왔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4년 넘도록 국내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었다. 청년이 약을 구할 길은 해외에서 사오는 것뿐이지만 AIDS 환자라는 이유로 고용시장에서 배제된 청년이 한 달에 180만원이 넘는 약값을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청년은 요구한다. AIDS 환자의 유일한 희망인 푸제온에 대한 특허권자의 시장독점권을 폐지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강제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가 이뤄지면 특허권을 한시적으로 타인이 사용할 수 있고, 푸제온의 경우 국내에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2008년 12월 AIDS 관련 단체는 특허청장에게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9년 6월 특허청장에게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AIDS치료제 푸제온과 관련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우리나라 헌법과 유엔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검토한 결과였다.

정부는 강제실시로 인한 통상마찰 가능성, 제약사의 경제적 피해 등을 이유로 수년째 이를 시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권위의 판단은 다르다.

먼저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 제31조는 '공중보건, 특히 의약품의 접근성 증진을 위해 개별 국가들이 강제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권 발동을 적극 고려하거나 발동해왔으나 반드시 통상문제가 유발되지는 않았다. 미국과 캐나다 정부의 탄저병치료제 사례, 브라질과 태국 정부의 AIDS치료제 사례, 태국 정부의 심장질환, 유방암 치료제 사례 등을 보면 강제실시권 발동을 고려하거나 발동한 것이 약가를 국내 수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유효한 수단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제약사의 피해도 기우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경우 강제실시권을 발동하자마자 제약회사가 약품의 가격을 인하해 공급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강제실시권이 환자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인권위는 설령 지적재산권 보호와 생명권 및 건강권 보호 간에 충돌이 있다 해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우선적 가치로 존중·보호·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표명을 했다.

이 결정은 국민의 건강권도 인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사례다. 건강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것이다. 다자간 FTA 체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물과 전기는 생명

빈곤가구 단전단수 관련 정책권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못하는 가구가 매년 약 10만 가구가 넘고 있다. 홍수나 화재 같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다. 전기요금을 못 내 단전되고 촛불을 켜놓고 잠을 자다 화재로 사망한 장애인 부부나 여중생의 이야기는 매년 단골처럼 신문지상에 등장한다. 그때마다 우리는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이 부른 참극에 안타까워하지만 이내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갔다.

전기와 물은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생계 자체가 어려운 이들에게 돈이 없으니 전기와 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비정함을 넘어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다.

전기와 물은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재화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도 불가능하다. 전기와 물이 중단된다면 일상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생계조차 어려운 빈곤 가정에는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범위에도 포함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격이 없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되는 상황이다. 이런 빈곤가구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요금체납에 따라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비롯,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최소한의 전기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도 단전·단수 조치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전기와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회복지 행정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마련해놓고 있다.

물론 국가별로 예산과 제도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빈곤가구의 현실과 외국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인간의 생존을 위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 수도물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단전·단수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2006년 ‘단전단수로 인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하고 관련 부처 등과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그리고 2007년 겨울, 경제적 어려움으로 요금을 체납해 단전·단수되는 빈곤가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정책의 시행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권고한 내용은 △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가구인지를 파악해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선별된 빈곤가구에 대해서 사회복지재정을 통해 체납 요금을 직접 대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또한, 설령 빈곤가구가 아니더라도 사정에 따라서는 단전이나 단수로 인해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징수는 다른 법적 수단을 다 사용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고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만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단전·단수하도록 권고했다.

이 결정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도출되는 물질적 궁핍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분명히 한 사례다. 단전·단수로 인한 빈곤층의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단순한 어려움으로 보지 말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상의 인권문제로 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 김여진이 거리로 나선 이유

청소용역 근로자 인권개선 정책 권고



평범한 듯 보였던 배우 김여진이 2011년 초 사회문제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 한 대학의 청소노동자들이 받는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부터다. 그녀는 이후 농성 현장에 쌀과 반찬을 실어 나르더니 뜻을 모은 시민들과 함께 청소노동자들을 지지하는 광고를 신문에 실었다. 청소노동자의 무엇이 한 배우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인권위는 2007년 공공부문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가운데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상황이 특히 열악하다는 점에 인권위는 주목한 것이다.

실태조사 결과,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여성, 중졸 이하 학력, 고령이 대부분이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근로빈곤층이다.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임금. 75.6%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이나 퇴직금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고 있어 사실상 최저임금기준에 미달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들 중 49.7%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의 부양가족 수는 3.3명이어서 사실상 생계의 벼랑으로 내몰린 상태였다. 실제 이들 중 60.8%가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된 원인은 ‘최저가 낙찰제’에 있다. 공공기관의 청소용역업체 선정방식은 경쟁 입찰을 통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다. 이같은 최저가 낙찰제는 상식 이하의 저가 경쟁을 유발해 청소용역 노동자의 인건비를 하락시키며 저임금을 유도하게 된 것이다. 국가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도록 「국가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 적격심사기준에서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통제가 진행되지 않았다.

고용 불안정도 심각했다. 이들의 고용 형태인 외주용역은 실제 사용자

와 근로자 사이에 용역업체를 두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를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도 실제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회피할 수 있는 형태다. 사용자가 용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바로 이들에 대한 해고로 이어지고 이에 대한 법적 제재는 받지 않는 불평등한 고용 관계다. 사용자는 책임이 없고, 해고는 쉬운 간접고용 형태다.

청소용역 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도 문제다. 청소업무가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면서 관리자·고객에 의한 성희롱, 반말, 욕설 등 폭언, 폭행, 시설이용자의 멸시·조롱 등 비인격적 대우가 일상화되고 있다. 특히, 변변한 휴게 공간도 없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청소용역 노동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열악한 근무 조건은 이들의 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2007년 노동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호입법 제정, 국가계약법 개정, 용역계약 조건 개정 등을 권고했다.

2007년 인권위 권고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일부는 개선되었지만 청소용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마침내 2011년 초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직접 나섰다.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찾기 운동’이 그것. 저임금, 고용불안과 함께 이들을 더욱 서럽게 한 것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장소도, 시간도 없다는 것. 실제 이들에게 직원식당은 언감생심. 계단 아래 창고, 지하창고, 심지어 화장실이 밥 먹고 쉬는 공간이다. 우리 사회가 사람 사는 세상인지, 함께 사는 세상인지 되묻게 한다. 내 주변부터 살펴볼 일이다.

5

아이들아,
행복하니?



간접체벌도 안 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의견표명



인권위는 2002년 9월 학교 현장에서의 체벌금지 입장을 밝혔다. 그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안)」을 검토한 뒤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권고에서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학생의 지도는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고, 따라서 교육공동체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교육 목적의 체벌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학생은 체벌로 인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처벌적 태도보다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따라서 인권위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 관련 조항을 개정해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현행 법령은 체벌이 아동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서 이른바 교육적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왔고, 시행령 규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상 필요할 때에는 체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의 명문 규정 어디에도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다만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도 모법의 구체적 위임 없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훈육 훈계 방법을 허용할 여지를 두

고 있는 시행령은 상위법령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1년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개정을 추진했다. 이른바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 지도 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간접체벌에 대해서도 반대한 의견이다. 인권위는 직접적인 체벌이나 간접체벌이나 다르지 않다는 입장에서 이 같은 판단을 했다. 즉 체벌 기준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고통이 수반돼 교사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제적 상황인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

이 같은 인권위의 의견에 대해 교권과 학생지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다. 체벌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체벌은 안 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확고한 입장이다. “성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인격적 신체적 존엄성을 아동들은 아직 완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체벌을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은 부모를 기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인도 때리면 안 되는데 아동은 때려도 괜찮다는 인식과 상황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2009년 아동권리협약 20주년을 기념해 인권위가 개최한 국제워크숍에서 ‘아동 체벌 근절을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피터 뉴웰(Newell) 대표가 한 말이다.

뿌리 깊은 ‘인권’ 바람에 아니필세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 권고



교과서는 모든 교육의 기본이다. 학교교육에서는 특히 그렇다. 배우는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교과서는 기본이다. 그러나 교과서에 일부라도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교과서에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면 별도의 인권교육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모든 교육은 인권교육이 된다. 인권위가 교과서를 모니터링하고 사안에 따라 수정을 요구한 이유다.

인권위는 2002년 11월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일부 내용 가운데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는 13개 항목을 수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다. 당시 수정을 요구한 항목은 △국가 이익이나 질서 존중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 △생명권 및 신체 자유권 침해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 정당화 △장애인·여성·인종 그리고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13개 항목 모두를 수용하며 2003년 1학기부터 학생들이 수정된 교과서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인권위가 수정을 권고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초등 6학년 도덕교과서의 ‘함께 지키자-법을 존중한 소크라테스’ 단원. 소크라테스가 “법은 국가와의 약속이므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일지라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체제 옹호 논리로 악용되기도 했던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제, 일명 ‘악법도 법이다’라는 부분이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크라테스의 법철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바탕을 둔 현대 법철학과 맞지 않을뿐더러 이 명제는 반인권적 사상이나 사회현실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 국정교과서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인권위는 “인권보다 국가 목적을 우선시하는 표현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10조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별을 드러내는 시각도 곳곳에 눈에 띈다. “서울의 상징 마크는 살색(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교 1학년 미술, 대안교과서)는 피부색에 의한 인종차별이고,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교 1학년 사회, 중앙교육)는 정상인에 대비해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장애인이 마치 비정상인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부적절하다. 그외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하는 내용도 있는데, “노동 시간은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노동 시간 등을 말한다”(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 두산; 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화),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줄어든다”(고교 1학년 사회, 디딤돌; 가정부라는 표현은 특정 직업 비하이고, 삽화에서 걸레질하는 여성 가정부에게 돈 주는 남성 고용주 표현)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인권위는 이후에도 새 교과서가 나올 때마다 교과서를 모니터링해 인권 가치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한 수정을 권고했다. 특히 2009년 6월에는 ‘인권 친화적 교과서 도입을 위한 간담회’에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자 및 편집자들을 초대해 집필 단계부터 인권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 친화적 교과서를 도입하기 위한 인권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머리카락은 개성의 발현

학생 두발 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



고3 수험생이 있었다. 공부에 매진하기로 독하게 마음먹고 그 결의를 삭발로 다졌다. 그런데 웬걸, 삭발한 머리가 신경 쓰여 도대체 공부가 되지 않았다. 청소년기에 머리카락은 그런 것이다. 하물며 자신의 의사와 관계 없이 머리카락이 잘렸다면 어떨겠는가?

2005년 3월 학생두발 제한 문제와 관련한 3건의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A공업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의 경우 “두발단속 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해 교사가 강제이발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남녀공학인 C중학교의 경우 “여학생에 대하여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편하니 이를 시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이었다.

인권위는 이들 진정사건의 조사와 함께 두발과 관련된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정책 검토에도 착수했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두발 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그 제한 기준도 일정하지 않았다.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의 92.6%와 91.1%에 해당하는 2761개의 중학교와 1924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권위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A공업고등학교와 B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5명 중 24명과 63명 중 42명이 각각 두발을 강제로 잘렸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두발제한이 획일적이고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피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이고, 그 행위가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주면 인격권 침해다.

다만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 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 간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제한의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합리적 과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규제의 목적이, 통제의 편의성이 아닌 청소년의 보호와 인격 형성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강제 이발 등 두발단속 및 제한과 관련된 진정 3건에 대해 해당 학교장에게 재발방지과 두발 관련 학교생활규정 개정 시 학생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 내에서 두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할 것 △각급 학교의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을 경우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시정을 요구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엄마 아빠에게도 비밀이에요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의견표명



초등학교 시절 누구나 한 번은 담임선생님에게 일기장 검사를 받아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매일 쓸거리가 없어 고민하거나, 방학 때가 되면 한 달치 일기를 한꺼번에 쓰면서 그날그날의 날씨를 몰라 친구 일기장을 빌리던 기억까지. 일기장 검사에 얽힌 사건이나 추억은 누구나 이야기 한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는 수준일 터. 그렇게 국민 모두가 거처온 통과 의례, 초등학생이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기장 검사에 대해서 인권위가 2005년 3월 고정관념을 뒤엎는 의견을 표명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발단은 2004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인권위에 질의한 것이었다.

사실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일기 작성의 습관화, 생활 반성, 쓰기 능력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어린이들에게 일기를 쓰도록 하고 일기장을 검사한다. 물론 소중한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이나,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아동기에 일기 쓰기를 습관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평가하는 것은 일기의 본래 의미와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의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아동이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해 자유로운 사적 활동 영위를 방해받거나 △교사의 검사를 염두에 두고 일기를 작성하게 됨으로써 아동의 양심 형성에 교사 등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될 우려가 크며 △아동 스스로도 자신의 느낌이나 판단 등 내면의 내용이 검사·평가될 것이라는 불안을 제거하기 어려워 솔직한 서술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기 검사를 통해 일기 쓰기를 습관화할 경우, 일기가 아동에게 사

적 기록이라는 본래의 의미로서가 아닌 공개적인 속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 오히려 일기 쓰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글짓기 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일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도 있다.

이에 인권위는 일기 검사의 교육적 목적은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기 검사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방법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인권위는 초등학교 일기 검사 관행을 개선하고 초등학교의 일기 쓰기 교육이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라는 의견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표명하게 된다. 인권위의 이 같은 의견표명에 대해 교육부도 수용했다. △일기 쓰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일기 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일기 쓰기는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해온 것.

그러나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회적 논란은 적지 않았다. 언론, 교육계, 학부모 등 주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히려 아동인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형성되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 헌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아동은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지만 인권의 주체이고, 학교는 아동이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것이다.

이 아이 저 아이 따지지 말고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 보장 권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미래는 교육이 좌우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주아동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1991년 11월20일 우리나라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8조는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했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우리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주아동들의 교육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주아동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었다. 2008년 8월 기준으로 이주아동은 총 6만9987명이고 이 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정되지만 취학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2월2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해 미등록 이주 아동이라 하더라도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2010년 1월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을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규정한 것이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다행히 2010년 8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1년 2월 실질적으로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다시 한 번 권고하기에 이른다. △체계적 한국어 교육과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 강화 △이주아동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피해자 구제조치 강화 △이주아동의 해당 학년 또는 학기 동안 그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일시 유예 △이주민의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 유보 혹은 면제를 위한 법적 규정 마련이 그 핵심이다.

인권위가 2010년 실시한 ‘이주아동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아동의 61.4%가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입학이 어려웠으며, 15.2%는 학교 측의 입학 거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생활 중에도 발음·피부색 놀림, 따라가기 어려운 공부, 경제형편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거나, 특히 비자가 없는 외국인의 단속이 걱정된다는 응답은 60%에 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는 2011년 6월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미등록 이주아동이 우리나라에서 초·중등교육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 아이 저 아이 가리지 않고 가르쳐서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여건을 만든 것은 긍정적이다. 이 같은 노력이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내 이름은 소중한니까요”

교복명찰 고정부착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로 시작하는 김춘수 시인의 ‘꽃’. 그 누군가에게 불리고 의미가 되고 싶어 하는 존재의 본질을 노래한 시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군가는 불특정 다수가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누군가일 것이다.

이름은 개인에 대한 인격적 징표이고 소중한 개인정보다.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개인정보자기결정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렇다면 누구나 내 이름이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09년 5월 양모(여·50)씨는 “대구지역 일부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학교 밖에서까지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고 있으니 시정해주시기 바란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학교 측은 학생들의 명찰을 교복의 가슴 부위에 고정해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교복 분실 방지, 명찰 파손 예방 등의 실용적인 이유와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해당 교육청은 고정식 교복 명찰 착용은 학교 밖에서 학생 의사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판단했다. 따라서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 명

찰을 착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봤다. 결국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교복에 고정 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관련 학칙과 규정을 개선하도록 해당 학교장, 각 시·도 교육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각각 권고했다.

물론 학교 안에서 교복에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에 필요한 경우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인권위 권고가 발표되자 일부 논란과 함께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았다. 다수 학생은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교외에서의 탈선 우려 등을 제기하는 어른들도 있었다. 그러나 고정 명찰의 문제는 학생지도의 차원을 뛰어넘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문제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인권위 권고 이후 서울시와 강원도교육청 등은 명찰 패용 방식과 관련해 학생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규정을 제·개정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아직 모든 학교에서 이를 수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된 것만은 분명하다.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일제고사 반대 학생 표현의 자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시험, 바로 일제고사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학업성취도평가다.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 마련, 학교 현장의 평가 방법을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일제고사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전국의 1~3%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 학업성취도평가로 실시되다가, 2008년부터 1998년 이전 방식인 전국 해당학년의 모든 학생이 동시에 일제히 치르는 전수평가로 바뀌면서 ‘일제고사’라는 명칭을 얻었다. 평가의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가 2010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으로 변경되었다.

일제고사가 부활한 2008년은 이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뜨거웠다. 이 과정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던 일선 교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고, 이에 항의하며 출근을 강행하던 해직교사와 해당 학교장과의 마찰이 연일 신문에 오르내렸다. 일제고사에 대한 논란은 이후에도 계속된 가운데 인권위에 일제고사 반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건이 진정으로 접수됐다.

2008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초·중학교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해 파면·해임된 5명의 교사를 지지하고 만나려 한 학생들의 표현·집회의 자유, 신체·이동의 자유, 학습권 등이 침해되었다는 요지의 진정이었다. 이 중 인권위는 A초등학교 학생 일부가 수업 시간 이전에 교문 앞에서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를 본 A초등학교장이 학생들의 동의 없이 피켓을 수거한 사건에 대해서만 권고했다. 학습권은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

장되는 것으로 인권위법상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점, 다른 사안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서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피켓을 강제로 수거해 간 A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A초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사들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학생이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질서 등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며, 특히 학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관한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위는 수업시간 전에 평화적으로 행한 학생들의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문화를 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피켓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수거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이를 시정할 것을 해당 학교에 권고한 것이다. A초등학교장은 이를 수용, 2010년 6월 교직원 61명을 대상으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결정은 일제고사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별론으로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학교 다니는 학생만 청소년인가요?

비학생 청소년 차별



청소년은 모두 학생인가? 학생들이 대부분 학교에 있을 시간, 청소년으로 보이는데 교복이 아닌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닌다면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 쉽상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불량학생’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적 사정, 대안교육 프로그램 증가 등으로 청소년 시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비(非)학생 청소년’이 있다. 그럼에도 ‘청소년=학생’이라는 편견 때문에 비학생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일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청소년 할인을 받기 위해 학생증 제시를 요구받는 경우다.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의 경우 할인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영화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에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사실에 문제의식을 느껴 2003년 5월 인권위에 진정한 박호연(16) 군. 박군은 당시 대전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친구들을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한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통시설과 공공시설 이용요금의 경우 10~50% 범위에서 학생 할인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이 아닌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런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비학생 청소년은 당시 9~18세가 50만여 명, 19~24세는 250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 규정과 청소년 현장 중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청소년의 권리 조항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공시설 및 교통시설 이용요금을 학생에게는 할인해주면서 비학생 청소년에게는 할인해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 판단했다. 또한 경제·사회

적으로 어려운 비학생 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비학생 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있는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비학생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들이 대안마련에 나섰다. 그 결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만 13~18세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이를 제시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과 문화시설 등의 요금을 학생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도 재학생과 같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뜻에서 시작된 청소년증 발급제도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발급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것.

청소년증을 내보이는 것 자체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문제아로 비쳐 원래 취지와 달리 ‘차별증서’로 인식되는 것이 문제였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증이 오히려 차별을 드러내는 신분증이 되지 않도록 학생증과 통합 발급하는 등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결국 문화관광부는 비학생 청소년에게만 발급하던 청소년증을 학생 청소년에게도 발급했다. 문화관광부의 이 같은 조치 이후에야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학생 청소년들이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는 조금씩 사라졌다.

청소년은 당연히 ‘학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린 이 사건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었다.

남자는 1번부터, 여자는 41번부터

초등학교 성별에 따른 번호 부여



우리 사회에서 남녀 차별의 뿌리는 깊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오랜 기간 남성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무엇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진리를 배워야 할 초등학교에서도 이러한 성차별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부터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2005년 7월, 대전지역에 소재한 A초등학교 학부모 김영희(가명)씨가 이 학교 출석부 번호에서 남학생에게는 앞번호를, 여학생에게는 남학생의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뒷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초등학교는 기존에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은 1번부터, 여학생은 41번부터 부여했고, 같은 성별 안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서로 번호를 매기고 있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A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다수 학생의 남녀 구별관리 등 학생 관리상 편리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학생에게 뒷번호를 부여하는 관행은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차별적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런 성차별적 관행이 초래하는 폐해와 행정적 편의를 비교할 때 결코 행정적 편의가 우위일 수 없으며, 상시적인 성별 구분 관리의 필요성에도 동의할 수 없으므로 행정적 편의를 위한 예외사항으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출석부 번호 부여 시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A초등학교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다음 학년도부터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름의 가나다 순이나, 생년월일 순 등 기타 방법을 고려해 시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 권고를 계기로 학생 관

리에서 불합리한 성차별적 관행이 없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실제 인권위 권고 이후 초등학교에서 성별에 따라 출석번호를 매기는 분위기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학교 내 해결되어야 할 성차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키 순서로 줄을 세우거나 자리를 배정하는 등의 차별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여성용 화장실 변기 숫자가 남성용보다 크게 적어 여학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특히 초·중학교 교과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다. 인권위가 2011년 적용된 초·중·고교 교과서 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할 만한 사례들이 개선됐으나, 일부 교과서는 여전히 우려할 만한 사례가 있었다. △여성은 ‘집안일’ ‘소비영역’, 남성은 ‘바깥일’ ‘공적영역’을 연상케 하는 사례 △위인 소개나 위인의 명언 소개에서 남성에 편중되어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남성 중심적 사진과 삽화가 집중적으로 게재된 교과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하는 아이들은 스펀지와도 같다. 새로운 것, 세상의 지식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초등학교 때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다. 무의식적으로 남자가 우선, 여자는 그 다음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남녀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여성과 남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으랏차차! 알바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 법령 및 정책 권고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노동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청소년은 많아졌지만 이들의 노동은 소위 ‘알바’(아르바이트)란 이름으로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도 노동시장의 한 구성원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도 노동관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응당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대 청소년(15~19세) 329만 4000명 중 일하는 청소년은 6.5%인 21만 3000명에 달한다. 이 중 법정최저임금(2009년 시간급 40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청소년이 12만 3000명으로 전체의 63.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 48시간 이상 근로가 18.5%로 5명 중 1명은 초과근로한도를 넘어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하는 청소년들의 취업 동기 중 62.3%가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 및 빈곤층 확대와 청소년의 노동시장 참가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청소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퇴직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의 적용은 10% 미만 수준으로 나타나 노동인권 상황이 심각하게 열악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권위는 이처럼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해 2010년 3월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관계법과 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으로 연소자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적용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주5일 근무를 전제로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성인의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

준법의 개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특히 연소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제5항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로한도는 1주 5시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주로 근로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인권위는 이미 지난 2008년 노동부 장관에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확대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

둘째, 노동부가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행정의 강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경우 10일 전에 사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사전 통보 없는 감독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부가 노동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강화해 특히 여성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도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몰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평생의 밑거름이 될 올바른 노동관 형성에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알바는 생애 처음 노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알바를 통해 경험한 노동이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가 평생 갈 수 있다. 청소년 노동교육과 노동인권 보장이 중요한 이유도 그것이다.

6

자유를 향한 외침



‘정보인권’ 개념 대중화한 계기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련 권고



모든 개념이 그렇듯 처음엔 낯설고 어렵다. 대개 신생 개념에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폭발적인 위력의 사건을 겪는다면 그 속도는 빨라진다. ‘정보인권’이란 개념이 그랬다. 정보화 시대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나타난 인권문제, 정보인권을 대중화시킨 계기가 된 사건은 2003년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이른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시 학생들의 수십 가지 정보를 한곳에 모으려는 NEIS 구축 시도를 했고 시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인권위는 이 과정에서 이에 대한 의견표명을 했다.

NEIS는 종전 학교종합정보시스템인 CS방식이 각급 학교마다 학생지도 등에 필요한 학생 및 부모에 관한 정보를 학교 내 서버를 통해 학교장이 수집, 관리하던 것을 초고속통신망을 통해 16개 시·도 교육청이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집적해 관리하게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NEIS의 도입은 당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행정업무의 효율화 차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누출, 사생활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NEIS 운영과 관련해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할 것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할 것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 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쟁점은 행정업무 효율화가 국민의 기본권(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

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제37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NEIS 운영체계상 인증서 도난이나 분실 등의 경우에 초래되는 파급효과에 대한 보완책 미비 등이었다. 인권위의 결정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NEIS 체제 27개 영역 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하되, 다만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해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은 NEIS 체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NEIS 도입에 따른 보완체계와 오류발생 문제는 현재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2011년 7월25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NEIS를 통해 처리되는 1학기 말 학업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중·고교는 88개교에 4314건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긴급하게 성적을 정정하고 재처리하는 등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인권위 권고의 의미를 부여해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NEIS 문제는 우리 사회에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가 크다. 정보인권이란 기준에 존재해오던 인권의 문제가 정보화 시대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더욱 확대돼 좀 더 위험한 문제로 변화한 것이다. 사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보인권 문제는 생활 속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CCTV 어떻게 볼 것인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표명



깊은 밤, 당신은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다. 인적 없는 주차장을 빠져 나오며 당신은 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 CCTV를 통해 당신이 주차하는 모습, 주차장을 빠져 나오는 모습을 고스란히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CCTV는 과연 당신에게 어떤 의미일까.

CCTV는 개인의 화상정보를 무작위적으로, 즉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와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임의적으로 설치 운영되어왔다. 특히, CCTV가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유용한 기기로 인정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CCTV는 계속 늘어났다.

범죄수사에 CCTV는 매우 유용한 수단임에 틀림없다. 범죄 뿐만 아니라 미야, 가출인 및 실종자 찾거나 경찰인력의 효과적인 배치, 폭력성 사건에 대한 빠른 인지, 부상자 구호, 교통관리 등 긍정적인 용도로 CCTV의 활용 가치는 매우 높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공공장소에 운용하는 것은 설치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다. 또한 작동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 내의 모습을 녹화·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CCTV에 촬영되는 사람들의 초상권과 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CCTV 설치지역을 왕래하는 시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04년 4월 공공기관에서 범죄 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헌법에서 규

정한 기본권 제한 원칙인 적법절차의 원리와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을 위반해 촬영될 경우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CCTV와 관련된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2007년 5월 공공기관에서 CCTV를 설치하기 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CCTV를 일부 규제한 것과 별개로 민간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인권위는 사업장 전자감시에 확산에 따른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해 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규제하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근로기준법의 일부 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결국 민간부분의 CCTV활용을 규제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도 2011년 3월 제정되었다.

2004년 인권위 권고는 붓물 터지듯 증가하는 CCTV와 관련한 최초의 권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CCTV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많은 CCTV가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나 범죄 예방 효과가 뚜렷하다는 부분에는 많은 논란이 있고, CCTV를 역이용한 범죄가 발생하며, 고도로 민감한 사생활 영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권위에 접수된 CCTV와 관련한 진정만도 2005년 80건에서 2010년 326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CCTV의 장점과 단점은 명확하다. 단점을 보완하고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정보화 시대 검열의 유혹

정보통신심의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심의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SN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규 서비스의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대해 ‘방통위가 정권에 불편한 SNS와 인터넷 방송에 대해 탄압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초고속 발달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소통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인권위는 2010년 10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현행 정보통신심의제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부여되어 있는 정보 심의권과 시정 요구권을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정부통신심의제도는 공공기관 또는 개인이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하면 방심위는 이를 심의해 삭제 여부를 결정해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는 방심위의 시정 요구를 거의 100% 수용할 수밖에 없다. 방심위가 행정기구이고 사업자 등이 시정 요구를 거부하면 방통위가 행정명령을 할 수 있어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방심위는 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지만 게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는 주지 않는다.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니라 사실상 행정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전고지와 사전 청문절차를 갖추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 위반이며 이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도 있다.

심의대상과 기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해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이 허용되고 사실상 검열 기능을 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문제도 있다. 먼저 규

정상 심의 대상으로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심의기준으로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비록 사후적 심사라 할지라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개입의 여지를 주기에 충분하다.

특히 사법기관도 아니고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표현행위를 차단하는 것은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영국, 일본 등 외국은 민간자율심의기구를 통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는 민간자율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공적기관이 하고 있다.

인권위의 결정은 인터넷에 대한 검열 가능성과 그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전기통신망 유통 정보의 심의권과 시정요구권을 방심위가 아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물 관리 사업자 대표들과 시민사회 대표들로 구성된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하고, 방통위가 이를 관리·감독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인 나라에서 살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일상화되고 대중화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의 검열과 심의 제도는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 같다. 소통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고 정보화 시대를 맞아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싹이 자라고 있다. 새로운 시대적 흐름을 구시대적 기준과 잣대로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2의 미네르바는 안 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관한 의견



문: 허위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해 심지어는 상대방이 자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 맞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있는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의해 처벌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해자와 가해 내용이 특정이 되지 않은 막연한 내용을 유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질문에 대한 검찰의 답변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을 적용해 처벌한다' 였다. 실제로 이 조항을 적용해 한 인터넷 논객을 구속했다. 일명 '미네르바 사건'이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61년 12월30일 법이 제정된 이후 이 조항은 40여 년 이상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가 2008년 촛불시위를 계기로 적용되기 시작, 그해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8건의 판결이 나왔다. 이 때문에 이 규정이 정부에 반대하는 표현행위를 억압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상황에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의해 인터넷 논객을 구속시킨 일명 미네르바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와 위헌성 심사를 하고 있던 헌재에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이 규정은 포괄적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

면 타인에게 피해 발생 여부를 묻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표현행위'를 '형벌로써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공익을 해할 목적' '허위의 통신'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 규정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특히 '포괄적인 공익 보호나 진실 증진'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기본권 제한 목적이 아니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처는 반박을 통해서 가능한데도 모든 유형의 허위 표현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을 통해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특히 불명확한 규정의 개념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표현물에 적용될 수 있으며, 언제 무엇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당국에 부여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신의 표현행위가 기소되는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결국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네르바'가 체포 구속된 이후 인터넷상 표현행위에 광범위한 위축 효과가 야기되었다는 게 일반적이다.

인권위 의견 제출 후 2010년 12월, 헌재는 '미네르바'를 구속시킨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결정을 통해 1년 전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서와 거의 동일한 논리를 근거로 들었다. 또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법은 구속기소된 미네르바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까. 그 기준은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절대적 기준은 없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있어 그 근간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캐나다 대법원은 1992년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 제47조 제1항과 유사한 형벌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어떠한 자유민주국가도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국방부 시계는 과거에 멈춰 있나?

「군인사법」 제47조의 2 위헌 확인 등 사건에 대한 의견



역사적으로 금서는 당시 사회의 권위와 부조리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마시대 한 황제는 황제 체제 반대 사상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인류의 위대한 유산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인 <분노의 포도> <닥터 지바고> 등도 당시 정치적 이유로 금서가 된 책들이다. 역사적으로 권력층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고 사회의 미풍양속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금서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금서제도가 과거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존재했다.

2008년 7월, 국방부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던 23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했다. 당시 국방부는 북한을 찬양하고, 반정부·반미·반자본주의 내용을 담은 불온서적이 장병의 정신 전력을 저해한다며 목록에 포함된 책을 즉각 수거하고, 부대 내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불온서적으로 지정된 책을 소지하거나 군내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군인복무규율은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군법무관 중 2명을 파면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국민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 당시 뉴스를 전하던 한 앵커는 멘트에서 “국방부의 시계가 거꾸로 가도 한참 거꾸로 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인권위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목록 지정은 양심 형성의 자유와 정보 수집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가 당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어떤 책을 선택하고 읽을 것인지에 대한 자유와 권리는 이성과 양심을 가진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의 영역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본질적인

요청이 제복을 입은 군인의 신분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병사들이 군대 내의 직무나 군사보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어떠한 책을 읽지 말아야 한다고 규제하는 것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시중의 베스트셀러와 대중적인 인문교양서, 세계적 석학의 저서, 그리고 일반 문학작품에까지 국방부가 친북좌경사상을 담은 ‘불온서적’이란 딱지를 붙인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국방부가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23권의 도서 중에는 영국 캠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세계적인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의 <507년, 정복은 계속된다>, 소설가 현기영의 <지상의 순가락 하나> 등 이미 베스트셀러에 올랐거나 대학교재로 사용되고 전문가와 언론에서 호평을 받은 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고 재미있었던 현상은 국방부가 23권의 불온서적 목록을 발표하면서 이 책의 상당수가 이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금서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많은 금서가 불멸의 고전으로 추앙받아왔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금 확인한 셈이다.

인권위가 불온서적 목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하자, 국방부는 불온서적이라는 용어만을 ‘장병 정신 전력 강화에 부적합한 서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에도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방부 시계는 아직도 과거에 멈춰 있는 걸까?

기본권 제한하려면 법부터 만들라

대리인이 인감증명서 수령 시 지문날인



#2007년 8월28일 오전 김봉제(41) 씨는 회사 업무상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서울의 한 동사무소를 방문했다. 처음에 동사무소 직원은 발급대상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요구했다. “인감도장은 필요 없느냐”고 묻자 “위임장에 날인되어 있으니 됐다”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담당 공무원이 대리인의 경우 발급대장에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 어떻게 해야 할까. 발급대장을 보니 이미 대리인으로 인감증명서를 수령한 사람들의 지문이 줄줄이 찍혀 있었다. (<인권> 잡지 2009년 3·4월호)

#순천시에 거주하는 김영희(가명) 씨는 2008년 3월 14일 남편의 인감증명서를 대신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다. 동사무소에서는 김씨와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도 대리인인 김씨의 무인까지 요구했다. 김씨는 자신이 범죄자도 아니고 주민등록증으로 부부인 사실도 확인했는데 대리인의 무인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을 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인감증명 발급 시 대리인의 경우 무인을 요구한 근거로 든 규정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이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신원 확인이 쉽고 정확한 지문 날인 방법이 대리인 수령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인감 사용자의 재산과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행정안전부가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하위법

령인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근거로 인감증명서 대리 수령자에게 무인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지문은 개인의 신체에 부착된 고유성이 매우 강한 생체정보다. 즉, 개인 정보자기결정권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중요하고 본질적인 기본권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동의 없이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본질적인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본 것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감증명법 어디에도 인감증명발급기관이 대리인의 지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도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근거로 한 것은 기본권 제한을 법률로 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대리인의 부정발급에 따른 피해 예방이라는 행안부의 입장은 행정편의를 위해 지문채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주민등록의 경우는 이미 관련 법에 지문 채취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인감증명 대리 수령인의 무인을 받으려면 법률 근거를 마련 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지문 한번 찍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나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빅 브러더’(정보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문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사례가 선보이고 있다. 문제는 악용될 소지다. 누군가 나의 신체 일부를 보유하고 있고, 이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생체정보에 대한 관리와 통제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지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넓은 규정에 발목 잡힌 상아탑

대학생 정치활동 금지 학칙



“대학 시절의 정치활동은 나에게 즐거운 일이었으며, 민주적 사고의 밑거름을 제공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자신의 자서전 <살아있는 역사>에서 대학 시절의 정치활동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지성인의 산실이라 불리는 대학교에서의 정치활동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낯선 풍경이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에서는 어떨까.

모든 대학이 그렇지는 않지만 정당활동을 하거나, 집회를 하는 등 소위 교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경우 학생들은 학교의 눈치를 봐야 하거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곤 한다.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내 일부 규정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 있는 셈이다. 이런 일부 대학에 민주노동당이 제동을 걸었다. 2005년 5월, 민주노동당은 전국 69개 대학교가 학칙에 의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교내 집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학교 측의 허가를 받게 하는 등 학생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문제 조항들은 20개 국·공립 대학교와 48개 사립대학교가 학칙 등에서 ‘학교의 기본 기능과 교육목적 등에 위배되는 활동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학생활동제한’ 조항과, 16개 사립대학교가 학칙 등에서 정당이나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학내·외에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치활동금지’ 조항이다. 15개 사립대학교는 정치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 등 중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조사과정에서 대학들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자율성 혹은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을 이유로 이러한 학칙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가르치는 자가 특정 정치·종교적 신념을 학생에게 설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학생들에게 해당되는 원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권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정치활동금지’ 조항에서는 정치활동이 왜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없이 ‘정치활동’은 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부정적 행위라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미 성인으로서 투표권을 부여받아 정치 영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한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은 헌법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정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을 사상이 불온한 학생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 결정은 기성 정치에 혐오감을 가지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회 풍토 속에서 젊은이들마저 정치에 무관심해지지 않도록, 대학생의 정치활동이 민주 시민의 자질 습득과 사회문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찾기 운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아야 한다.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정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 답은 너무 명확하다. 어떤 사회든 이상한 정치, 잘못된 정치가 아닌 교과서에 있는 정치가 필요하고, 그런 정치가 없어졌다면 복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젊은이들에게 그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일 수도 있다.

광장은 민주주의, 소통

서울광장 사용신청 불허



광장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이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펼칠 수 있는 곳도 바로 이 광장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서울광장’은 역사적으로 소통의 장이자 민주공론의 광장이었다. 멀리는 1919년 3월 독립 만세운동의 장이었으며, 1987년 6월 항쟁 때에는 140만여 명의 시민이 독재 타도의 함성으로 광장을 메웠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역동성과 에너지를 분출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국민은 억압된 에너지를 광장에서 분출해온 셈이다.

이런 서울광장이 2005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제한하고,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은 행사만을 허락했다. 서울광장 본래의 의미와 역할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다. 많은 논란 끝에 서울시의 서울광장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판단을 요청받게 됐다.

2005년 4월,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한 행사위원회가 추모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답변은 ‘서울광장에서의 행사는 어렵다’였다. 이유는 조례가 정한 서울광장 사용 목적인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의미의 문화활동에 맞지 않다는 것. 이에 이 단체는 “행정수도 이전반대 집회, 파병기념행사 등 보수단체의 집회는 허가하면서 진보 진영 집회를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서울시의 불허 입장은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불허된 추모문화제와 유사한 성격의 행사들은 이미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조례를 자의

적으로 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었다.

또한 추모제가 문화활동인지, 집회인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울광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장소라는 점에서 살펴봤다. 우선 헌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원칙과 규정에 따라 조례가 규율되어야 하는데도 서울광장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은 해석에 따라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및 시위가 불허될 여지가 존재했다. 그렇다면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집회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해 사용허가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서울시의 조례는 위헌, 위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집시법에 아무런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조례에 근거해 사용 허가를 받게 하거나 별도의 사용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면 이 역시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에 특정단체의 추모문화제 불허 등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 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서울시의 조례가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도 했다.

시민들의 소통의 장인 광장을 막겠다는 발상은 공권력의 편의주의를 넘어 민주주의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광장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났을 때 그 본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광장은 언제나 소통의 장이어야 하고 시민의 것이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벽?

군 의문사 유가족에 대한 국회 출입금지



대한민국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국민이 있었다. 군·경의문사 유가족들이었다.

“아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닌가요? 여기가 국회의원들의 전유공간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는 답은 “출입 제한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말뿐이었다.

이에 윤모(75·여)씨 등 5명은 2009년 12월 “국회에서 군·경의문사 유가족들에 대해 기준과 절차 및 금지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국회청사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연장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신지호 의원과 마찰이 생기면서 윤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청사 무단침입자’로 낙인찍혔다. 이에 2008년 11월 26일 신지호 의원실에서 국회 사무총장에게 ‘의원사무실 무단침입사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국회 사무처는 이를 받아들여 군·경 의문사 유가족을 포함한 19명을 무단침입자로 규정하고 국회청사 출입을 통제한 것이다. 당시 유가족들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에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이 규명된 사망자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던 중이었다.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에 따르면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사출입 통제를 요청한 의원실이나 부서에서 해제를 요청하지 않으면 다음 국회가 구성될 때까지 윤씨 등 군·경 의문사 유가족들의 국회청사 출입은 어려워지는 셈이다. 국

회 사무처는 “국회의사당은 국가중요시설로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임에도 청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회의사당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국가 주요시설이다.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반 행위자에 대해 청사출입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헌법상 대원칙인 법치국가 원리 또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국회 출입 권리를 제한 또는 통제하려면 최소한 그 기준과 절차 및 통제기간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국회청사관리 규정에는 청사출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말뿐, 출입통제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통제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곧 대상자 선정과 출입통제 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국회청사 통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과 함께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사 출입 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해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2010년 6월21일 우선적으로 출입통제자에 대한 국회출입통제를 해제했다고 인권위에 통보해왔다. 또한 인권위 권고내용을 반영해 국회청사관리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알려왔다.

은밀하고 내밀한 내 몸을 스캔한다고?

국내공항 전신검색 장치 설치 금지 권고



공항에 설치된 전신스캐너가 신종 항공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 국토해양부는 2010년 1월27일 주요 국제공항에 ‘액체폭발물 탐지기 전신검색기 설치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검색 등 대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전신검색장비(전신스캐너)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전신스캐너는 보안검색요원이 개인의 은밀하고 내밀한 신체부위까지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스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신스캐너는 피부에 부착돼 있는 물질과 은밀한 부위의 피어싱, 카테터(체내에 삽입해 소변 등을 뽑아내는 도관), 여성의 가슴과 남성의 성기 형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테러 예방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신스캐너만이 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인권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먼저 테러 방지의 효과성 여부. 국토해양부는 기존 탐지기로 발견할 수 없는 폭발물 등의 검색을 위해 전신스캐너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존의 검색장비와 보안요원의 노력으로 올림픽, 월드컵, APEC 정상회의 등의 행사를 무사히 치렀다. 외국의 전문가나 실험 결과, 내밀한 신체부위를 통한 은닉과 접힌 살에 폭발물을 숨길 경우 식별이 불가능하고 보안검색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실효성이 의문이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은 뜨겁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미국에서는 전신스캐너를 테스트하던 중 직원 간 신체에 대한 비하와 모욕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했고, 전신스캐너로 동료 여직원의 투시 사진을 찍은 영국의 보안요원이 경찰의 경고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개인정보와 스캔 이미지의 부당 사용과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체유해성과 검색대상자 차별 논란도 있다. 탐지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강한 전자파나 방사능에 의존해야 할 것이므로 인체 유해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차별 문제는 검색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항공안전 보안장비에 관한 운영기준은 검색대상자를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국내외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안검색 요원의 자의적 판단, 테러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국가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되어 보안검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적과 특정 종교에 의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결국 전신스캐너 설치는 그로 인해 달성될 공익의 실현 가능성이 제한적임에도 그 도입으로 인해 초래할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의 정도와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

또한 전신스캐너는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많은데 전신스캐너 도입은 단순히 국토해양부 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2010년 6월10일 국내공항 전신스캐너 설치 금지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010년 8월 16일 인권위에 ‘전신검색장비 인권위 권고사항 불수용’을 통보했고 인천공항 3대, 김포·김해·제주공항 각 1대 등 총 6대를 설치했다. 인권위의 지적에 대해 아무런 보안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설치한 것이다. 국토해양부의 인권 역주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세계적 추세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보다 앞서 전신검색장비를 도입했던 미국과 영국 등이 최근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이 장비를 퇴출시킨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국토해양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7

다문화 사회의 길목에서



지구상에 '살색'은 없다

크레파스 회사의 피부색 차별



지구상에 '살색'은 없다. 인종에 따라 피부색이 다르므로 특정 색이 '살색'일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황인종의 피부색을 '살색'으로 사용했다. 인권위 권고를 기술표준원이 수용하기 전까지 그랬다.

인권위가 출범한 다음 날인 2001년 11월26일 가나인 커피딕슨(Coffiedickson)을 비롯한 외국인 4명과 김해성 목사(당시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대표)가 기술표준원장과 3개 크레파스 제조업체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살색'이라는 색명 자체가 특정한 색만이 피부색이라는 인식을 전달하고 황인종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명명한 것은 1967년이였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한국산업규격)를 고시하는 기술표준원에 의한 것이었다. 기술표준원은 일본의 공업규격상 색명을 단순 번역하는 과정에서 황인종의 피부색과 유사한 특정 색깔을 KS상 '살색'이라고 명명했고, 크레파스 생산업체들은 이에 근거해 '살색'을 표기해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02년 7월31일 다음과 같은 근거로 기술표준원에 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첫째, 기술표준원이 정한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색명은 특정 색깔의 피부색을 가진 인종에 대해서만 사실과 부합하며, 황인종이 아닌 인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둘째, 국제화, 세계화로 국가 간, 인종 간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색만을 '살색'으로 규정한 것은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하고 시대적 흐름에 반한다. 또한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표준원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살색'이 없어진 것은 그해 11월이다. 기술표준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살색' 대신 '연주황'을 KS로 정한 것. 그러나 '연주황'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일명 2004년 8월에 일어난 '딸들의 반란' (?) 때문. 김 목사의 큰딸 민하(당시 중1)양과 둘째딸 민영(당시 초등5)양, 그리고 이들의 또래 친척 등 6명이 인권위를 찾아 연주황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들은 연주황이 한자어 표기여서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자 인권침해이므로 '살구색'이나 '봉숭아색' 같은 쉬운 표현으로 바뀌 달라라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결국 기술표준원은 2005년 5월17일 '연주황'을 '살구색'으로 개정고시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살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명처럼 떠돌고 있다. 지난 2009년 고교 3학년으로 성장한 민하(당시 성남외고)양 등 5명의 고교생이 방송사 3곳과 신문사 9곳, 인터넷 언론 1곳, 속옷업체 2곳, 할인점 3곳 등이 여전히 기사나 상품 광고에서 '살색'을 사용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한 것. 다행히 해당 언론사와 업체들은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약속해 '조사 중 해결'로 마무리됐다. '살색'이란 표기는 없어졌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도 없어졌는지 생각하게 만든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피부색 차별에 대한 진정은 형식적으로는 크레파스 색상에 대한 문제제기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문화 사회에서 '다름'과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 '노동'이나 '사람'이나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표명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엔 노동자 신분이 아니었다. 이른바 '산업연수생'이었다. 이는 1993년 11월 형식적으로는 제3세계와의 기술협력을 명목으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확보하는 편법조치로 활용됐다. 이로 인해 산업연수생은 사실상 근로에 종사함에도 근로자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 또한 연수생들은 저임금, 임금체불, 각종 인권침해 등으로 연수생 신분을 이탈, 미등록 외국인으로 전락했다.

이에 정부는 2002년 7월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해 오히려 농업·축산업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외국 국적 동포들이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음식점업과 청소서비스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 방침도 밝혔다.

인권위는 설립 초기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와 정책 검토를 해온 터라 곧바로 정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해 8월13일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 핵심은 산업연수생제 단계적 폐지, 고용허가제(노동3권 보장 및 사회보장 포함) 도입 등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인권위는 다음 해인 2003년 2월10일 국무총리에게 송출기관을 정부기관으로 일원화,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등을 재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이 같은 재권고를 하게 된 것은 실태조사와 진정 등을 통해 확인된 외국인 노동자 인권의 심각성 때문이었다. 과도한 송출비용,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만성적인 임금체불,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임금·고용·재화의 차별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백화점이

라고 할 만했다.

이후 2003년 8월16일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1년 후인 2004년 8월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노동부로부터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07년 5월, 2008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다.

먼저 2007년 5월은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본격 시행되던 시점이다. 2004년부터 시행됐지만 2006년까지는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해왔기 때문. 당시 정부는 산업연수생제도 시행 당시 송출비리 등의 문제가 있었던 일부 연수추천단체를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선정하기로 한 데 대해 인권위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권고한 것이다. 또한 2008년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신청,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사업장 변경기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이 3회 이내로 제한되고 이를 넘기면 출국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종속되고 이로 인해 사업장 내의 각종 인권침해나 차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상황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허가제에서 이탈한 미등록 노동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필요에 의해 들어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들에 대해 '노동'(력)을 도입한 것인지, '노동자'를 모셔온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답에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의 해법은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이 아니라 '사람'이다.

자기 나라를 등진 사람들의 희망

난민의 인권보호 정책 개선 권고



매년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전쟁과 테러, 박해와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되새기고 국제적 관심과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자는 날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고, 1993년 출입국관리법과 그 시행령에 난민 인정 조항을 신설하면서 난민인정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계속되어왔다. 우리나라의 문화 성숙도나 경제발전, 인권상황 등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1994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3301명이 난민신청을 했으나 이 중 2001년 에티오피아 출신 1명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시작으로 250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 비율이 30~40%를 웃도는 외국의 사례에 비춰 볼 때 10%도 채 안 된다. 2009년 유엔난민기구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한국은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난민 비율이 가장 낮았으며, 총 난민 수에서도 32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난민신청을 한 뒤 1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데다, 불허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아예 취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난민신청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 2010년 법무부가 난민과 난민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6%가 '경제적 곤란으로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06년 6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난민에 대한 정책 전반의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난민보호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해 강제송환금지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고 그에 대한 예외를 한정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출입국관리

법상의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예외를 법무부 장관이 판단함에 따라 난민이 추방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이익의 침해가 온다는 점에서 법원의 유죄확정판결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난민신청자나 난민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난민신청자, 기타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난민신청자 등에게 임시적 지위를 부여해 적법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또한 난민인정절차와 처우 개선이다. 난민신청자들의 난민인정절차 접근성 제고, 이를 위한 인력확보와 법률적 지원 등이다. 아울러 난민인정자와 난민신청자 등에게 적절한 사회적 처우를 위해 난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언어와 직업교육 등 강화다. 특히 난민자녀의 교육과 보호,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도 권고했다.

근본적으로는 난민인정과 그 사회적 처우에 관한 근거 법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난민문제를 출입국관리법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률을 마련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학계와 인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난민인권에 대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차원의 권고였다.

난민 문제에 있어 출입국 차원이 아닌 별도 난민법을 제정할 경우 무엇이 다른가? 그것은 출입국 업무가 갖고 있는 국가 중심적 시각을 탈피해 인권적 관점에서 난민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다행히 2009년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난민법)이 의원발의(대표발의 황우여 의원)로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당시 이례적으로 난민법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이 논평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울가이드라인 채택한 날의 씩씩한 풍경

이주 노동자 과잉단속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작전을 통해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들이 국내에 소환돼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 원칙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른 것이다. 하물며 국내에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을 단속할 때 적법절차 원리와 인권보장 정신이 적용돼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2008년 11월12일 100여 명이 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마석가구공단 지역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해 100여 명이 넘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가 붙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은 문이 잠긴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물리력을 동원해 부수고 진입하는 등 불법적 단속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수술을 요하는 큰 부상을 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마석가구공단에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단속은 범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단속과정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한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조사결과는 달랐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미등록 외국인을 단속할 때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영장 없이 긴급보호할 때는 긴급 보호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해 이를 용의자에게 보여줘야 한다. 긴급보호제도는 단속을 당한 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 행사라는 점에서 엄격한 적법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출입국공무원은 외국인을 고용한 업소나 숙박시설 등에서 미등록 외국인 단속을 위해 방문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무단진입 등 강제력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인권위 조사 결과,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 시 신분증 패용 등 불심검문에 준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업소에 진입했고, 외국인들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긴급보호 취지 고지를 강제력 행사 개시 직전이나 직후가 아닌 단속차량 탑승 후에 한 것도 드러났다. 또한 단속반원들이 기숙사 문을 부수고 잠을 자고 있는 여성외국인들을 강제로 연행한 점, 단속한 외국인이 도주 과정에서 입은 심한 무릎 부상에 따른 고통을 묵살한 점, 여성외국인들이 호송차량에 장시간 대기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구하자 화장실이 아닌 옥외에서 용변을 보게 한 점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 침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게 단속관행 시정과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에 앞서 2005년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단속과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해 형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2008년 11월12일 법무부가 마석공단에서 대규모 단속을 하던 날은 인권위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세계 각국의 다문화 인권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다문화사회에서 이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이주민과의 공존을 염원하는 ‘서울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날이었다. 서울가이드라인은 송출국과 유입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국제협력을 통해 이주민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한쪽에서는 대규모 이주민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이주민 인권의 씩씩한 현주소를 보여준 풍경으로 기억되는 사건이다.

보호소는 구금시설이 아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시설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에서 수용 중이던 외국인 1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304호실에 수용 중이던 외국인에 의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는 보온을 위해 깔아놓은 우레탄 재질의 바닥재를 태우며 삼시간에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 화재를 알리는 비상경보음도 울리지 않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2중으로 된 시건장치로 인해 수용 중이던 외국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없었고, 화재가 난 후 열쇠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면서 11명이 질식사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인권위는 여수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호시설 내 인권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6개월간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호시설이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보호소와 유사했다. 특히 보호외국인의 탈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중벽을 설치하고, 창문이 거의 폐쇄되어 있어 교도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였다.

생활이 보호거실 내로 제한되고 있어 보호소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했다. 의료시설, 운동장, 면회실 이용 등은 보호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시설 내 비치된 도서의 선택이나 이용도 자유롭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TV 시청 외에 별다른 활동 프로그램이 없었다. 운동장이 없어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운동장이 있는 곳에서도 매일 운동을 하지 않았다.

많은 보호시설은 또 속옷이나 로션, 샴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이 제한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보호시설에는 보호거실 안에 CCTV가 1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보호시설에는 2,3대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의 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인력이 부족한 일부 보호시설은 여성 거실의 CCTV 상황을 남성이 모니터링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먼저 외국인 보호는 형벌적 요소가 배제된 행정작용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포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법무부에 외국인 보호에 있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보호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강제퇴거의 대상에 대해 도주 우려 등에 한해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강제퇴거자 조사과정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보호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외국인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인권위는 보호시설에서 유엔의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이 적용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외국인 보호소는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따라 자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보호하고 대기하는 곳이다. 그러나 구금시설과 다를 바 없거나 더 열악한 상황이라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권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있다. 지금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인권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은 부메랑이 되어 언제 우리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일이다.

생후 3개월 아이에게 자유를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내용 일부다. 우리나라도 가입 비준해 1991년 12월20일 발효된 국제인권규범이다.

“진정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단속을 당해 A출입국사무소에 보호조치되었는데, 가족 중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위생시설이 불량하고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보호실에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 및 자녀를 함께 구금조치했다.” 몽골 국적의 A씨(37)가 2009년 6월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요지다.

출입국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에 아동 구금에 대한 예외적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어, 피해자가 아동일지라도 성인 미등록 외국인과 같이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 자녀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진정인과 진정인의 부인을 일반보호실에 별도 보호조치하면서 진정인도 취침시간 이외에는 같은 보호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며, 진정인의 아내가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유모차, 분유, 젖병 등 수유기구, 기저귀, 담요 등 영아 관련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와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공공 또는 민간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고 제시하고 협약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에게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며 이를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규범에 비춰보면 외국인보호소(보호실 포함)가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에 대해 보호 외 별도의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상태로 구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규칙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필요 최소한의 구금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등록 체류 상태에서 단속된 경우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 필요 최소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구금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 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07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외국인보호소 구금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청주외국인보호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총 48명의 아동을 구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도 아동을 위한 별도의 구금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의 의무를 실천해야 함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

인터넷 전화 이용 차별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126만 명을 넘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 사회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많은 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그렇다’고 인정하고 있다. 국민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특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은 대체로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평등권도 인간의 권리로서 참정권 등에 대한 성질상의 제한 및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했다.(93헌마120, 99헌마494)

교회 전도사인 몽골인 A씨는 2009년 4월 한 통신사의 인터넷 전화 서비스에 가입하고 은행통장 자동이체로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했으나 통신사는 외국인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요금납부만 가능하다고 했다. A씨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해 주거지가 분명하고 수입도 일정하며 은행에 별도 계좌도 있는데도 은행자동이체 요금납부를 제한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통신사 측은 외국인의 경우 요금 미납 시 연락을 취하기 어렵고, 거주지 또한 불분명해 미납 안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요금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결제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 3월 현재 외국인 고객의 수납률은 46%에 불과해, 동 기간 내국인 고객의 수납률 87%와 비교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점도 이유로 덧붙였다. 이 회사는 다른 두개의 통신사는 외국인에게도 은행자동이

체를 허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사업규모 등이 달라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인권위는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신사의 영업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더라도 외국인 역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는다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국내에서 거주해 주거가 일정하고 체류기간도 많이 남아 있고 안정된 직업이 있어 소득도 일정한 경우에는 수납률이 내국인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봤다. 그렇다면 사안별로 검토해 처리하지 않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요금납부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요금수납 시 외국인에 대해 은행자동이체 납부를 거부하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차별은 고정관념이나 편견, 또는 선입관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도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선입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우리 땅에 살겠다고 왔는데

결혼이주여성 보험 가입 차별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7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이란 통계가 있다. 이들 국제결혼의 80%가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합이다. 결혼이주여성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가 다문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사회에 던져진 큰 과제 중 하나다.

2007년 10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이미 자녀를 두었고,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A씨는 귀화시험을 보고 한국 국적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태다. 2011년 4월 함모(39)씨는 캄보디아 국적인 아내 이름으로 치아 관련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한 보험회사와 상담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함씨의 아내가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겠다는데도 거절했다. 결혼이주여성이라도 국내체류기간이 5년 미만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함씨는 이에 대해 차별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보험사는 모든 외국인에게 최근 5년 이내에 발병한 병명이나 진단의 고지내용을 확인한 후 보험심사기준에 적합하지를 가려 보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국내체류 이전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이 보험청약을 원할 경우, 국내 병의원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체류기간이 5년 이상이 될 때에 한해 보험승인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같은 기준은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진정인의 아내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래에 닥칠 불안에 대해 공동의 힘으로 극복해보자는 보험제도의 특성,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영업의 자유, 사적 자치의 원리 등을 감안할 때 보험사가 나름의 기준을 갖고 계약 대상자를 선택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아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일정한 제한요건을 두는 것이 인정되려면 보험제도의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손해를 증가가 예상되

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보험사가 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 이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국내체류기간 5년 이상을 요건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외국인의 경우 국내체류 이전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내체류기간 5년 이상을 보험가입요건으로 하는 것이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보험 가입 전 구강검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치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에 장기 체류한 후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국내체류기간 5년 이상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치아보험을 판매하는 다른 2개 보험사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외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고 한국어로 된 청약서와 약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항 이외에 별도의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험사 대표에게 결혼이주여성의 치아보험 가입 시 5년의 국내체류기간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인수지침을 개선할 것으로 권고했다. 다행히 보험사는 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했다.

결혼이주여성은 우리 땅에서 살겠다고 온 사람들이다. 이들이 한국에 온전히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벽들이 있다. 그 벽은 당연히 그들만의 몫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그 벽을 허무는 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 다문화 사회에 부응하는 길이다.

8



그들의 불편이
불행이
되지 않게



진입 장벽부터 낮추자

공무원 임용시험 시각장애인 차별



인권위에 접수된 차별행위 사건 중에 사유별로 볼 때 가장 많은 건수는 장애 분야가 차지하고 있다. 인권위 설립 이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차별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가 4120건(38.4%)으로 가장 많다. 그 다음이 사회적 신분 1168건(10.9%), 성희롱 972건(9.1%), 나이 824건(7.7%) 순이다.

평소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던 김철수(가명)씨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큰 벽에 부딪혀야 했다. 손떨림 증상이 심한 뇌병변 장애가 있는 김씨는 평소 국가직 공무원시험에서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대형 답안지로 공부를 해왔는데, 지방직 시험에서는 장애인용 답안지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비장애인 시각에서야 문제를 푸는 데 답안지가 뭐 그리 중요할까 싶지만 김씨처럼 몸의 떨림이 심한 뇌병변 장애인에게 답안 체크는 문제 풀이 이상으로 중요하다. 김씨는 이날 제대로 실력 발휘도 못한 채 허망하게 낙방하고 말았다.

김씨를 비롯한 많은 이가 공무원 임용 시험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고용 차별을 받았다며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다. 2006년 10월에는 시각장애인 2명이 “서울시가 공무원임용 필기시험에서 시력이 낮아 일반 문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 수험생이 점자나 다른 변형된 문서 형태의 시험지 제공과 대필시험을 요청했으나 거부하고, 시각장애 수험생을 조명이 어둡고 이동이 불편한 5층 시험장에 배정하는 등 공무담임권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평등의 본래 의미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경우에도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무원임용시험에서 필기능력은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같을 수 없다. 공무원임용시험이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보는 시험이지 필기능력을 보는 시험이 아닌 이상, 필기능력에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조치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필기능력을 보완하는 조치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에서 필기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위는 오늘날 공직업무의 수행이 컴퓨터 문서 작성 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 비추어 필기능력이 공무원의 필수적 능력으로 볼 수 없고, 헌법과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험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 인정했다.

장애인이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때 빚어지는 불편함에 대한 보완조치를 촉구하는 인권위의 결정 이후 다행히 정부는 단계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완조치를 하기 시작했다. 중증 시각장애인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를 경우 점자문제지와 음성컴퓨터가 지원되었으며, 점자판, 확대독서기, 확대경 지참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공무원임용시험 보완조치의 확대에 장애인의 응시율 또한 높아졌다. 이 같은 조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이 불행이 되지 않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차별진정 1호 사건, 01-진차-0000001

인권위에 접수된 첫 번째 차별사건도 장애가 사유였다. 2011년 11월25일 인권위가 문을 연 다음 날 인권위를 찾은 이는 의과대학 교수로 장애인 제자가 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하는 차별을 받았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이모 씨는 3급 장애인이다. 그는 1991년 11월1일부터 충북 소도시인 A시 보건소 의무과장으로 근무했고 그로부터 10여 년 만인 2001년 7월23일 공석이 된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될 자격을 갖게 됐다. 당시 법률상 의사면허가 있는 이씨가 우선적인 임용대상자였던 것.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임용하고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총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기타 보건의무직군에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은 석 달여 동안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임용을 미루다 2001년 10월22일 의사면허가 없는 도청의 보건사무관을 전입시켜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했다. 이씨는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자신을 임용에서 배제함으로써 고용상의 차별을 받아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안 스승이 제자를 대신해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시는 이씨가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원통솔과 조직관리 능력 및 직무 수행능력, 행정경력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전문가보다도 보건행정 전반을 관리 조정할 수 있는 보건관련 일반공무원도 필요하고 하위직의 인사적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충청북도과 인사교류방식을 통해 현 보건소장을 발령한 것이지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승진 임용에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진정인이 후임 보건소장 임용에서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를 배제했는지의 여부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시는 보건소장 결원이 생겼을 때 취했어야 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

8조에 의하면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은 후임자의 임용을 위해 지체 없이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후임 보건소장의 총원계획과 임용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시는 보건소장 공석 때부터 후임소장을 임용하기까지 석 달 동안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시 공무원 중 유일하게 의사면허를 갖고 있어 우선적인 승진 임용 대상자인 이씨를 대상으로 임용자격과 능력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와중에 시장은 2001년 9월2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소장 인사 지연과 인사 원칙에 관한 질의에서 “승진소요연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무과장인 의사 하나뿐이나 장애인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15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보건복지를 책임지기는 좀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고는 타 지역 근무자를 전입시켜 보건소장에 임명한 것.

이에 대해 인권위는 법률상 우선적인 임용 대상자인 피해자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승진의 기회를 신체적인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차별행위에 대해 엄중 경고하고 시 행정과 관련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적 제도와 정책이 있는지를 조사해 이를 시정하고, 향후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청각장애인도 투표하고 싶다

선거방송 수화통역제도 개선 의견표명



성별, 학력, 지위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투표권이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이들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차별의 대상이 되곤 한다. 선거방송에서도 그랬다. 실제 인권위 조사 결과, 제17대 총선 당시 총272회 방송토론회 중 205회만이 자막 또는 수화통역이 진행되었으며 57회는 방송사의 기술상 문제와 재정 지원 미비 등을 이유로 방영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04년 4월에는 한국농아인협회 대표가 “제17대 총선 시 후보자합동연설회 등에서 자막 또는 수화통역 방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각장애 선거인을 차별했다”며 각 정당 대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근거가 되는 선거방송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는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임의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렇다.

우선, 청각장애인의 평등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한 TV토론회 후보자연설 등의 내용을 청각장애 선거인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옳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임의적으로 방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청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장애인도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청각장애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의 평의를 위해 각종 시설 및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등에 자막 또는 수화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본 것이다.

인권위 의견 표명 이후에도 선거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2006년 5·31 지방선거 당시에는 후보자 선거광고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이나 수화통역이 표시되지 않자 청각장애인들이 “선거후보자 방송광고의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70조 제6항은 참정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수화방송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는 수화방송 등이 원칙적으로 실시돼야 함을 부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방송사업자 등의 시설장비나 기술수준 등에서 비롯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화방송 등을 적시에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할 경우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방송사업자의 보도·편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인권위와 헌법재판소가 각각 반대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현재도 수화방송의 필요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그나마 희망적이다. 따라서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위의 선도적 결정이 현실화될 날이 언젠가는 오리라는 기대만은 접을 수 없다.

위험사회 영업의 자유?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옛말에 ‘옛장수 맘대로’란 말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영업의 자유, 또는 사적 자치의 원리를 연상시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다. 보험회사도 그럴 것이다. 보험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할 수 있고, 계약 후에도 보험금을 차등 지급할 수도 있다. 다만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윤모(39)씨는 2008년 4월11일 “우체국에서 상해보험 상담을 했는데, 우체국에서는 진정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윤씨가 진정한 날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첫날이었다.

보험은 ‘위험사회’인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전장치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험은 결국 ‘불안 마케팅’이다. 따라서 보험사의 영업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동시에 보험에 가입해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험사가 합리적·객관적 기준, 예컨대 위험발생률에 대한 판단도 없이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상도에도 어긋난다.

그런데 특정 사유, 특히 장애나 병력에 관련된 선입관이나 편견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다면 차별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17조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정신장애 3급과 우울증에 대한 치료병력이 있는 경우 사고발생률이 다른 계약자들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보험가입 상담 당시 사고발생률에 대한 구체적 심사와 판단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특히 우울증에 대한 경험칙을 들어 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주장할 뿐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또 상법 제732조와 우체국 보험약관 제4조의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상법 제732조는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사고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살해 위험성을 제거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우정사업본부의 태도는 입법 취지를 오해한 결과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2005년 8월22일 상법 제732조는 원래의 입법 취지와 달리 장애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보험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법무부에 삭제를 권고했다. 이 조항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와 제17조와도 충돌한다. 설령 이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이나 심신박약은 추상적인 개념인데다 모든 정신장애인이 이와 동일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인권위는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를 개시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적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사실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이전에도 많았다. 다행히 금융감독원이 2011년 9월 8일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보험관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권위의 권고사례와 판례 등을 참고해 마련된 것이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미래를 대비하는 일에서조차 차별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교통약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시내버스 청각장애인 전자문자안내문 미설치



청각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버스를 타고 하차 지점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다. 버스에 도착 정류장을 문자로 안내해주는 전자문자안내판이 없으면 그 버스는 이용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버스 중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된 버스는 그리 많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청각장애인에게 대중교통 이용은 아직 먼 나라 이야기다.

실제 2010년 6월 (사)한국농아인협회가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두 달간에 걸쳐 탑승해본 결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청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를 찾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물론 버스회사들의 사정도 녹록지만은 않다. 또한 마을버스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수단의 범주에서 제외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의 전자문자안내판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업체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운송업체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 2009년 3월 이후 투입된 버스에만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 및 제8항 ‘장애인이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위반,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이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

스업체의 지도·감독기관이자 교통행정의 중앙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관련 규정 개정과 더불어 마을·시내버스 운송업체들이 전자문자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시내버스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규정에 의해 전자문자안내판 의무 설치대상에 해당된다는 점 △2009년 3월 이후 노선에 투입된 버스에는 이미 전자문자안내판이 설치돼 운행 중인데 기술적 장애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점 △시내버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서울시가 문자안내판 설치비용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주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인권위는 마을버스의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전자문자안내판 의무적 설치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가 지원책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장애인은 물론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애인이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이자 인권위가 꿈꾸는 세상이다.

문턱 없는 학교를 꿈꾼다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시설 이용차별



정신지체 장애 자녀를 둔 김영희(가명)씨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의 고교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김씨는 아들이 장거리 통학이 어려운 관계로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와 가깝고 교통수단과 접근이 쉬운 은평구 내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평구 내에 소재한 실업계 고등학교들의 경우 장애아동을 지도할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김씨는 은평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학생 부모 20여 명과 함께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줄 것을 학교 측과 서울시 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어렵다”였다.

이유인즉, 학교건물이 노후했고 예산이 없어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과 특수학급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실습에 주로 사용되는 기계가 다루기 힘들고 위험한 것들이 대다수라 장애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 것이었다. 특수학급 설치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장애학생 20명의 부모는 2006년 3월, 장애인교육권연대와 함께 2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먼저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고등학교의 경우 1층에 이동통로의 턱 제거, 미끄럼방지 등의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B고등학교의 경우 은평뉴타운 개발이 학교 이전과 신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했으나 당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에 두 학교 모두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실습에 사용하는 기계가 위험하고 다루기 힘들어 장애학생이 실습하기 어렵다는 학교 측의 입장은, 장애학생들에 대한 개별지도와 편의제공 등의 노력은 도외시한 채 편견의 시각으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면 이에 대한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인권위는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가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한 것은 교육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이들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권고하는 것은 물론,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도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 헌법 제31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는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 장애인의 입학 및 수학 등에 있어 장애의 종류별 및 정도에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의 장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와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진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다. 특히 장애인에게 교육은 자주적인 생활능력을 기르고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통로라는 점에서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보조기구는 신체의 일부

장애인 연행 유치 시 경찰의 인권침해



누구든 집회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거나 이후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다만 수사기관은 장애인을 연행하거나 조사할 때 비장애인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그것이다.

2006년 8월,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요구하며 집회에 참석한 중증장애인들은 위협천만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영희(가명)씨는 현장에서 강제 연행되는 과정에서부터 경찰서로 이송되어 밤새 조사를 받는 동안 지속적인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다. 먼저 이날 경찰은 휠체어에 타고 있는 장애인들을 휠체어와 강제로 분리해 경찰수송버스에 태웠다. 전동휠체어에서 분리되어 경찰차에 태워질 때 김씨는 남의 손에 의해 불안정하게 옮겨지면서 한순간 바닥에 내동댕이쳐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버스에 태워진 후에도 아찔한 순간은 계속되었다. 장애 특성상 혼자서 몸을 가누기 힘든 그녀는 안전벨트가 없는 좌석에 앉아 이동하는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자신들을 붙잡아줄 여경들이 부족한 나머지 장애여성들끼리 서로 붙들고 앉아 있어야 했다.

이렇게 힘겹게 서울시내 16개 경찰서로 분산된 연행자들은 대중교통이 끊길 시간까지 조사를 받았다. 보통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나 지하철, 그리고 몇 대 안 되는 저상버스를 놓치면 집으로 돌아가기 힘들다. 경찰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일부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가 경찰서로 배송되어 올 때까지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거기다 유치장 안에 장애인을 지원할 보조 인력이 없거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등의 문제로 곤욕을 치러야 했다.

현재 장애인의 수사 및 수감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법 규정은 없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규정을 만들

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조사를 받고 수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 1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업무 수행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한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김씨의 경우 경찰이 장애인들을 연행하고 수감하는 과정에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구가 없으면 신체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신체의 일부로 본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게 지팡이나 장애견 등 보조기구를 떼어내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동휠체어와 분리된 상태에 있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중증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 저상버스 도입 대책을 마련하고, 도입 이전까지는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조사, 유치, 귀가 등에 따른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장애인의 정서적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과 여성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그들의 자유 강박할 권한 누가 줬나?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가혹행위



2008년 12월, 전라북도에 있는 한 장애인재활시설에서 원생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등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내용을 처음 보도한 지역 방송국은 원생 대부분이 이불도 없이 수면을 취하고, 애완견을 묶을 때 쓰는 줄로 원생들의 손과 발이 결박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일상적으로 손이 묶인 채로 생활해 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남녀 구분 없이 수십 명의 원생이 한방에 수용되어 왔으며, 야간 관리자 또한 60대 노인 1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인권침해 현상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이런 언론보도에 대해 시설의 원장은 생활인들에 대한 치료와 안정을 위한 최선의 조치라고 해명했고,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진상조사 후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시설폐쇄 등 행정조치와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을 접한 인권위는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지 않았지만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이 종사자들의 편의와 원생들의 과잉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지속적으로 강박해온 사실 등 언론보도 내용의 상당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인식능력이 없거나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이 같은 조치는 부당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생활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 취지는 물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하도록 한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헌법 제10조와 제12조가 보장하는 시설 생활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관할 지자체에 보고된 거주 생활인 수와는 다르게 장애인들을 거주시켜왔으며, 보호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임에도 전문돌보미가 배치되지 않는 등 전문적인 관찰과 보호가 없는 상태임을 확인했다. 장애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세부업무 수행 계획 등에 대한 자체적인 통제나 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해 이 시설의 열악한 시설환경과 인력배치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해왔으며, 현재 인력 여건으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 원장에게는 현재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직원 배치와 설비 개선과 더불어 시설운영 위원회를 구성해 거주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책 마련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또한 사회에서 격리된 수용시설의 경우 반인권적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시설의 감독기관인 지자체장에게 시설에 대한 재조사 및 개선조치와 함께 거주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점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권고했다.

불편한 진실, 하지만 밝혀야 할 진실

장애인 학교와 시설에서의 성폭력



2011년 소설가 공지영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도가니>가 개봉되면서 5년 전 인권위가 직권조사에 나섰던 광주의 한 특수학교와 장애인시설의 성폭력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공지영 작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경이 됐던 실제 사건은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잔인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인권위가 2005년 11월 시민단체의 진정으로 처음 이 사건을 조사했을 때, 피해 학생들은 지역사회와의 단절,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로 인해 오랜 시간 폭력에 노출돼 있었지만 피해를 당한 생활인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커녕 사실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 사건 이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또 다른 인권침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6년 3월부터는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인권위는 청각장애 아동과 정인지체 장애아동들에 대한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성폭력 사실을 확인하고, 6명의 성폭력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인권위는 법인 임원 개개인의 구체적 범죄행위는 없었지만 소요예산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성범죄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인은 공식적인 사건의 경위 파악이나 장애아동 보호,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 이는 임원들의 직무 유기라고 판단하고 감독관청인 광주광역시에 관련 사회복지법인 임원진을 해임하고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더불어 특수학교 피해학생들을 위한 전문적 치유프로그램과 해당 특수학교에 성폭력 전문 상담시스템과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의 당시 결정은 문제가 된 학교와 시설에서 불거진 인권문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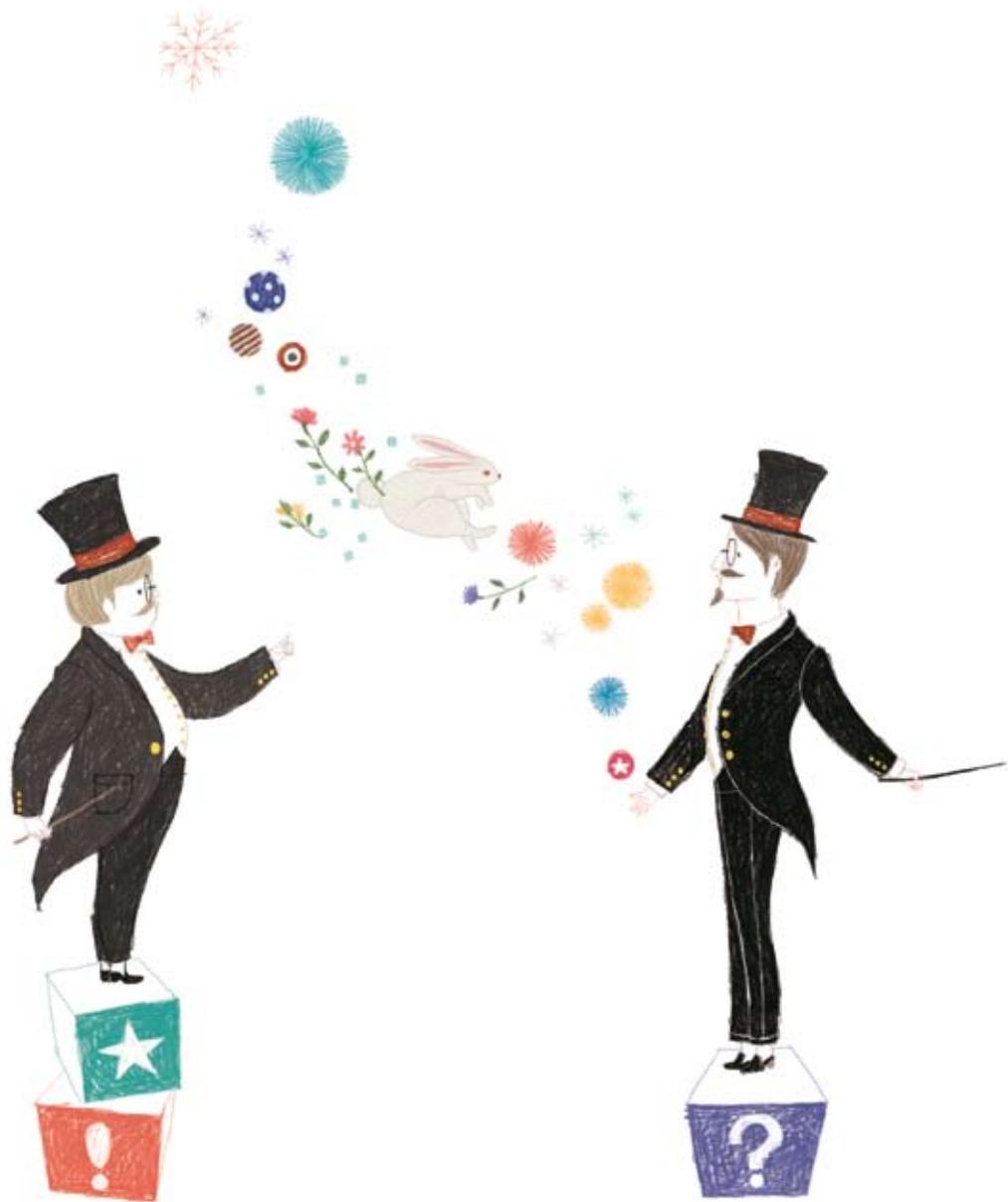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게 전부였다. 이후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벌은 ‘숨방망이’에 그쳤다는 것이 소설과 영화를 통해 많은 이를 분노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다행히 영화를 통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인권위는 이 학교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이고 5년 만인 2011년 10월13일, 다시 이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설 생활인의 전원조치와 시설 폐쇄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 등 인권침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소속의 장애인 재활시설이 당초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방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해당 시설뿐만 아니라 관리·감독기관 등의 업무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최근 광주광역시는 문제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학교 폐쇄 조치를 단행하면서 장애인 학생 전원을 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제야 문제는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가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인권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9

‘차이’
와
‘차별’



웃기고 싶은 남자의 나이

코미디언 공채 나이 차별



웃기는 데 나이가 필요할까. 한 공중파 방송사가 코미디언 공채를 하면서 나이 제한을 했다. 20여 년 동안 그랬다.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로 한정해 공모한 것이다. 다른 공중파 방송도 코미디언 공모를 하고 있지만 상한 연령을 제한하지는 않은 상황이었다.

‘웃기고 싶은 남자’ 김세중 씨는 일곱 살 때부터 장래희망으로 코미디언을 꿈꿨다. TV에 나와 사람들을 웃기는 코미디언 심형래처럼 되고 싶었다. 코미디언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 ‘나도 앞으로 심형래 아저씨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리라’ 마음먹은 것이다. <<인권> 잡지 2010년 7·8월호

2008년 29세 때 그의 꿈은 이루어지는 듯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중파 방송사 코미디언 공모에 응모해 1차 서류전형과 2차 실기시험까지 합격한 것이다. 그러나 최종 3차에서 탈락했다. 다시 1년을 준비했다. 그러나 다음 해 3월에는 원서도 제출하지 못했다. 상한 연령 제한으로 인해 지원 기회마저 박탈당한 것.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방송사는 먼저 지난 20여 년간 동일한 응모자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데뷔 나이가 점차 어려워지고 평균 활동기간 또한 짧아지는 추세에서 만 30세 이후 합격하더라도 트레이닝 과정을 거쳐 신인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일반 코미디언을 공모하는 것이 아닌 ‘신인’을 뽑는 것이 목적이고, 젊은 연기자를 모집한 후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는 것이므로 프로그램에 필요한 신인 연기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은 방송사의 재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 차별이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30세 이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코미디언을 본질적으로 할 수 없는가. 30세가 넘은 신인 코미디언의 훈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과도한가. 인권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신인 코미디언으로서의 능력 보유 여부는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고, 신인의 기준도 나이가 아니라 방송활동을 갓 시작한 사람으로 봤다. 또한 다른 공중파 방송의 경우 개그맨 공채 시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행히 해당 방송사는 인권위 권고를 곧바로 수용했다. 2011년 4월부터 실시되는 신인 코미디언 모집부터 지원자격 요건에서 나이 제한 항목을 없애는 것은 물론 신인 코미디언을 뽑을 때 나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인권위에 통보해 온 것.

이번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다. 인권위는 그동안 인권위법에 따라 나이 차별에 대해 시정권고를 했지만 강제력이 없었다. 하지만 2009년 3월22일부터 시행된 연령차별금지법은 시정권고에 이행강제력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인권위 시정권고에도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노동부 장관에게 신청하거나 노동부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령차별금지법 시행 효과는 크다. 인권위법에 의해 나이 차별 사건을 다뤘던 2001년부터 2009년 3월21일까지 고용상 나이 차별 진정은 322건이 접수돼 연평균 44건에 달했으나 법 시행 이후 1년간 148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

권고 전에 조사과정에서 해결한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한 시정권고를 하지만 권고가 아닌 조사만으로 시정된 경우도 많다. '조사 중 해결'이 그것이다. 권고까지 갈 필요 없이 문제의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화여대 금혼 학칙 개정이 대표적이다.

2002년 11월 황모(19)씨가 "이화여대가 학칙을 통해 입학할 수 있는 요건으로 미혼을 규정하고 재학 중에 결혼한 자를 총장이 제적할 수 있게 한 것은 행복추구권과 자기운명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혼인 여부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화여대는 처음에 '학교의 특수성' '설립 시부터 관행' 등을 이유로 완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얼마 후 이대는 '금혼 조항'이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학칙을 개정했다. 이후 재학 중 제적당한 칠순의 할머니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감격의 학사모를 쓰게 됐다.

'남자는 강하고 건강하게, 여자는 날씬하고 매력적이게.' 2004년 5월 농림부가 서울 지하철 내에 부착한 우유광고 문구였다. 당시 법대 재학생 봉현숙(24)씨는 이 광고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농림부 측을 설득했고, 농림부도 이를 수용해 광고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수정했다. '우유는 힘! 마시자. 114가지 각종 영양의 완전식품 하얀 우유, 우유 한잔으로 온 가족이 건강하게.'

외국인 구금시설 수용자 S씨는 2002년 11월 "이슬람 종교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이슬람 종교와 관련된 영치물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교도소는 진정인에게 영치물품을 지급했고, 이슬람 종교집회를 허용했다.

경북 경산시는 일반직 등 다른 직렬의 경우에는 군 미필의 응시를 제한하지 않으면서 2008년 기능직 공무원 채용에서만 군 미필자의 응시를 제한하자 이모(28)씨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경산시는 향후 기능직 채용 시 18세 이상자는 모두 응시 가능하도록 변경하

겠다고 밝혀 조사 중 해결로 종결 처리됐다.

두 자녀의 엄마인 박모(30)씨는 2009년 10월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그러나 미취학 자녀가 있다는 사유로 탈락했다. 연구원은 대학 재학 중인 사람과 미취학 자녀를 둔 사람은 학교 수업, 자녀 양육 등으로 주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나 훈련, 각종 워크숍 참가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해 감점(배제)을 주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향후 대상자 선정 때부터는 이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했다.

기업의 입사지원서 차별항목 시정도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이다. 인권위는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50명 이상을 채용한 대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를 통한 채용 차별 실태를 발표했다. 인권위가 개인 능력이나 채용 목적과 관련이 적은 개인신상, 신체사항 및 가족관계 등의 차별적 항목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였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은 자진해서 나이, 학력 등 차별적 항목을 삭제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계기로 입사지원서에서 모든 차별 항목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고용영역에서의 차별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고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과 인식이 확산된 것만은 분명하다.

이 밖에도 △도서관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상시 가동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진정(2003년)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만 17세 이하 50세 이상의 회원 가입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2004년) △대학 편입 시험에서 학생운동 전력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형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입학 부적격자라고 판단한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2003년) △대형서점에 여성 코너를 별도로 두고 쉼트, 요리 등의 도서를 비치한 것은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성차별이라는 진정(2008년) 등도 모두 조사 중 해결된 사건이다. 조사 중 해결사건은 인권위의 다양한 분쟁 해결 방식 중의 하나다. 특히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나이가 장벽이 돼선 안 된다

공무원 응시연령 차별



2011년 9급 공무원 공채에서 53세 최고령 합격자를 비롯해 50대 합격자가 7명이나 나왔다. 전체 합격자 1400여 명 가운데 50대 합격자는 7명으로 0.5%이고 41세 이상 합격자도 전체의 2.6%인 37명이다. 행정안전부는 9급 전체 합격자 가운데 33세 이상은 19%인 272명으로 응시 상한 연령 폐지로 30대에서 50대의 '중년 합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된 것은 지난 2009년이다. 행정안전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결과다. 그전에는 9급은 28세 이하, 6·7급은 35세 이하, 5급은 32세 이하로 응시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다.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민간 기업 입사 시험에도 나이 제한이 있었고 우리 사회는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다. 그러나 취업에서 나이 제한은 명백한 기회의 차별이다.

사실 처음부터 정부가 응시 연령 제한 폐지를 쉽게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령 제한을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공직사회 전체의 고령화가 초래되거나 수험생들이 장기간 공무원 시험에만 전념해 민간 채용 시장의 왜곡이 일어날 우려' 등을 제기하며 연령 제한 폐지 불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고, 응시 상한 연령을 넘긴 지원자가 우수한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령 제한을 폐지한다고 반드시 공직사회 고령화가 초래될 거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사 다소 고령화된다고 해도 조직의 효율성이

나 경쟁력 향상은 조직운영의 측면에서 접근할 사안이지 고령화가 곧 비효율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봤다. 수험기간의 장기화와 관련해서는 이는 고용기회의 확대와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봐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고령근로자 권고' 제3조는 '회원국이 연령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촉진하는 국가정책과 이에 관한 법령·관행의 틀 내에서 고령근로자에 관한 고용·직업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 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 캐나다의 인권법은 연령을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거나 채용 시 불리하게 취급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로 보더라도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 제한은 이미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위의 권고 이후 2년 만인 2009년 공무원 공채 시험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다. 당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총 14만 2879명이 지원해 2374명이 최종합격한 가운데 만 52세의 최고령자를 비롯해 33세 이상 합격자는 전체의 12.4%인 394명이었다.

국가공무원 채용에서 나이 제한은 철폐되었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나이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이즈음 나이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은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나이는 더 이상 차별의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이를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

공무원 정년 차별에 대한 권고



흔히들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산할 위험이 없을 것이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무원의 정년이 직급에 따라 달랐다. 2008년까지 그랬다.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60세, 6급 이하 공무원은 57세가 정년이였다.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5급 공무원이 주로 정책적 업무와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관리직의 경우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앙부처의 경우 5급 공무원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지방의 경우 6급 공무원이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5급과 6급 공무원의 업무를 관리 업무와 실무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인권위는 공무원의 직급 및 계급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규정(국가공무원법 제 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 66조 제 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그리고 2008년부터 공무원의 차등 정년은 폐지됐다. 인권위의 공무원 차등 정년 폐지 권고는 2006년 전국 법학교수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인권위 권고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권고의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실제 공무원 정년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나이로 인한 불이익이 적지 않다. 구직자의 64.3%가 나이로 인한 취업의 불이익을 경험해보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인권위가 설립된 이후부터 2007년 말까지 접수된 나이 차별 사건은 355건이었고, 이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는 대부분 수용되었다. 권고가 수용된 사례는 대학 등 교육기관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 연수나 해외 파견 시 나이 제한, 나이로 인한 승진상의 불이익, 나이를 기준

으로 한 퇴직 강요, 불합리한 정년, 나이에 의한 월드컵 등반경기대회 출전 자격 제한, 감리사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시 나이를 감점 요소로 삼는 행위, 대학 입학 시 동점자 처리기준에서 연소자 우대 관행, 대학교 항공운항학과 신입생 모집 시 나이 제한 등이다.

이 같은 인권위의 권고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나이에 대한 편견과 합당한 이유 없는 나이 차별이 평등권 침해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특히 공무원 조직은 아니지만 정부 관리를 받는 공사·공단 등의 차등 정년제를 없애달라는 진정, 무기계약직만 정년이 낮다는 진정도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한 나이 차별 철폐는 민간 기업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2009년 3월22일부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이 시행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합리적이지 않은 나이 차별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권 침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나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차별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나이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이가 많은, 적은 손해가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다. 세대 간 연속선상에서 바라볼 때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다. 나이를 지우면 사람이 보인다.

배우자의 계부모도 소중한 가족

가족 상황 이유로 건강보험 차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정하는 것이 옳을까. “건강보험 가입자의 계부모는 일정한 조건이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지만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다.” 2005년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의 요지다. 이 진정은 성별 또는 가족 상황이 차별의 이유가 된 사건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가입자의 직계존속과 가입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모두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가입자의 계부모는 동거 등 부양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주고 있었다. 반면 동일한 조건의 배우자 계부모에게는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배우자의 계부모는 가입자의 배우자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속도 아니고 혼인을 이유로 호적법상 분가한 자는 계부모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판단은 달랐다. 먼저 사회보험은 사회적 공동부담으로 형성된 재원을 바탕으로 보험금여를 지급하는 원리이므로 그 구성원이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어느 범위의 사람에게까지 인정할 것인지는 해당 기관이 우리 사회의 경제·문화·사회적 등 제반 상황과 정책적 측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범위를 정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조사했다.

인권의 조사 결과, 민법 제767조, 제769조 및 제777조에 의하면 가입자의 계부모와 배우자의 계부모는 모두 동일하게 가입자의 1촌 인척으로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친족에 해당된다. 또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민법 제974조의 부양 의무가 있는 친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자신의 계

부모나 배우자의 계부모는 법적 지위가 동일해 배우자의 계부모를 부양의무가 없는 친족이라고 볼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 위헌결정을 하면서 ‘호적법상 분가’라는 개념 자체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졌다. 설사 기존 호적법에 기초하더라도 배우자가 남성인 경우 계부모와 같은 호적에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여부가 생계를 같이하는지의 판단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건강보험의 공동책임 원리에 근거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부양 필요성은 그 취지에 비추어 가입자의 계부모와 배우자의 계부모에게 달리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가입자가 배우자의 계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그 계부모가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결정은 사회보험의 운영원리는 구성원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의무를 진 가족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부양가족의 범위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있고,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가족은 사회적,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개념이며 형태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과 내용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 가족의 힘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의 축일 수도 있다.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2009년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혼인 여부가 기준일 수 없다

이혼한 형 건강보험 피부양자 차별



배우자의 계부모에 이어 이혼한 형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가 인권위 조사대상에 올랐다.

2004년 4월 조모(남)씨는 2006년 4월 이혼한 형을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고 했으나 이혼한 자는 피부양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형을 등재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는 이혼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부양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의 기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즉, 주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가입자의 관계가 형제자매인 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은 △동거하는 경우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혼으로 부모·형제자매가 없거나 부모·형제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부모·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한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등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기혼인 형제자매는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고 보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피부양자 관계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혼한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사실상 경제적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탁해 소득을 공유하면서 생활을 같이하는 경우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06년도 국민기초생활안내> 5쪽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소득을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혼한 형제자매가 이에 부합한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진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혼자인 형제자매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사실 확인

이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혼한 형제자매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보험정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무다. 따라서 정당한 소득 확인 절차를 통해 당해 형제자매의 경제적 능력, 즉 보수 또는 소득이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면 될 일이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형제자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능력의 유무가 아닌 단지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을 개정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8년 2월 29일부터 ‘피부양자 업무처리 요령’을 변경해 이혼한 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결정례는 형제자매에 대한 대우가 이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무엇보다 이혼이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차별 신고 시속 300km

KTX 여승무원 차별



항공사 승무원을 꿈꾸던 김영희(가명)씨는 지상의 스튜어디스이며 준공무원 대우가 보장된다는 KTX 여승무원에 지원했다. 그리고 2004년 4월1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KTX승무원이 됐다. 동네 사람들에게, 직장동료들에게, 사돈에 팔촌까지 싱글벙글 전화기를 붙잡고 자랑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뿌듯했다. 철도공사 전환 이후 정규직 및 정년보장! 준공무원 대우! 20대 여성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 1위!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화려한 장밋빛으로만 보이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꿈의 속도인 시속 300km처럼 빠르게 그녀의 장밋빛 미래는 재투성이가 되었다.

우선 정규직 열차 승무원과 달리 여승무원은 사측에서 승무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부터가 차별이었다. 휴식시간도 정규직은 열차 승무 종료 시부터 다음 열차 승무 시까지 통상 14시간 이상 보장됐으나, 여승무원에게는 그와 같은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열차 승무 종료 후 12시간 미만이라도 다시 승무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정규직 열차 승무원의 경우 월 6일의 휴일을 보장받았으나 여승무원은 주 1회였다.

그녀는 KTX 승무원이 아닌 KTX 여승무원이었다. 같이 승무를 하고, 같이 검표를 하고, 같이 안전을 담당함에도 남자팀장은 전문직업인, 그녀는 열차 내 눈요깃거리고 1년 단위 소모품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차이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들은 농성에 돌입했고, 인권위에도 진정했다.

인권위는 2006년 9월 KTX여승무원 진정사건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KTX 고객센터 업무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KTX여승무원들을 성별 분리채용해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실제 한국철도공사는 KTX 승무원을 20대 젊은 여성으로 한정해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의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승무원의 업무를 젊은 여성으로 제한할 객관적인 이유가 없었다. 또한, 동일업무를 담당하는 열차 승무팀장은 한국철도공사의 호봉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으나 여승무원은 한국철도유통이 작성한 위탁계약서에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받았고 이 중 44%를 관리비란 명목으로 공제당했다. 승무팀장이 받고 있는 300%의 상여금도 여승무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KTX여승무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후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을 내렸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아직도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결정하던 날, KTX여승무원들은 위원회 건물 1층에서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의 빛을 보았을 것이다. 정리 집회를 하고 삼삼오오 시청앞 광장을 따라 떠나가는 그들의 얼굴은 정말 밝았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남성 또는 여성만의 고유 업무는 없다

소방공무원 성별 분리채용



‘소방관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 활동 업무를 주로 한다. 절대체력이 수반되는 직무여서 여성이 수행하기는 어렵다. 현재 임용된 여성소방관은 사실상 남성소방관들의 보조적 역할밖에 못한다. 사실 여성소방관 채용은 일종의 여성 배려 차원에서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기준의 체력검증시험을 통과한 것이다.’

2005년 4월 한 여성단체가 소방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성차별을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한 데 대해 소방방재청이 답변한 내용이다. 실제로 소방방재청은 분야와 계급별로 남성과 여성의 선발예정인원을 따로 구분해 채용했다. 따라서 여성을 전혀 선발하지 않는 분야와 계급도 있었다. 채용시험도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종목의 체력검사를 하지만 이를 평가하는 기준은 서로 달랐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성별에 따른 분리모집을 중지하고 양성에게 평등한 채용시험제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인권위는 여성에게는 남성에 비해 보다 완화된 체력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필요하다면 여성에게도 소방공무원 직무상 요구되는 체력요건을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에게 가혹한 것 아닌가, 현재 우대제도마저 무력하게 만들 것이냐고 항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은 어느 정도 이상의 강인한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조건이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 채용하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구분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되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과 객관적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

인권위는 또 시험제도에서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체력평가 기준을 적용한 것도 애초부터 여성은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전

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여성 배려나 우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구분모집제도가 단기적으로 여성들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이런 방식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채용된 여성도 이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힘들게 되고 무엇보다 소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절대적 체력조건을 갖추지 못해 도태되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방공무원에서 여성이 도태되면 남성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여성 소방공무원, 나아가 적절한 소방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은 아닐 것이다.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여성과 남성의 고유 업무의 벽이 허물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 온존하는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편견은 여성에게는 물론이고 남성에게도 또 다른 족쇄로 작용하는 실정이다. 여성에게는 남성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업무의 벽이 높고, 남성에게는 여성의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일을 하는 경우 남성답지 못하다는 편견에 시달리는 것도 흔히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고유 업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성의 특징과 여성의 특징에 따라 편의상 업무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남성의 영역에서 남정보다 더 업무 수행을 잘하는 여성이 존재하고, 여성의 영역에서 여성보다 더 업무 수행을 잘하는 남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일반적인 편견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을 구분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또 다른 인권침해다.

남성 전업주부도 주부다

신용카드 발급 성차별



최근 아내의 사회생활을 위해 자발적으로 살림을 전담하는 남편이 늘고 있다. 한 언론은 살림을 전담하는 남성이 2007년 14만 3000명, 2008년 15만 1000명인데, 이는 2003년 10만 6000명에 비해 40% 이상 늘어난 수치라는 통계청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과거 '셔터맨'이 무능한 실직자 남편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의 남성 주부, 이른바 홈대디는 부부의 성 역할 변화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꼭 남성은 밖에서 성공하고 부인은 집에서 살림한다는 생각에서 부부 중 가능성이 더 있고 적성이 맞는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남성 전업주부다. '전업'이라는 표현은 좀 난처하다(영화 <미스터 주부 퀴즈왕>의 한석규처럼 '완전' 전업주부는 아니라는 생각에서)고 했지만 경제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백씨(32)씨는 2006년 2월 3년여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중소기업 재무팀에서 근무하던 그는 직장 일도 좋지만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 부인을 설득해 동의를 받아냈다. 선교단체는 무보수이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가사를 전담하기로 하면서 주부가 됐다. 딸과 아들을 각각 두고 있는 백씨는 당시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이후에도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봉사활동과 가정 일을 병행하며 살아갈 계획이었다. 가정경제는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이 책임지기로 했다.(<인권> 잡지 2010년 1·2월호)

주부 백씨는 2009년 3월 A은행에 전화를 통해 신용카드 발급 문의를 했다. 자신은 소득이 없는 남성 주부이므로 직장에 다니는 부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은행 측은 그동안 '주부'

는 여성에 한정한다는 규정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그 주부가 남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용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인권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남성 주부는 증가 추세이고 신용카드 이용은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성적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조치하기 위해서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중은행 4곳은 A은행과 같은 차별적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을 약속한 3곳을 제외한 곳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처음부터 남성 주부 편을 든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 결제능력과 신용도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주부의 경우 배우자의 능력에 따라 카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주부로 볼 수 있는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부부 간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일 뿐 전통적인 주부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양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양성평등이란 남성 또는, 여성의 성과 관련해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 및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사건은 성차별이 여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나라가 1985년 비준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완전한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뿐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천명하고 있다. 성평등은 여성이나 남성, 어느 일방이 아닌 양성평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풍경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서울YMCA 여성회원 차별



한국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된 것은 광복 이후 1948년 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다. 그런데 2005년 서울의 한 시민단체에서 이미 구시대적인 여성 참정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서울YMCA는 1903년에 창립된 시민단체로 남녀노소, 양반과 평민이 차별 없이 참여해왔으며 일제강점기엔 독립운동을, 1970~80년대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서울YMCA가 아이러니하게도 100년 동안 여성에게 총회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서울YMCA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은 여성이었다. 회비를 내는 회원의 약 60%, 자원활동가의 약 90%가 여성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YMCA 측은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에서 'Men'은 사람이 아닌 남성을 의미한다며 여성의 총회 참정권을 거부했다. 그리고 인권위의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YMCA현장에는 '2년 이상 회원으로 서울YMCA 활동에 참여한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인 사람'으로만 자격을 한정하고 있을 뿐, 성별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전국 43개 지역YMCA 중 서울YMCA를 제외한 42개 지역YMCA는 여성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 등을 부여하고 있었다. 또한, YWCA의 경우 남성도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남성 정회원의 총회 의결권 등이 일부 인정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04년 '서울YMCA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성차별이므로 여성 회원들에게도 총회 의결권 등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서울YMCA 총회에서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먼저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2005년 서울YMCA 총회에서 여성의 참

정권 보장 안건은 부결됐다. “YMCA 30년 만에 여자들이 설치하는 건 처음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설쳐대. 여자가 60%가 아니라 100%라도 여자들은 안되는 거야. YMCA는 관습상 남자단체거든.”(〈인권〉잡지 2005년 10월호) 이것이 외부에 알려진 부결 논리였다. 타인의 인권을 소리 높여 외치는 시민단체에서 자신들이 지적받은 인권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구시대적 관행을 고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2006년 2월에는 서울YMCA 여성 회원 73명이 “총회에서의 참정권을 달라”며 법원에 절차이행 가처분신청을 냈다. 2006년 12월 한국YMCA연맹은 서울YMCA가 제104차 총회까지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맹에서 제명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2007년 2월24일 서울YMCA, 제104차 정기총회에서 서울YMCA 대의원제 도입 및 여성 대의원을 최소 12% 두는 내용의 헌장 개정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그러던 중 2009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에서 명시한 평등권에 따라 특정 성별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침내 2010년 2월27일 서울YMCA,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찬성 377표(87%)로 여성 회원의 참정권 부여가 결정되면서 8년간의 긴 여정의 중지부를 찍었다.

2002년 가을 개봉된 영화 〈YMCA야구단〉은 우리나라에서 YMCA운동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관심을 불러 모은 히트상품이다. 이 영화에 나오는 신여성 민정림(김혜수 분)과 일본 유학생 오대현(김주혁 분)은 나라 잃은 조선 백성의 울분을 달래주는 든든한 친구였다. 영화에서 서울YMCA의 초창기 멤버로 보이는 그들 사이엔 어떤 차별도 없었다. 당당한 인격체로서 서로 힘을 보태는 동지요 연인이었다.(〈인권〉잡지 2005년 4월호)

성전환자의 정체성 보장해야

성전환자 성별 변경 시 차별



법적인 성과 육체적인 성이 다른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1980년대 후반에 성전환수술이 도입된 이래 2000년 기준으로 300~400명이 성전환수술을 받았으며, 이들을 포함해 4500여 명의 성전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스럽게 이들 중 상당수가 법적인 성과 육체적인 성을 일치시키려 한다. 하지만 구 호적법이나 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2006년 9월6일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제정했다.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성 정체성을 변경하려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관련 지침을 만든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과 형식은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대법원이 지침을 만들고 며칠 후 성소수자 단체가 반발하며 인권위에 진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대법원 지침에서 성별 정정요건으로 제시한 9가지가 인권침해이며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 보장을 위해 비밀누설 금지 조항은 추가되어야 할 것이 누락되었다고 했으며, 근본적으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대법원 지침에서 제시한 성별 정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최종적인 외과수술(성기수술)을 할 것 △만 20세 이상일 것 △혼인한 사실이 없을 것 △반대 성으로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을 것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을 것 △범죄 또는 탈법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없을 것 △신분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사회적으로 허용된다고 인정될 것 △부모의 동의를 제출할 것.

인권위는 이 9가지 요건에 대해 모두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대표적으로 성기수술과 관련, 성전환자는 자신의 신체 변경에 대한 의학적 조치를 선택할 경우 의사 소견서에 따라 성호르몬 투여로 신체적 변화를 겪고 1차로 가슴수술과 정소·난소 제거, 자궁적출 등의 수술을 받는다. 2차로 성기수술을 하는데 실제 성전환자 가운데 절반은 월 70만원 이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때문에 대부분 성전환 희망자들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는 수술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성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성기 수술을 성별 정정 조건으로 삼은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인권위는 이 밖에 대법원 지침 모두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또 비밀누설 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했고, 국회의장에게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특별법」은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무산된 상황에서 당시 대법원이 지침을 마련한 것이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사법부가 입법권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3권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다. 독일과 스웨덴, 일본 등 여러 국가에는 관련 특별법이 있다. 따라서 인권위는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되 그전의 공백기에 불가피하게 대법원 지침을 적용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2009년 1월20일 9가지 조건 중 성전환수술 이후 반대 성으로서의 성공적 삶을 영위할 것 등 3가지는 삭제했다. 하지만 아직 6가지 조건은 유지되고 있다. 국회 입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은 무관심 속에 최소한의 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동성애자는 헌혈도 못 하나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AIDS에 대한 많은 오해 중 하나가 감염 경로다. 전문가들은 AIDS가 성접촉이나 수혈과정에서 감염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성접촉의 경우 감염자와 감염 확률이 높은 방식의 성접촉을 했느냐가 아니라 동성 간 행위 자체를 감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는 오해다. 또한 여성 간 성접촉으로 감염될 확률은 극히 낮고 남성 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 간 성접촉 자체가 곧 감염이라고 안다면 역시 오해다. 남성 간이라도 안전한 성생활을 영위한다면 감염과 상관없다는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2003년 AIDS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규칙을 시행하고 있었다. 헌혈을 하고 싶은 이들에게 실시하는 문진 내용을 규정한 규칙이 그것. 헌혈 전 실시하는 문진사항 중 '동성이나 불특정 이성과 성접촉이 있었느냐'는 조항이다. 진후 항목을 종합하면이 질문은 헌혈자가 에이즈 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HIV) 감염 가능성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 '예'라고 대답하면 헌혈에서 배제되었다. 이에 대해 한 동성애자인권단체 대표가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는 동성 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중 35%만이 동성 간의 성접촉으로 감염되었고, 이들은 모두 남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것이었다. 즉, 동성간의 성 접촉이 곧 에이즈 감염은 아니며, 특히 여성 간 성접촉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헌혈 전 문진에서 모두 남성 간 성접촉 여부를 묻고 있다. 결국 이 문항은 에이즈 감염이 없는 동성애자도 헌혈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동성애자에게 헌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동성애가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간

주되는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

에이즈는 가벼운 신체 접촉이나 공기 등을 통해서도 감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에이즈 환자와 함께 있는 것을 꺼리거나 가벼운 신체 접촉조차 전염을 우려해 회피하려고 한다. 또한, 동성애자는 모두 에이즈 환자일 수 있다는 편견으로 동성애를 범죄시하기도 한다. 이런 잘못된 편견으로 수많은 동성애자와 에이즈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헌혈 문진표처럼 무심히 지나치는 작은 일들이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003년 8월 헌혈문진표 조항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동성 간 성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문진사항을 개정하고, 최소한 동성 간 성접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남성에게만 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 이후 현재 헌혈문진표에는 '불특정 이성과의 성접촉 또는 남성의 경우 남성과의 성접촉'으로 문항이 바뀌어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남성 동성애자들의 헌혈이 허용됐다. 영국의 '혈액·조직·기관 안전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의학적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에 대한 평생 헌혈 금지 조치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모든 동성애자의 헌혈을 금지하는 조항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았던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만한 일이다.

단지 당신이 전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시간강사 제도 개선 권고



2003년 5월 30일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백씨(34)씨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석사를 거쳐 30대 초반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남들이 보기엔 대한민국 최고의 학력을 자랑하는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 이런 그를 자살로 내몬 것은 무엇인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년 동안 백씨는 교수임용에 잇따라 실패하자 우울증 치료약까지 복용했다. 백씨의 강사료 수입이 적어 부인이 보험회사에서 일하며 생활을 꾸려왔다. 그가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는 “나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말 그대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일 것”이라며 “제일 급한 일이 카드대금 정리하는 것이고 월말엔 대출금 이자도 정리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학 시간강사의 차별과 처우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했다. 인권위에도 진정이 들어왔다. 인권위는 실태조사를 벌이고 정책검토에 착수했다.

당시 대학의 시간강사 의존율을 보면 4년제 대학 중 135개 대학에서 2002학년 1학기 교양과목의 55%, 전공과목의 약 31%를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대학 시간강사는 대학 내에서 학생을 직접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함으로써 일정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강사들은 대학 내에서의 지위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되었고 고용상 명시적인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회보험 같은 복리후생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임강사의 1/5 이하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2002년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2만140원으로 1주일에 9시간을 강의했을 때 방학기간을 감안하며 월 평균 60여 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이는 당시 최저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전임교원과 비교할 때 자격요건, 자질, 경력 등 뚜렷한 차

별의 기준도 없이 단지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그들이 받은 처우였다.

인권위는 이 같은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헌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당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서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결정이 대학 대에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4만여 명에 달하는 시간강사가 대학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에 걸맞은 합리적 지위를 보장받고 대학교육의 질적 개선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백씨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강사가 열악한 근무조건과 차별적 대우를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었다.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문제는 대학 내 대표적인 비정규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인권위의 권고는 일부 수용되어 2006년 7월 청와대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 교육부 개선안을 마련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2010년 6월25일 사회통합위원회는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부여, 1년 이상 임용, 시간당 강의료 2013년까지 8만원 인상,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지원 등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선안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고, 이마저 현직 시간강사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단지 시간강사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의 종착역은 아직 멀어 보인다.

10

평등 시대로



0.2cm와 0.5cm 차이로 접은 꿈

키·몸무게에 의한 공무원 임용 차별



김희선(가명·여·21)씨와 이동인(가명·남·27)씨는 2005년 1월과 3월 각각 인권위를 찾았다.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를 제한하는 것은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라며 진정을 내기 위해서였다. 당시 ‘키 167cm 미만인 남자, 157cm 미만의 여자’ ‘몸무게 57kg 미만의 남자, 47kg 미만인 여자’들은 「경찰공무원임용시행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경찰이 될 수 없었다. 키 156.5cm였던 김씨는 0.5cm, 키 166.8cm였던 이씨는 0.2cm 차이로 각각 경찰공무원의 꿈을 접어야 했다. 당시 인권위에는 이 밖에도 각종 공무원 채용 시 키와 몸무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의 차별성을 지적하는 진정이 7건 더 접수됐다. 경찰 외에도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 시 각각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고 있다.

	남		여		체력검사 실시여부
	키	몸무게	키	몸무게	
경찰	167cm이상	57kg이상	157cm이상	47kg이상	○
소방	165cm이상	57kg이상	154cm이상	48kg이상	○
교정직, 소년보호직	165cm이상	55kg이상	154cm이상	48kg이상	×
철도공안직	167cm이상	57kg이상	157cm이상	48kg이상	×

쟁점은 키와 몸무게 기준이 진정직업자격인지 여부다. 즉 특정 키와 몸무게 이상이어야만 해당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냐는 것.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일반 시민과 육체적 접촉이 많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신체적 조건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화재와 재난의 극한 상황에서 본인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체조건은 필요최소한의 기본조건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교정직 공무원은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소 등의 안전과 비상 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소년보호직 공무원

또한 수용사고가 발생할 시 이를 효과적으로 계도·진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신체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안직 공무원 또한 철도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신체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각 기관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기준이 해당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적절한 기준일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제시한 신체조건에 미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근력이나 공격력, 방어력, 위기대처력 등이 현저하게 부족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반대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옛말도 있지 않은가.

또한 각 기관이 채용대상 공무원에 대해 공통적으로 업무 수행과 관련해 육체적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나,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체력검사도 실시하지 않는 기관이 있었다. 무엇보다 체력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도 키와 몸무게 제한과 체력과의 상관관계 또는 양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특정 키와 몸무게 제한은 막연하고 일반적인 고정관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인권위는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며, 공무원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불합리한 제한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현재 경찰과 교정직을 제외하고는 권고를 수용한 상태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여전히 키와 몸무게를 이유로 많은 젊은이의 꿈을 앗아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똥똥하면 일 못하나

과체중 등 신체조건 고용차별



“처음에는 운동 좀 한다는 정도로 알고 들어갔죠.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주말마다 산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어 달 후 창사기념으로 전 직원이 2박3일 산행을 하는데, 갑자기 무리하니 허리도 아프고 좀 처졌죠. 그 후에 회사에서 체중감량을 해라, 매일 운동하고 보고하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회사 다녀야 하나 싶었죠.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강요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정모(31) 씨는 어렵게 구한 일자리인 만큼 적응해보려고 노력했다. 운동이 건강에 좋은 측면도 있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도 들었다. 그래서 상사에게 날마다 이메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계단오르기 3회 실시했으며,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하고 있습니다”와 같은 보고를 하는가 하면 운동 계획서도 만들어 제출했다.

그렇다고 회사가 비만도나 체질량지수를 측정한다든지 감량 대상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다. 단체산행에서 좀 처지거나 육안으로 덩치가 좀 크다 싶으면 관리 대상으로 삼고 체중감량을 강요했다. 정씨 부서에서는 정씨 혼자 감량 대상이었다. 2개월여 스트레스를 받던 정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인권위에 진정했다.(<인권> 잡지 2011년 3·4월호)

쟁점은 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체중감량을 지시하고 목표 미달성 시 사직을 강요했는지 여부와 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다. 만약 정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회사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만이 병증이라는 견해도 있는 상황에서 회사 측의 조치가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권장하는 인력관리 방안의 하나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회사 측은 “직원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며 체중감량 강요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점심 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에 야간 조명시설, 인조잔디 구장, 실내 농구장 설치, 전문 강사 초빙 등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 결과, 회사의 부사장이 2010년 6월10일 임원과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과체중으로 산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직접 거명하며 “한 달간 결과를 본 후 조치 예정이니 상세계획을 보고 바랍니다. 또한 미달성을 대비하여 사직서를 미리 받아놓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드러났다. 한 관리자는 이에 대해 “동봉된 계획서대로 실시하여 감량계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량계획일에 목표를 수행 못할 시를 대비해 사직원을 써놓고 감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는 회신 메일을 보냈다. 또 다른 관리자도 유사한 메일을 회신했다. 이는 체중감량 지시와 퇴사 등의 압력이 있었으며 정씨의 퇴사도 자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만든 정황이다.

또한 직원의 건강과 복리후생 차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인력관리 방안이라고 하더라도 감량 목표를 지시하고 목표 미달 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의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직원 개인 입장에서는 전인적 구속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직원의 체중감량이 회사의 업무, 특히 정씨의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결국 인권위는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정씨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학교가 학생을 내치지 않기를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정책권고



2009년 4월경 빨간색 스웨터를 입은 중년의 여성이 옛돼 보이는 여학생과 함께 인권위를 찾았다. 평범하고 순박해 보이는 그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그러나 결코 만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고3 딸이 양가의 승낙하에 사귀던 남자친구(직장인)와의 사이에서 임신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가 자퇴를 강요하면서 남자친구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자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딸은 다니던 학교에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 했다.

임신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라고 한 경우이니 위원회가 차별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미 자퇴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유급을 면할 수 있는 7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했다. 학교에 찾아가서 만난 교장 등 선생님들의 태도는 완강했다. 아무리 상대 남성이 성인이고, 양가에서 결혼을 허락한 사이라 하더라도 학생 신분으로 임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 퇴학감이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면담조사 일정을 알고 찾아온 학부모 20여 명도 인권위가 차별이라고 인정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학교를 나온 뒤 피해자의 엄마를 만났다. 근처에 얘기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골목길 계단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는 말문을 열었다. “학생이 임신한 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분명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학교에서 내치는 것만이 능사일까요.”(〈인권잡지 2010년 11·12월호〉)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다만 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 자료에 위하면 한해 5000~6000명으로 추산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추산하면 임신한 청소년 수는 연간 약 1만5000명이 넘는다.

이들의 학업이 문제다. 인권위가 이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 중 임신 당시 이미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경우가 71.4%, 조사 당시 중퇴한 경우가 9.5%, 임신 중 재학하거나 졸업한 학생은 19.1%였다. 그러나 86.8%에 달하는 미혼모들이 학업을 지속하고 싶어 했으며, 학업 지속의 방법으로는 검정고시가 39.3%로 가장 많았으나, 원래 학교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34.4%에 달했으며, 다른 학교로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도 26.2%였다.

왜 학업이 문제인가.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및 청소년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의 성원이 될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습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아서 안 되며, 국가와 학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현실적으로도 청소년기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은 대학진학률이 89.1%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박탈해 일생을 통해 실업 상태나 잠재적 실업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미혼모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 자녀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인권위는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16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수용했고, 서울시교육청 등은 청소년 미혼모가 학습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인권위에 진정했던 고3 여학생은 인권위 권고로 학교에 복학해 졸업했고 현재 아이를 키우며 대학에 재학 중이다.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때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다. 죄값을 치르고 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그들에게도 사람이면 누구나 누리는 인권이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자명하다.

2006년 9월과 10월 김모(38)씨와 임모(35)씨가 인권위 문을 두드렸다. “200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기능직의 조무직렬에 응시해 최종합격했으나 전과자라는 이유로 합격이 취소된 것은 차별이다”고 진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임용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실시했고, 공립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자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조무직은 학교시설인 각 교실과 외부시설의 환경관리, 은행업무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뿐만 아니라 방어능력이 없는 학생과 함께 근무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진정인들의 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먼저, 공무원의 임용관련 법령에서 시험 합격자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살펴봤다. 그 결과 합격자가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에 불응하거나 훈련 점수 미달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시험 합격자의 합격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김씨와 임씨는 이런 조항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음은 보안업무규정이다.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국가 안전 보장 업무와 보안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를 하고 있다. 이 신원조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국가에 대

한 충성심, 성실함, 신뢰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 국가 안전 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장이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따라서 이 보안 대책에 신규채용 시험에 합격해 임용 예정인 사람을 배제하는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임용 관련 법규 등에서 합격취소 사유가 규정되었다거나 서울시교육청에 임용 여부에 관한 재량을 위임했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고, 또한 보안업무규정이 진정인들의 합격을 취소할 근거법령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그러므로 진정인들이 비록 전과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규채용 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전과를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시교육감에게 진정인들에 대한 기능직 조무직렬 시험의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할 것과 합리적 근거를 갖춘 취소사유를 명시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이들을 다음해 1월1일자로 임용했다.

이 결정례는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의 대표적 사건이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형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이처럼 일정기간이 지난 형벌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한 것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전과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재범을 하지 않은 전과자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법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우리 사회의 인식이 중요할 것이다. 즉, 전과자는 이미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한 대가를 치렀고 이제 우리 공동체에 정상적으로 재통합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다.

대학은 종교단체가 아니므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현재 종교가 없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학생들도 미션스쿨에 입학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미션스쿨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교수는 어떻게, 교수도 마찬가지로 종교와 상관없이 미션스쿨에 채용될 수 있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다. 2008년 3개 대학 교수 채용 시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차별행위이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A대학교는 기독교 세계관과 기독교 교육이념에 입각한 고등교육과 기독교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의 특수성과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B대학교는 “선교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그 설립이념에 따라 정관 제1조 및 제43조에 근거하여 교수 채용 시 기독교인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며 “정관은 국가가 승인한 사항이며 기독교 세례교인을 지원 자격조건으로 하는 것은 대학이 추구하는 핵심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적자원을 선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학은 2007년에도 인권위에 동일한 진정사건에 대해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불수용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C대학의 경우 인권위의 권고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향후 채용 공고 시에는 비기독교인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다.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31조 제4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그 밖의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은 무제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 그리고 사회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된 일반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기독교인이어야 하는 것’이 대학들의 교수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 요건인지가 쟁점이다. 우선 이들 3개 대학은 한결같이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라 「고등교육법」에 의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공공교육이라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입생 선발 시에도 기독교인일 것을 지원자격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 등을 받는다.

결국 기독교계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종교단체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개별학과 혹은 교과과정의 내용 및 성격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교수직 채용에서 일률적으로 기독교인 여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직원들의 경우도 영적 또는 종교적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기독교인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같은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직원의 지원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종교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수초빙에서 기독교 세례교인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한 3개 대학에 대해 직원 또는 교수 채용 시 응시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관련 인사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학력과 능력은 비례할까

은행 채용에서 학력 차별



학력과 능력이 비례할까. 적어도 2006년까지는 한 은행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005년 5월 “A은행이 개인금융 및 기업금융 부문 정규직원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자격을 ‘4년제 정규대학 졸업(2005년 8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동등 학력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 것은 학력에 의한 고용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A은행은 “은행의 직무는 고졸의 지식 수준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와 대졸 학력 이상의 지식 수준이 필요한 직무로 분리되어 있는데, 외환 및 수출입금융,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가증권 운용, 법무, 자산유동화 등의 핵심 직무는 최소한 대졸 이상의 지식 수준이 필요하므로 신입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A은행은 이들 업무 수행에 경영, 법학, 회계학 등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졸 학력자를 채용할 경우 학습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학습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A은행 채용대상 업무인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담당할 신입직원의 자격요건이 4년제 대졸 학력이 필수적인지 여부다.

조사 결과,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은 은행의 특정 직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개인금융 지점과 기업금융 지점의 업무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필수 자격요건이 되기는 어려웠다. 특히 은행 측이 제시한 직무기술서를 살펴본 결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에서 학력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도 4년제 대졸 학력이 개인금융과 기업금융 업무의 필수적인 자격요건은 아니라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은행 측이 대졸 학력 이상의 지식수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업무들은 주로 은행 본부 조직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신입직원들이 담당하기보다는 입

사 후 일정한 경력을 쌓고 훈련을 받은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은행의 정규직 직원 1만 7317명 중 핵심직무라고 주장하는 직무에는 1280명만이 배치되어 있었다.

따라서 인권위는 4년제 대학 졸업자가 아니더라도 실무경력과 자기계발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응시자격을 4년제 대졸 학력자로 제한한 것은 전문대졸 이하 학력자들이 정규직 신입사원으로서의 입직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학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고용차별이므로 채용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A은행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2007년부터 학력 제한을 폐지했다.

학력과 능력을 등치시킬 수 있을까. 그렇다면 학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능력이 뛰어나야 하고 그 반대도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저학력자라고 할지라도 능력을 인정받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런 경우에 더 박수를 보내고 있다. 물론 학력이 능력의 일부일 수는 있다. 다만 능력과 학력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실제 기업은 학력이 아니라 면접, 인성검사, 프레젠테이션 등의 절차를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지 않는가. 학력이 아니라 능력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B형 간염에 대한 오해와 편견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



김철수(가명)씨는 2006년 2월 종합건설업체인 K사 신입사원 채용에 응시해 서류전형과 면접에 합격했다. 그런데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회사로부터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김씨가 ‘단체활동 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높고, 공사현장에서 철야작업과 휴일근로 등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아 건강 악화 시 B형 간염으로 발전될지 모르고, 해외 오지 근로 중에는 정기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합격시켰다’고 밝혔다.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합격한 회사에서 병력(病歷)을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자 김씨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를 보다 못한 김씨의 여자친구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활동성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탈락된 것은 병력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해자에 대해 신체검사를 실시했던 병원과 대한간학회, 보건복지부 등에 B형 간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회를 실시했다. 먼저, 김씨의 신체검사 기관인 N의원은 회사 측이 이유로 내건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의 전염성 문제와 김씨가 수행할 업무와 질병과의 적합성 여부, 업무 강도로 인한 건강 악화 등’에 대한 소견을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한간학회는 피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는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과 활동성 바이러스 보유만으로 건축 분야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회사 측에서 밝힌 김씨의 불합격 사유는 전문가 소견에 비추어 타당

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김씨를 불합격시킨 K사에 ‘피해자에 대한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K사를 비롯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B형 간염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흔히 일반인들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면 간염이 심한 상태이고 비활동성이면 간염이 심하지 않은 상태라고 추정하지만 활동성 여부가 간 기능의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B형 간염은 활동성, 비활동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 코로나 스트레스가 간 질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B형 간염의 전염성 유무와 업무적합성 관계를 판단할 때도 이 같은 의학적 견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전에도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 대한 차별 진정이 인권위 조사 중에 해결된 사례도 있다. 3차 면접까지 합격한 응시자를 단지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탈락시킨 회사가 인권위 조사 중에 ‘활동성’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인지하고 다시 합격 처리한 것이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혈액이나 성 접촉으로 감염되며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감염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악화시킨다는 일반적 인식은 의학적,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결국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근거 없이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활동성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짓밟지 말자

파산면책자 청약저축 담보대출 차별



경기가 어려울수록 파산이 늘어난다. 그중에서 개인파산은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개인파산자 중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을 파산면책자라고 한다. 상식적으로는 법에 의해 채무를 변제해주었다면 그 순간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11년 10월31일 헌법재판소가 파산면책자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재는 대출자격 부적격자 판정을 받은 윤씨 등 3명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세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결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낸 것이다. 현재는 결정문에서 "저소득가구에 전세자금을 지속적으로 대출해주려면 원금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파산면책자는 경제주체로 자립성을 상실했음을 부인할 수 없어 이들을 전세자금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자신의 청약저축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가능할까.

김철수(가명)씨는 2003년 3월부터 A은행에 카드대금 채권을 연체했고 이를 포함한 채권에 대해 2005년 8월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2010년 4월 A은행을 방문해 본인이 2005년 3월 가입해 그때까지 600만원을 불입한 청약저축을 담보로 5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A은행은 파산면책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거부했다. 은행 지침에 은행 매각채권 보유자 및 신용회복지원 신청 확정자, 개인회생 신청 확정자, 개인파산면책 신청 결정자는 채무관계자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파산면책자에 대한 담보대출 규정은 은행마다 달랐

다. A은행과 규모와 영업범위가 유사한 시중은행 중 B은행은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C은행은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도 파산면책자의 손을 들어줬다. 김씨가 민원을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은 파산면책자에 대한 청약저축 담보대출은 추가적 리스크가 없고 파산면책자의 효율적 회생이라는 사회적 가치에도 부합하므로 A은행에 담보대출을 허용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A은행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먼저 A은행의 입장을 이해했다. 금융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출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객의 채무변제능력과 신용상태 등을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은행의 영업 재량이라고 봤다. 그러나 김씨처럼 A은행의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청약저축으로 채권을 보존할 수 있어 은행이 겪어야 할 불이익이 크지 않다. 그렇다면 A은행이 파산면책자라는 이유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파산면책제도는 국가가 개입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한 파산면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파산면책자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권력적 특성에 기인한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인권위는 2010년 8월2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 사진을 찍을 것을 종용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이에 동조한 사안에 대해 성희롱임을 인정하고 피진정인들에게 손해배상과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는 매일 성희롱 상담과 진정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05년 여성부에서 인권위로 성희롱 차별 시정 권한이 이관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다. 따라서 인권위법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성희롱은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고객과 같은 제3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성희롱은 인권위법에서 말하는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예컨대, 대중교통 이용 시 승객이 승객에게 행한 성희롱, 도로 등에서 일반 행인이 행한 성희롱, 식당이나 상점 등의 이용객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인터넷 채팅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등은 인권위법상 조사할 수 있는 성희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성희롱의 행위 행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하는 성적 언동 등'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다. 성희롱이 직장 내 성차별에서 출발한 규제의 역사, 특히 남성이라는 그리고 상사라는 권력적 특성에 기인한 괴롭힘(harassment)의 문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관련성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성희롱의 피해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흔히 가해자가 친근감의 표현 등이라고 변명하더라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 개인적 관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여성 또는 합리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지 함께 고려한다. 다음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 결정례의 특징과 주요 경향.

- ▲ 당사자 범위 확대: 이성 간의 성희롱뿐 아니라 동성 간의 성희롱도 조사대상에 포함. 직장 내 여성 동료 간, 정신병원 남성 직원의 남성 환자에게 한 성적 언동 등.
- ▲ 성희롱 행위주체 폭넓게 해석: 사용자 및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비상근임원이나 이사 또는 고문도 포함. 형식상 상임간부가 아니더라도 업무 관련성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업무활동을 제한 내지 위촉시키는 영향력을 가진 관계에 있으면 포함.
- ▲ 업무 관련성 여부는 실질적 업무상황으로 판단: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관계나 상하관계 여부를 떠나 실질적인 업무상황인지 여부에 따라 관련성 판단. 대학 교직원 파업 시 학교 측 대표로 나온 교수가 파업 중인 직원에게 행한 성희롱 등.
- ▲ 새로운 유형의 성적 언동도 포함: 간접적이고 새로운 유형의 성희롱도 포함. 퇴폐음란 장소에서의 회식, 원하지 않는 동거 제안 편지의 전달, 제3자를 통해 전해 들은 모욕적인 성적 언동 등.
- ▲ 학교 현장 및 구급시설 등의 성희롱도 규제: 교수나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가해지는 성희롱은 학습권 보장 차원, 교도관에 의한 여성 수용자 성추행 사건 등.

차별을 멈춰요!!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아무도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을 꿈꾸지 않았다. 오로지 인권위만이 차별을 정의하고,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과 이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고, 결과적으로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4인으로 구성된 조문팀이 백지 상태에서 법안 작성을 시작했으며, 초안 형태의 법률이 최초로 나온 것이 2004년 6월이었다.(중략)

초안은 다시 수십 차례의 내·외부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회부되어 인권위는 2006년 7월에 최종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했고, 이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인권> 잡지 2010년 11·12월호)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의 평등 이념의 실현, 국제인권규범의 차별시정 요구에 대한 부응, 차별에 대한 판단기준의 마련과 보다 적극적인 구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라는 게 당시 인권위의 판단이었다. 당시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별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 및 보완
 - 차별을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
 - 성별, 장애, 나이, 인종, 학력 등 20개의 차별사유
 -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법령과 정책 집행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차별의 영역으로 함
- ▶위원회의 차별시정기본계획 권고안 마련 및 대통령의 차별시정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 및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명시
- ▶고용, 교육, 재화·용역 등에서의 차별금지, 참정권, 행정서비스, 수

사·재판절차 등의 영역에서 차별예방을 위한 조치 및 적절한 편의 제공 등 차별예방조치에 관한 규정 적시

▶구제수단의 다양화 및 구제의 실효성 제고

- 위원회의 일반적인 구제조치로서 조정 및 시정권고, 피진정인이 위원회의 결정에 불응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의 경우 소송지원 도입
- 증명책임의 전환 도입
- 법원의 구제조치로서 차별행위의 중지 등 임시조치 등 규정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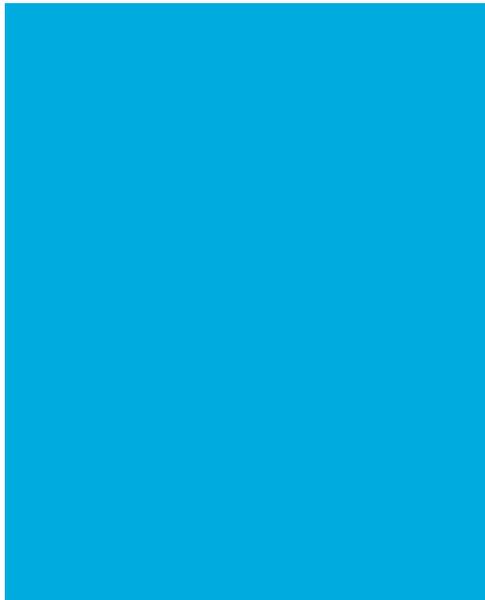
차별금지법은 2007년 10월2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하고 논란 끝에 국회에 상정됐으나 17대 국회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역사의 한 장으로 묻혔다. 그나마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된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 현재 학력차별금지법,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사유별로 개별 입법으로 갈 것인지, 포괄적인 입법으로 갈 것인지도 논란이다. 그러나 모든 차별사유를 포괄해 하나의 법률로 정하는 일반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차별의 다양성 반영과 차별 요소 간의 수직화 방지, 다양한 차별사유에 대한 일관되고 통일된 법률 적용, 중복차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등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이다. 또한 발생 가능한 모든 차별사유를 근거로 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정 차별사유에 근거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더라도 일반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10년 4월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해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할 때다.





부록

세계인권선언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
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
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
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
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본 세계인권선언문은 <국제조약집>(정인섭 서울대 교수 편역, 경인문화사, 2008)자료를 옮겼습니다.

-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여지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 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1조 1. 형사 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 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

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자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

1993년 12월 23일 유엔 총회 승인(결의안 48/134)

A. 권한과 책임

1.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헌법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 광범위한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3. 국가인권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 (a) 정부, 의회, 그리고 그밖의 권한있는 당국에 대하여, 자문의 역할로서,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특권뿐 아니라 의견, 권고, 제안 및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 관련되어야 한다.
 - (i) 인권의 보호를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제정된, 사법과 관련된 조항은 물론 법률 및 행정입법의 조항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기구는 법안과 입법예고는 물론 현재 시행중인 법률과 행정법령들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법령들이 인권에 관한 근본적 원칙과 양립할 수 있게 하는 데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권고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가인권기구는 새로운 입법, 현행 법률의 개정, 행정조치의 시행이나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 (ii) 국가인권기구가 다루기로 결정한 모든 인권침해상황;
 - (iii) 전반적인 인권상황과 구체적인 국내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의 준비;
 - (iv) 국내의 어떤 지역에서도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러한 상황에 끝내는 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의견표명.

- (b) 국내의 법률, 행정 입법, 관행과 그 나라가 당사국이 된 국제인권규범들 사이의 조화와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 (c) 국제인권규범의 비준 또는 승인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 (d) 조약에 정한 의무에 따라 유엔의 기구 및 위원회와 지역 인권기구에 국가가 제출해야 할 보고서 준비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정부보고서의 독자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관련 주제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 (e) 유엔 및 유엔 관련기구, 지역기구 그리고 인권의 보호 및 향상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나라의 국가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 (f) 인권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의 작성을 지원하고, 각급 학교와 대학 및 전문영역에서 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 (g) 특히 정보제공과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언론기관을 이용해서 대중의 의식을 향상 시킴으로써 인권문제 및 모든 형태의 차별 특히 인종차별(racial discrimination)에 반대하는 노력들을 널리 알려야 한다.

B.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의 보장

1. 국가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임명; 선거의 방법에 의하든 혹은 다른 방법에 의하든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회계층들의 다원적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할 뿐 아니라, 특히 다음과 같은 대표자들과의 협력 및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확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a) 인권 및 인종차별과 싸울 책임을 맡은 민간단체(NGO), 노동조합, 예컨대,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저명한 과학자들의 단체와 같은 관련 사회단체 및 전문가단체;
 - (b) 철학과 종교 사상의 다양한 경향들;
 - (c) 대학교 및 자격있는 전문가들;

(d) 의회;

(e) 정부 부처 (정부대표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문자격으로만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

2. 국가인권기구는 그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하부구조, 특히 적절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적절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인권기구가 자체적인 인력과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하고, 그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원의 안정적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임명은 특정한 임기를 보장하는 공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건아래 갱신될 수 있다.

C. 활동방식

국가인권기구는 그 운영원칙에서 ,

- (a)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거나 혹은 그 구성원이나 진정인의 제안에 따라 직권으로 채택한 사안이거나 불문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안을 자유로이 심리해야 한다.
- (b) 권한 내 속하는 상황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람의 진술을 듣고, 어떠한 정보나 문서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c) 특히 자신의 의견과 권고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직접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여론에 호소하여야 한다;
- (g)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민간단체의 본질적인 역할에 비추어 인권의 보호와 향상, 경제 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대한 투쟁, 특히 인권침해를 받기 쉬운 집단 (어린이,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 및 정신장애자) 또는 특정 지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민간단체와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D.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관한 고발과 진정을 조사,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사안

은 개인, 그 대리인, 제3자, 민간단체, 노동조합 또는 그밖의 대표성있는 단체들이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에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는 다음의 원칙들에 따른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다.

- (a) 조정 또는 법률에 정한 범위안에서 구속력 있는 결정을 통해서,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방법으로 우호적인 해결을 모색한다;
- (b) 자신의 권리에 관해 진정하는 당사자에게 특히 이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알려주고 구제수단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켜야 한다;
- (c) 법률의 범위안에서 모든 고발과 진정을 직접 조사하거나 관련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 (d) 진정인의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정인에게 곤란을 준 법률, 행정입법이나 관행의 개정 또는 개혁을 권한있는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정 2001. 5. 24. 법률 제6481호
- 개정 2005. 3. 31. 법률 제7427호 (민법)
- 개정 2005. 7. 29. 법률 제7651호
- 개정 2005. 8. 4. 법률 제7655호 (치료감호법)
- 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96호 (국가공무원법)
- 개정 2006. 10. 4.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 개정 2007. 5. 17.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개정 2009. 2. 3. 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 개정 2011. 5. 19. 법률 제1067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하고 유치(留置)하거나 수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시설
 - 다.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 라. 외국인 보호소
 - 마. 다수인 보호시설(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급의 용자, 정

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나.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4. “장애”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 ①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2.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⑤ 위원 중 4명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 ⑥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 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③ 결원이 된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 <2005.7.29>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와 침해구제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등의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는 심의 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성·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자문기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사무처)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 ① 위원회에 위원회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할 징계위원회를 둔다.
-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권한, 심의 절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 ① 관계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 시 위원회 의견 청취)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관계 국가행정기관이 정부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 조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청문회)

-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대표자, 이해 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등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 또는 의견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 ① 위원회(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및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⑤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이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 ⑥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설명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 ①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 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관한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공무원의 채용시험, 승진시험, 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연구회의 장과 협의하여 인권에 관한 연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7조(인권자료실)

- ① 위원회는 인권자료실을 둘 수 있다.
- ② 인권자료실은 인권에 관한 국내외의 정보와 자료 등을 수집·정리·보존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 ③ 인권자료실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으로 본다.
- ④ 인권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係屬)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 ③ 관계기관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② 삭제 <2005.7.29>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 ①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소속공무원등"이라 한다)은 그 사람에게 즉시 진정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시설수용자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공무원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소속공무원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수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보내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명원을 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항의 통지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일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시설수용자가 진정을 원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게 하여 진정을 원하는 시설수용자로부터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을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진정을 접수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즉시 접수증명원을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의 구금·보호시설의 방문 및 진정의 접수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 ⑥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진정인(진정을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과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의 면담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이 참여하거나 그 내용을 듣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시설수용자를 감시할 수 있다.
- ⑦ 소속공무원등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할 수 없다.
- ⑧ 시설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서 작성과 제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금·보호시설에서 이행하여야 할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33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조사 목적의 한계)

① 위원회는 조사를 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한 · 피해자 · 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② 위원회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⑦ 위원회가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위원회에 소명하고 그 자료나 물건의 제출 또

는 그 자료, 물건,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 국가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37조(질문 · 검사권)

- ① 위원회는 제36조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 ① 위원(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이거나 그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진정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진정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

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진정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39조(진정의 기각)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합의의 권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 ① 조정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장애 등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민간단

체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 한 사람

-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인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조정위원 중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 ④ 조정위원의 위촉 및 임기,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 및 위원회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42조(조정위원회의 조정)

- ① 조정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적은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조정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⑤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⑥ 당사자가 제5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조정위원회의 조정의 효력)

제42조제2항에 따른 조정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5조(고발 및 징계권)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 ① 위원회는 제4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권고 또는 조치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의복 등의 제공

-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 3. 시설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50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위원회는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및 조정의 내용과 처리 결과, 관계기관등에 대한 권고와 관계기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보칙

제51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 조정위원, 자문위원 또는 직원이거나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면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56조(인권옹호 업무방해)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위원 또는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이 법 제4장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57조(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제31조를 위반하여 진정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자격 사칭)

제51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비밀누설)

제52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60조(간급구제 조치 방해)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비밀침해)

제31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
- ②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0679호, 2011. 5.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정 2002. 2. 9. 대통령령 제17517호
개정 2004. 3. 17. 대통령령 제18317호
개정 2007. 10. 15. 대통령령 제20323호
개정 2011. 4. 6. 대통령령 제2289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수인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0.15>

1. 아동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자립지원시설 및 아동 단기보호시설
2.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
3. 정신보건시설 :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수용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4.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의 보호 및 재활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5. 노인복지시설

-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및 실비양로시설
 -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 및 실비노인요양시설
6. 요보호자를 위한 복지시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호소 · 선도보호시설 및 자립자활시설
7. 갱생보호시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을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3조(구금 · 보호시설의 방문조사)

- 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구금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그 취지 · 일시 ·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등”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구금 · 보호시설의 직원이나 구금 ·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이하 “시설수용자”라 한다) 등의 진술을 듣는 일
 2. 구금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녹음, 녹화, 사진촬영, 시설수용자의 건강상태조사 등 필요한 물건 · 사람 · 장소 그밖

의 상황을 확인하는 일

- ④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음 또는 녹화된 내용은 당해 진술의 취지 또는 조사대상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녹음 또는 녹화된 상태 그대로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내용을 방문조사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설수용자와의 면담)

-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등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면담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의 수를 제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시설수용자와 면담하는 장소에 입회하는 구금·보호시설의 직원은 위원등의 승낙없이 면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 ①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수용자를 면담하는 위원은 면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금·보호시설의 직원 또는 시설수용자가 신체·건강상의 위해 그밖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진정방법의 고지 등)

-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수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수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진정함의 설치·운동)

- ①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구금·보호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시설수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위원회명의로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수용자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서신중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은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 ①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 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방문진정접수)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방문의 통지)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등이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 ① 위원회의 위원과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이하 이 조와 제15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의 제척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 ②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위원회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척 및 기피신청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제척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②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각하한다.

제14조(의결절차의 정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의결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의 회피)

- ① 위원이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② 회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제척·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직무를 수행할 다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위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8조(여비 등의 지급)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에게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설치 및 구성)

- ①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지명하는 자

3.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17]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04.3.17)]

제20조(협의회의 기능)

-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2. 법 제19조·제25조·제44조·제45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관한 사항
 3. 인권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공유
 4.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4.3.17]

제21조(협의회의 운영)

- 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②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7]

제22조(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 ①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 ②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4.6]

부칙 (제22898호, 201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01-2011 국가인권위원회 10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마침표 없는 과제